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267-10

통계청승인번호 11767

noinboho.or.kr

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Chapter 01	서론	1
	1. 발간목적	3
	2. 법적근거	3
	3. 자료수집과정	4
	4. 자료분석	4
	5. 주요내용	4
Chapter 02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7
	1. 노인학대 신고접수	9
	1) 전체 신고접수	9
	2)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12
	3) 신고자 유형	16
	4) 신고접수 및 인지경로 유형	19
	2. 노인학대 상담	22
	1) 월별 상담횟수	22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23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26
	4) 지역 및 기관별 전체 상담횟수	28
	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횟수	30
	6)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33
Chapter 03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35
	1. 현장조사	37
	2. 사례판정	40
	3. 종결사례	45



CONTENTS

Chapter 04 노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 51

1. 학대피해노인 현황 53	53
1) 학대피해노인 성별 53	53
2)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53	53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54	54
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56	56
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57	57
6) 학대피해노인 결혼 유형 58	58
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및 동거자 유형 59	59
8)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60	60
9)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61	61
10)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61	61
11)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61	61
12)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62	62
13) 학대피해노인 건강상태 62	62
14)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66	66
15)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68	68
2. 학대행위자 현황 71	71
1)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71	71
2) 학대행위자 지역 및 기관별 분포 72	72
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74	74
4)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78	78
5)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79	79
6)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80	80
7)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81	81
8) 학대행위자 장애 및 중독유형 81	81
9)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83	83
3.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85	85
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85	85

2) 노인학대 유형II(학대 유형 건수)	86
3)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89
4)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89
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90
6) 노인학대 유형별 가구형태	91
7) 학대발생장소	92
8) 학대발생빈도	93
9) 학대지속기간	94
10)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95
11) 학대발생원인(가족-환경원인)	98

Chapter **05** 특성별 노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99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103
1) 학대신고건수에 따른 신고의무자 유형	103
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정 결과	104
3)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105
4)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학대발생장소	106
5)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발생빈도	108
6)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지속기간	108
7)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종결사유	109
2. 재학대	109
1)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접수	109
2) 재학대 신고자유형	112
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	113
4) 재학대 사례판정	114
5) 재학대 피해노인 가구형태	115
6) 재학대 행위자 유형	117
7) 재학대 피해노인 동거여부	118
8) 재학대 유형	119
9) 재학대 발생장소	119



CONTENTS

10)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발생빈도	121
11)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지속기간	122
12) 재학대 행위자의 성별 및 연령대	123
13) 재학대 행위자 중독 유형	125
14) 재학대 피해노인 치매정도	125
3. 노인단독가구 현황	126
1) 연도별 노인단독가구 추이	126
2) 지역별 노인단독가구 현황	127
3) 노인단독가구 신고자 유형	128
4) 노인단독가구 성별 및 연령대	130
5) 노인단독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31
6) 노인단독가구 주거형태	131
7) 노인단독가구 주거환경 상태	132
8) 노인단독가구 학대피해노인의 질병 유형	133
9) 노인단독가구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34
10)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134
11)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가족-환경 원인)	135
12)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빈도	136
13) 노인단독가구 학대지속기간	136
14)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	136
15) 노인단독가구 학대 유형	138
16) 노인단독가구 학대행위자 유형	138
4. 시설학대 현황	139
1)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139
2) 시설학대 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42
3)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143
4)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결혼유형	145
5)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146
6)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147
8)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50
9)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50

10)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51
5. 노(老) - 노(老)학대 현황	152
1) 연도별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추이	152
2) 지역 및 기관별 노(老) - 노(老)학대 건수	153
3) 노(老) - 노(老)학대 신고자 유형	155
4)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성별	156
5)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유형	156
6) 노(老) - 노(老)학대 가구형태	157
7)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57
8)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교육수준	157
9)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158
6. 치매노인 학대현황	159
1) 치매노인 성별 및 연령대	159
2) 치매노인 대상 학대발생 유형	159
3) 치매노인 대상 학대발생장소	160
4) 치매노인 대상 학대발생빈도	161
5) 치매노인 대상 학대지속기간	161
6) 치매노인 대상 학대행위자 유형	162

Chapter 06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163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실적	165
1) 보호노인 현황	165
3) 보호노인 결혼 유형	167
4)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167
5) 보호노인 가구형태	168
6) 보호노인 주거형태	169
7) 보호노인 학대 유형	170
8) 보호노인 치매여부	170
9) 보호노인의 우울증 검사	171



CONTENTS

10) 퇴소 후 거주 현황	172
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소자)	172
12)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174

Chapter 07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2005~2017년) ...177

1. 학대신고접수 건수	179
2. 연도별 재학대 건수	180
3. 연도별 신고자 구분	181
4.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183
5.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184
6. 연도별 생활시설 학대 추이	185
7.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186
8.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187
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88
10.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189
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192
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193
13.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195
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96
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97
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98
17. 연도별 종결사례 현황	199
18. 연도별 종결사유	200

Chapter 08 결론 203

1.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205
1) 신고접수 건수	205
2) 신고자 유형	205
3) 상담횟수	207
2. 노인학대 사례분석 결과	207
1)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207
2) 학대피해노인 현황	210
3) 학대행위자 현황	212
3. 특성별 노인학대 사례분석 결과	214
1) 신고의무자에 따른 신고사례	214
2) 재학대	215
3) 노인단독가구 현황	217
4) 시설학대 현황	218
5) 노(老) - 노(老)학대 현황	218
6) 치매노인학대 현황	219

Chapter 09 부록 221

▶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223
▶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24



표목차

[표 2-1]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10
[표 2-2]	월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11
[표 2-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12
[표 2-4]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율	14
[표 2-5]	신고자 유형 I	17
[표 2-6]	신고자 유형 II (신고의무자)	18
[표 2-7]	신고자 유형 III (비신고의무자)	19
[표 2-8]	신고접수 경로	19
[표 2-9]	신고접수 유형	20
[표 2-10]	신고 인지경로 유형별 신고자 구분	21
[표 2-11]	월별 상담횟수	22
[표 2-1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24
[표 2-1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26
[표 2-14]	지역 및 기관별 전체 상담횟수	28
[표 2-1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횟수	31
[표 2-16]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33
[표 3-1]	현장조사	37
[표 3-2]	지역 및 기관별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38
[표 3-3]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41
[표 3-4]	사례판정별 노인학대 유형	43
[표 3-5]	신고자 유형별 사례판정 결과	44
[표 3-6]	지역 및 기관별 종결 및 진행사례 현황	46
[표 3-7]	종결사유	48
[표 3-8]	사례개입 중 사망한 학대피해노인 성별	49
[표 3-9]	사례개입 중 사망한 학대피해노인의 성별과 연령 분포	50
[표 4-1]	65세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분포	53
[표 4-2]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분포	53
[표 4-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54
[표 4-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56
[표 4-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57

[표 4-6]	학대피해노인 결혼 유형	58
[표 4-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59
[표 4-8]	학대피해노인 동거자 유형	59
[표 4-9]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60
[표 4-10]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61
[표 4-11]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61
[표 4-12]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62
[표 4-13]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62
[표 4-14]	학대피해노인 질병 유형	63
[표 4-15]	학대피해노인 장애 수	64
[표 4-16]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65
[표 4-17]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66
[표 4-18]	학대피해노인 중독 유형	66
[표 4-19]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67
[표 4-20]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69
[표 4-21]	학대행위자 성별 연령분포	71
[표 4-2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72
[표 4-2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74
[표 4-24]	학대행위자 연령별 학대행위자 유형 분포	75
[표 4-25]	학대피해노인 피해자가구형태별 학대행위자 유형	76
[표 4-26]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76
[표 4-27]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77
[표 4-28]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79
[표 4-29]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79
[표 4-30]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및 연령대	80
[표 4-31]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80
[표 4-32]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81
[표 4-33]	학대행위자 장애유형	82
[표 4-34]	학대행위자 중독 유형	83
[표 4-35]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83



표목차

[표 4-36]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85
[표 4-37]	노인학대 유형 II (학대 유형 건수)	86
[표 4-38]	노인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88
[표 4-39]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89
[표 4-40]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90
[표 4-41]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90
[표 4-42]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91
[표 4-43]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	92
[표 4-44]	학대발생빈도	93
[표 4-45]	발생빈도별 노인학대 유형	94
[표 4-46]	학대지속기간	95
[표 4-47]	학대행위자 원인	96
[표 4-48]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	97
[표 4-49]	가족-환경 원인	98
[표 5-1]	학대신고건수에 따른 신고의무자 유형	103
[표 5-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정 결과	104
[표 5-3]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105
[표 5-4]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학대발생장소	107
[표 5-5]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발생빈도	108
[표 5-6]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지속기간	108
[표 5-7]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종결사유	109
[표 5-8]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접수	110
[표 5-9]	신규-재학대 신고자 유형	112
[표 5-10]	재학대 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13
[표 5-11]	신규-재학대 피해노인 사례판정	114
[표 5-12]	신규-재학대 피해노인 가구형태	115
[표 5-13]	재학대 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건수	116
[표 5-14]	신규-재학대 행위자 유형	117
[표 5-15]	재학대 피해노인 동거여부(학대행위자수 기준)	118
[표 5-16]	재학대 유형	119

[표 5-17]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	120
[표 5-18]	재학대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120
[표 5-19]	신규-재학대 사례 학대발생빈도	121
[표 5-20]	신규-재학대 피해노인 학대지속기간	122
[표 5-21]	재학대 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23
[표 5-22]	신규-재학대 행위자 연령대	123
[표 5-23]	연령별 재학대행위자 유형	124
[표 5-24]	재학대 행위자 중독 유형	125
[표 5-25]	재학대 피해노인 치매정도	125
[표 5-26]	연도별 노인단독가구 추이	126
[표 5-27]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 현황	127
[표 5-28]	노인단독가구 신고자 유형	129
[표 5-29]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 성별 및 연령대	130
[표 5-30]	노인단독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31
[표 5-31]	노인단독가구 주거형태	131
[표 5-32]	노인단독가구 주거환경 상태	132
[표 5-33]	노인단독가구 주거형태별 주거환경	132
[표 5-34]	노인단독가구 학대피해노인 질병 유형	133
[표 5-35]	노인단독가구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34
[표 5-36]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134
[표 5-37]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가족-환경 원인)	135
[표 5-38]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빈도	136
[표 5-39]	노인단독가구 학대지속기간	136
[표 5-40]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	137
[표 5-41]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기간별 학대 유형 건수	137
[표 5-42]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 학대 유형	138
[표 5-43]	노인단독가구 학대행위자 유형	138
[표 5-44]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건수	139
[표 5-45]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42
[표 5-46]	시설학대 신고자유형	143



표목차

[표 5-47]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결혼유형	145
[표 5-48]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146
[표 5-49]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147
[표 5-50]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	148
[표 5-51]	시설학대 학대 유형	149
[표 5-52]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50
[표 5-53]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50
[표 5-54]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51
[표 5-55]	연도별 노(老)-노(老)학대행위자	152
[표 5-56]	지역 및 기관별 노(老)-노(老)학대 건수	153
[표 5-57]	노(老)-노(老)학대 신고자 유형	155
[표 5-58]	노(老)-노(老)학대행위자 성별	156
[표 5-59]	노(老)-노(老)학대행위자 유형	156
[표 5-60]	노(老)-노(老)학대 가구형태	157
[표 5-61]	노(老)-노(老)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57
[표 5-62]	노(老)-노(老)학대행위자 교육수준	157
[표 5-63]	노(老)-노(老)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158
[표 5-64]	치매노인 성별	159
[표 5-65]	치매노인 연령대	159
[표 5-66]	치매노인 대상 학대발생 유형	160
[표 5-67]	치매노인 대상 학대발생장소	160
[표 5-68]	치매노인 대상 학대발생빈도	161
[표 5-69]	치매노인 대상 학대지속기간	161
[표 5-70]	치매노인 대상 학대행위자 유형	162
[표 6-1]	보호노인 현황	165
[표 6-2]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166
[표 6-3]	보호노인 결혼유형	167
[표 6-4]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167
[표 6-5]	보호노인 가구형태	168
[표 6-6]	보호노인 주거형태	169

[표 6-7]	보호노인 학대 유형	170
[표 6-8]	보호노인 치매여부	171
[표 6-9]	보호노인 우울증 검사결과	171
[표 6-10]	퇴소 후 거주현황	172
[표 6-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퇴소자)	173
[표 6-12]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174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179
[표 7-2]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180
[표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건수	181
[표 7-4]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183
[표 7-5]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184
[표 7-6]	연도별 생활시설 학대 추이	185
[표 7-7]	연도별 현장조사 실시 현황	186
[표 7-8]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187
[표 7-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88
[표 7-10]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190
[표 7-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192
[표 7-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194
[표 7-13]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195
[표 7-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96
[표 7-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97
[표 7-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 추이	198
[표 7-17]	연도별 종결사례 현황	199
[표 7-18]	연도별 종결사유	200



그림목차

[그림 2-1]	전체 신고건수 비율	10
[그림 2-2]	학대사례 건수 대비 재학대 건수 비율	10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건수 추이	11
[그림 2-4]	지역 기관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13
[그림 2-5]	기관별 노인학대 신고접수율(노인인구 천명당)	16
[그림 2-6]	신고자 유형 I	17
[그림 2-7]	신고자 유형 II	18
[그림 2-8]	신고접수 유형	20
[그림 2-9]	신고의무자의 신고 인지경로	21
[그림 2-10]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인지경로	21
[그림 2-11]	월별 상담횟수	23
[그림 2-12]	학대 상담구분	25
[그림 2-13]	지역 및 기관별 전체 상담횟수	30
[그림 2-14]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 횟수	32
[그림 3-1]	지역별 사례판정 결과	43
[그림 3-2]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44
[그림 3-3]	사례판정 결과별 학대 신고자 유형	45
[그림 4-1]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분포	54
[그림 4-2]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56
[그림 4-3]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58
[그림 4-4]	학대행위자 연령분포	71
[그림 4-5]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74
[그림 4-6]	노인학대 유형 I	86
[그림 4-7]	노인학대 유형 II	86
[그림 4-8]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비율	93
[그림 4-9]	학대발생빈도	93
[그림 4-10]	학대지속기간 비율	95
[그림 4-11]	학대행위자 원인 비율	96
[그림 4-12]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주요유형	97
[그림 4-13]	가족-환경 원인	98

[그림 5-1]	기관별 재학대 접수 건수 및 비율	111
[그림 5-2]	재학대 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14
[그림 5-3]	재학대 사례판정	115
[그림 5-4]	재학대 피해노인 가구형태 비율	115
[그림 5-5]	재학대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116
[그림 5-6]	신규-재학대 행위자 유형	117
[그림 5-7]	재학대 행위자 동거 여부	118
[그림 5-8]	재학대 유형	119
[그림 5-9]	신규-재학대 신고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빈도	121
[그림 5-10]	신규-재학대 피해노인 학대지속기간	122
[그림 5-11]	신규-재학대 행위자 연령대 비율	124
[그림 5-12]	연도별 노인단독가구 비율 추이	126
[그림 5-13]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 성별에 따른 연령대 비율	130
[그림 5-14]	노인단독가구 주거형태 비율	131
[그림 5-15]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135
[그림 5-16]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가족-환경 원인)	135
[그림 5-1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에 따른 연령대 비율	142
[그림 5-18]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비율	146
[그림 5-19]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비율	147
[그림 5-20]	시설학대 학대 유형 비율	149
[그림 5-21]	연도별 노(老)-노(老)학대행위자 추이	153
[그림 5-22]	노(老)-노(老)학대행위자 성별	156
[그림 6-1]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166
[그림 6-2]	보호노인 가구형태	168
[그림 6-3]	보호노인 주거형태	169
[그림 6-4]	보호노인 학대 유형	170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비율 추이	180
[그림 7-2]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추이	180
[그림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비율	182
[그림 7-4]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비율)	183



그림목차

[그림 7-5]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185
[그림 7-6]	연도별 현장조사 건수 및 비율 추이	186
[그림 7-7]	연도별 사례판정 비율 추이	187
[그림 7-8]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변화	189
[그림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191
[그림 7-10]	연도별 “학대행위자 본인” 추이	191
[그림 7-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193
[그림 7-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194
[그림 7-13]	연도별 학대 유형 비율	195
[그림 7-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수급자 수 및 비율	196
[그림 7-15]	연도별 학대행위자 수급자 수 및 비율	197
[그림 7-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 추이	198
[그림 7-17]	연도별 종결사례 현황	199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언,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전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보호노인

보호노인이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입소자와 이용자의 합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입소자는 쉼터에서 숙식과 함께 치유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 있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며, 이용자는 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대상을 의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상담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전문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학대상담 학대상담이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단한 사례에 대한 상담을 의미함

일반상담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안내 등의 문의 및 학대의심사례로 접수되었으나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의 상담

접수상담 신고접수 시의 초기 상담을 의미함

진행상담 사례개입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상담을 의미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상담, 학대행위자 상담, 관련자 및 주변인 상담, 현장조사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종결상담 학대피해노인의 위험요인 제거 및 학대행위자 분리 등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종결 앞두고 실시한 상담을 말함. 사례 종결여부는 종결지표를 통해 결정되며, 이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종결 이전에 확인하는 점검리스트의 기능을 함

사후관리

종결된 사례에 대해 학대피해노인이 안전한지 학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복지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게 각종 사회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필요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법률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법적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에 대한 정보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의료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증진 및 학대행위자의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의료적 치료 서비스

보호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킴이 연결 및 거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학대행위자

-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행하는 자

부양의무자

- 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할 의무가 있는 자로 노인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노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해당됨

보호자

- 노인을 보호자는 자로 부양의무자 및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를 받는 사람

노인학대 신고

▶ 신고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 된 상담 및 신고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

재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 된 사례로 당해 연도(2017년) 외에 과년도 사례가 포함되어 있음

▶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의 직군이 포함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 등으로 분류됨

▶ 현장조사

-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최초의 방문을 의미함

응급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노인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며,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실시

▶ 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응급 사례, 비응급 사례, 잠재적사례, 일반사례로 분류하는 과정

노인학대 사례

▶ 학대사례

-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말함

비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됨

잠재적 사례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술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됨

▶ 일반사례

- 신고접수 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노인학대 유형

▶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 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 등)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중복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형이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 발생장소에 따른 노인학대 구분

생활시설 학대

노인복지법 제31조의제1호, 제2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등의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이용시설 학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과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과 같은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병원 학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 병원(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공공장소 학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여럿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노(老)-노(老)학대

- 60세 이상의 고령의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고령의 부부 간의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 및 며느리 등에 의한 학대, 고령의 노인이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유형의 학대 등을 말함

가구형태

▶ 노인단독가구

- 다른 가구원 없이 노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형태

▶ 노인부부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배우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형태

▶ 자녀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 손자녀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손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 자녀·손자녀 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구형태

건강상태

▶ 치매

치매진단

의학적 검사를 통해 의사가 치매로 진단한 상태

치매의심

치매간이조사지표나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로 의심되는 상태

▶ ADL/IADL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IADL

몸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등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종 결

▶ 종결사유

- 노인학대 사례개입의 종결 이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학대피해노인 분리, 학대행위자 분리, 부양강화, 학대행위자 태도변화, 지지자원 거부, 내담자의 무리한 요구, 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의뢰, 타 기관 의뢰 등으로 구분됨

학대피해노인분리

학대행위자와 동거하고 있는 곳에서 학대피해노인이 분리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함

학대행위자분리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고 있는 곳에서 학대행위자가 분리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함

부양강화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부양자(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의무강화를 의미함

학대행위자 태도변화

학대행위자가 학대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식하는 등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함

지지자원 거부

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노인과 그 가족 등이 개입을 거부하였을 경우를 말함










Silver
Smile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요약



개 요

-  본 보고서는 전국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상담사업 사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본 보고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및 상담이 진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추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방향과 노인보호 정책마련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전국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13,309건의 사례를 분석하였음.
-  신고접수 건수 13,309건에 대해 현장조사와 상담진행을 통하여 확인된 학대사례는 4,622건임.
-  본 보고서 자료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상담, 학대 유형, 현장조사, 종결사례, 학대피해 노인, 학대행위자, 학대발생원인, 서비스제공,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에 대한 각각의 현황을 정리하였음.
-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2017. 6. 3.)에 따라 2017년 6월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침에서는 2017년 11월 이후부터 65세 연령기준이 반영되었으므로 본 보고서는 연령기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60세로 두었음.
-  지역별 현황의 경우, 각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처리현황을 단순 집계한 것으로서 각 유형별 현황의 숫자가 많지 않아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지 못하므로 단순비교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 노인학대 신고접수

-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된 신고 건수는 13,309건이었음.
 - 일반사례¹⁾ 8,687건(65.3%), 학대사례²⁾ 4,622건(34.7%)
- 전년도 대비 전체신고 건수는 10.8% 증가(12,009건 → 13,309건)하였음.
 - 전체사례³⁾ 중 일반사례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음.
 - 일반사례의 경우 전년도 대비 12.4% 증가(7,729건 → 8,687건)
 - 학대사례의 경우 전년도 대비 8% 증가(4,280건 → 4,622건)
 - 다만 학대사례는 전년도 대비 전체신고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p 감소
 - 일반사례 비중('16년 64.4% → '17년 65.3%)
 - 학대사례 비중('16년 35.6% → '17년 34.7%)
- 학대사례 4,622건 중 신고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754건(16.3%), 인천광역시 444건(9.6%), 서울특별시 440건(9.5%)의 순으로 나타남.

▶ 신고자 유형

- 학대사례 4,622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635건(13.7%)이며 비신고의무자는 3,987건(86.3%)으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 635건에 대한 세부 유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83건(44.6%),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153건(24.1%),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105건(1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의 비중이 68.7%로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있음.

- 1) 일반사례란, 신고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의미함.
- 2) 학대사례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 3) 전체사례란,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를 합한 모든 신고 사례를 의미함.

-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일부 집단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필요함.
 - 신고의무자의 노인학대 신고 인지경로 유형 중 552건(86.9%)이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으로 전년대비 10.2%p 증가(‘16년 576건, 76.7%)
 - 이러한 결과는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신고의무자 집단을 대상으로 활발한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필요함.
- 학대사례 4,622건 중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3,987건(86.3%)으로 신고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신고자 유형 중 비신고의무자 신고건수에 대한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지킴이단⁴⁾, 경찰관 등에 의한 관련기관⁵⁾이 2,388건(59.9%), 타인이 755건(18.9%), 학대피해 노인 본인 431건(10.8%), 친족 407건(10.2%)의 순으로 나타남.

▶ 신고접수 경로 및 접수유형, 인지경로 유형

- 2017년 학대사례 4,622건 중 신고접수 경로 유형은 자체접수가 2,727건(59.0%)으로 접수경로의 과반을 차지함.
 - 자체접수 2,727건(59.0%), 112이관 1,622건(35.1%), 희망복지지원단⁶⁾ 101건 (2.2%), 보건복지콜센터 129이관 94건(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신고접수 유형으로는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로 신고한 유형이 2,701건 (58.4%)으로 과반을 차지함.
 - 그 외 세부 유형으로 서신 1,636건(35.4%), 대면 216건(4.7%), 온라인 69건 (1.5%) 등이 있음.
- 학대사례 중 신고 인지경로 유형은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이 3,296건(71.3%)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접홍보”가 354건(7.7%), “이미 개입 경험이 있으며 직접홍보”가

4)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조직된 실버스마일 사업단(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노인학대 사례 발굴·예방, 학대사례의 사후관리 등을 목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홍보물, 교육매뉴얼을 개발 및 배포업무를 하는 사업단을 의미함.

5)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6)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말함.

336건(7.3%)으로 나타남.

- 신고자가 이미 인지가 있어 신고하거나 직접홍보를 통해 신고한 경우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의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전략이 필요함.
- 특히 비신고자의 경우 이미 인지가 있어 신고한 비율이 전년대비 9%p 대폭 증가했다는 결과를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 신고 인지경로(이미 인지가 있는 경우) : ('16년) 2,667건(62.3%) → ('17년) 3,296건(71.3%)

▶ 노인학대 상담

- 신고접수 건수 13,309건에 대한 전체 상담횟수는 111,245회임.
 - 학대상담 횟수 88,919회, 한 사례당 평균 상담횟수 19.2회
 - 일반상담 횟수 22,326회, 한 사례당 평균 상담횟수 2.6회
- 전년대비 상담횟수는 12.4% 증가(98,932회 → 111,245회)하였음.
 - 학대상담 횟수 7.8% 증가(82,468회 → 88,919회)
 - 일반상담 횟수 35.6% 증가(16,464회 → 22,326회)
- 학대상담 횟수 88,919회를 상담과정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진행상담 67,976회(76.4%), 사후관리 11,759회(13.2%), 접수상담 4,699회(5.3%), 종결상담 4,485회(5.0%)순으로 나타남.

▶ 상담원 업무량

- 상담원의 업무량 분석지표로는 신고접수 건수, 상담횟수, 현장조사 건수, 방문상담 횟수,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횟수,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횟수, 교육 횟수, 직접 홍보 활동 횟수를 산정함.
- 노인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은 신고접수 업무부터 현장조사, 서비스제공에 이르기까지 상담원 1인이 학대사례에 대한 모든 영역을 수행하는 업무구조로 상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됨.

▶ 상담원 1인당 업무량

- 상담원 1인당 평균 업무량은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체 업무량을 상담원 248명 (기관장 제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2017년 한 해 동안 상담원 1인당 신고접수 건수는 53.7건, 상담횟수는 448.6회, 현장조사는 17.9건, 방문상담횟수는 93.2회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 1인당 제공서비스는 516.7회, 학대행위자 1인당 제공서비스는 52.7회임.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 2017년 전체 학대사례 4,622건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4,443건이며, 현장조사 실시비율은 96.1%임.
 - 학대사례의 경우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완강한 거부,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악화로 인한 병원 및 시설입소, 학대피해노인의 이사 및 이주 또는 학대피해노인이 현장조사를 원하지 않고, 제3의 장소나 기관 내방 등을 원하여 불가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 현장조사 실시 비율 : '13년(90.6%) - '14년(93.5%) - '15년(95.8%) - '16년(92.8%) - '17년(96.1%)
- 전체 학대사례 4,622건에 대한 방문상담 횟수는 23,115회로 한 사례 당 방문상담 횟수는 5.0회로 나타남.
 - 현장조사와 방문상담은 학대피해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는 상담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주거환경 및 생활수준, 심리상태, 주변 자원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여부 및 생활상태 등을 확인하는데 용이함.

▶ 사례판정

- 2017년 전체 학대사례 4,622건 중 사례판정 비율은 응급 사례가 165건(3.6%), 비응급 사례가 2,803건(60.6%), 잠재적 사례가 1,654건(35.8%)으로 나타남.
 - 각 사례판정 유형 추이를 보면
 응급 사례의 경우 '13년(7.3%) → '17년(3.6%),
 비응급 사례의 경우 '13년(65.0%) → '17년(60.6%),

잠재적 사례의 경우 '13년(27.7%) → '17년(35.8%)으로 **응급 사례와 비응급 사례는 다소 감소하고 잠재적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응급 사례의 학대 유형은 “신체적 - 정서적 - 방임” 학대, 비응급 사례 및 잠재적 사례의 경우 “정서적 - 신체적 - 방임” 학대의 순으로 나타남.
- 응급 사례의 경우 신체적 학대 비율이 높았으며, 비응급 사례 및 잠재적 사례는 정서적 학대 유형이 응급 사례판정 유형보다 높게 나타남.

▶ **종 결**

- 2017년 전체 학대사례 4,622건을 기준으로 종결된 사례는 4,308건으로 93.2%의 종결률을 보임.
- 진행 중인 314건(6.8%)의 사례는 당해 연도 말에 접수되어 다음 년도까지 사례가 이월된 경우임.

▶ **재학대**

- 2017년 학대사례 4,622건 중 재학대 건수는 359건으로 7.8%에 해당되며 여성노인이 282명(78.6%), 남성노인이 77명(21.4%)으로 나타남.
- 2010년~2011년 9% 이상이던 재학대 건수는 점차 감소하여 2016년 5.8%로 나타났으나, 2017년 다시 증가추세를 보임
- ※ 연도별 재학대율 : '13년(6.0%) - '14년(5.9%) - '15년(6.0%) - '16년(5.8%) - '17년(7.8%)

학대피해노인 현황

▶ **성별 및 연령**

- 전체 학대사례 중 여성노인 3,460명(74.9%), 남성노인 1,162명(25.1%)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70대를 기점으로 학대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연령대별 학대피해노인 분포를 살펴보면 60대 881명(19.1%), 70대 2,040명(44.2%), 80대 1,425명(30.9%)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정서적 학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정서적 - 신체적 - 방임의 순으로 학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남성노인의 학대 유형 : 정서적 학대 672건(38.4%) - 신체적 학대 557건(31.8%) - 방임 222건(12.7%)
 - 여성노인의 학대 유형 : 정서적 학대 2,392건(43.2%) - 신체적 학대 2,094건(37.8%) - 방임 427건(7.7%)

▶ 결혼 및 동거가족

- 학대피해노인의 결혼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 없음이 2,286건(49.5%), 배우자 있음이 2,336건(50.5%)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피해노인 4,622명 중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는 3,194명(69.1%)이며, 비동거는 1,428명(30.9%)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3,194명에 대한 동거 가족유형(중복)은 총 4,934명이며, 그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1,790명(36.3%)으로 가장 높고, 아들이 1,599명(32.4%), 손자녀가 443명(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자녀동거가구가 1,536명(33.2%), 노인부부 가구가 1,216명(26.3%), 노인단독가구가 1,007명(21.8%)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노인부부가구 증가 추이 : '13년(635건) - '14년(701건) - '15년(808건) - '16년(1,023건) - '17년(1,216건)
- 학대피해노인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본인명의로 된 집에 거주하는 자택 2,793건(60.4%)으로 가장 높고, 전세가 463건(10.0%), 월세가 454건(9.8%)의 순으로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및 교육정도

-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785명으로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17.0%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초졸이 2,034명(44.0%)으로 가장 높았고 무학이 1,436명(31.1%), 중졸이 564명(12.2%)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초졸과 무학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직업유형은 학대피해노인의 주 수입원인 직업의 유무와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직이 4,037명(87.3%)으로 가장 높고, 단순노무종사자가 203명(4.4%), 농·어·축산업 종사자가 158명(3.4%)으로 그 뒤를 이었음.

▶ 건강상태

- 전체 학대피해노인 4,622명 중 하나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는 3,905건임.
- 전체 학대피해노인 4,622명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대피해노인은 496명으로 10.7%로 나타남.
 - 496명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장애 382건(77.0%), 정신장애 114건(23.0%)으로 분류됨.
 - 세부 유형으로는 지체장애가 140건(28.2%), 우울장애가 84건(16.9%), 청각장애 82건(1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는 1,122명(24.3%)임.
 - 이 중 치매가 의심되는 치매의심이 488건(10.6%)이며 치매로 병원진단을 받은 치매 진단은 634건(13.7%)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하나 이상의 중독을 앓고 있는 경우는 63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1.4%에 해당되며, 63건에 대한 세부유형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60건(95.2%)으로 나타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일상생활정도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두 가지 영역에서 67% 이상이 “완전자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체 학대사례 4,622건에 대해 총 128,134회로 한 사례당 평균 27.7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 이 중 상담서비스가 76,235회(59.5%)로 가장 높았고, 정보제공서비스가 40,148회(31.3%), 복지서비스 제공이 9,336회(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 현황

▶ 성별 및 연령대

- 전체 학대행위자는 5,101명⁷⁾으로 남성이 3,585명(70.3%), 여성이 1,516명(29.7%)임.
 - 전체 학대행위자 5,101명 중 아들이 1,913명으로 37.5%에 해당하였으며, 이는 남성 학대행위자 3,585명 중 약 53.4%에 해당하는 수치임.
 - 따라서 학대행위자의 남성 비율이 높은 것은 학대행위자 유형의 아들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학대행위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전체 학대행위자의 26.7%(1,363명)를 차지함.
 - 여성 학대행위자 1,516명 중 50~59세가 452명(29.8%), 40~49세가 343명(22.6%), 60~69세가 331명(21.8%)으로 나타남.
 - 남성 학대행위자 3,585명 중 70세 이상이 1,092명(30.5%), 50~59세가 823명(23.0%), 40~49세가 807명(22.5%)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전체 학대행위자 5,101건에 대한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들이 1,913명(37.5%), 배우자가 1,263명(24.8%), 기관이 704명(13.8%)의 순으로 나타남.
 - 아들, 배우자, 딸,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등 친족의 경우가 3,931명(77.1%)으로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학대행위자가 본인인 경우는 290명(5.7%)에 해당되며 전년대비 5.6%p 감소하였음.
※ 피해자 본인 : '16년(522건, 11.3%) - '17년(290건, 5.7%)

▶ 결혼 유형

- 학대행위자 결혼 유형은 크게 배우자 있음과 배우자 없음으로 구분되며 배우자 있음은 2,922명(57.3%), 배우자 없음은 2,179명(42.7%)으로 나타남.

7)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의 수와 학대행위자의 수는 차이가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및 교육정도

- 학대행위자의 5,101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75명(11.3%)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교육정도 수준으로 살펴보면 **고졸이 1,978명(3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졸 이상이 995명(19.5%)**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은 **무직이 2,970명(58.2%)**으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545명(10.7%), 단순노무종사자가 508명(10.0%), 전문직이 354명(6.9%) 순으로 나타남.

▶ 건강상태

- 학대행위자 5,101명 중에서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대행위자는 총 608명으로 전체 학대행위자의 11.9%에 해당됨.
 - 이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으로는 **정신장애 424명(69.7%)**, **신체장애가 184명(30.4%)**으로 나타남.
 - 세부 유형별로 보면 **정신분열 191명(31.4%)**, **우울장애 110명(1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행위자 중 **835명(16.4%)**이 하나 이상의 **중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801명(15.7%)**, **도박중독이 18명(0.4%)**, **약물 사용 장애가 16명(0.3%)**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학대행위자 5,101건에 대해 총 20,502회로 한 사례당 평균 4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 이는 학대피해노인에게 제공된 서비스 128,134회의 약 16.0% 수준임.
 -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를 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12,078회(59.0%)**로 가장 높고 **정보제공서비스가 7,483회(36.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상담과 정보제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노인학대 유형 및 학대발생원인

▶ 노인학대 유형

-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학대 유형을 중복으로 집계한 것으로 2017년 학대 유형 건수는 7,287건⁸⁾으로 나타남.
 - 정서적 학대 3,064건(42.0%), 신체적 학대 2,651건(36.4%), 방임 649건(8.9%), 경제적 학대 411건(5.6%), 자기방임 291건(4.0%), 성적 학대 150건(2.1%), 유기 71건(1.0%)순으로 나타남.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등의 학대 유형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7:3 정도의 수준으로 전체 성별비율과 비례하고 있으나, 성적 학대와 자기방임, 유기는 다른 양상을 보임.
 - 신체적 학대 : 여성 2,094명(79.0%), 남성 557명(21.0%)
 - 정서적 학대 : 여성 2,392명(78.1%), 남성 672명(21.9%)
 - 성적 학대 : 여성 131명(87.3%), 남성 19명(12.7%)
 - 경제적 학대 : 여성 298명(72.5%), 남성 113명(27.5%)
 - 방임 : 여성 427명(65.8%), 남성 222명(34.2%)
 - 자기방임 : 여성 163명(56.0%), 남성 128명(44.0%)
 - 유기 : 남성 39명(54.9%), 여성 32명(45.1%)
- 학대 유형별로 연령대 현황을 보면 주로 70~80대 비율이 74.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신체, 정서, 자기방임, 유기 학대 유형의 경우 70대 그룹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 성적 학대 및 방임 유형은 80대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학대의 경우 70대와 80대 모두 비슷한 비율로 발생함.
-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학대행위자 유형은 “아들 - 배우자 - 딸” 순이며, 방임의 경우는 “아들 - 기관⁹⁾ - 딸” 순으로 나타남.
 - 방임의 경우, 자녀에 의한 방임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소한 학대 피해노인을 방임하는 것을 모두 포함함.

8)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노인학대 수치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수치는 차이가 있음. 즉, 학대피해노인 1명이 학대행위자로부터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 학대사례는 1건이나 학대유형 건수는 2건으로 집계됨.

9) 노인복지시설 등의 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을 방임하는 경우를 의미함.

- 기타 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유형 순위
 - 경제적 학대(아들 - 딸 - 배우자)
 - 성적 학대(기관 - 배우자 - 타인)
 - 유기(아들 - 딸 - 배우자)

▶ 학대발생장소

- 전체 학대사례 4,622건 중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4,129건(8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정 내 4,129건(89.3%), 생활시설 327건¹⁰⁾(7.1%), 기타 65건(1.4%), 공공장소 58건(1.3%), 병원 27건(0.6%), 이용시설 16건(0.3%) 등으로 나타남.
 - 매년 가정 내 학대 신고건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정 내 학대발생 예방과 더불어 사례 발굴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12년~2014년 6% 이상을 상회하던 생활시설 학대추이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17년 전년대비 1.5%p 증가함.
 - 생활시설 학대 추이 : '13년 251건(7.1%) - '14년 246건(7.0%) - '15년 206건(5.4%) - '16년 238건(5.6%) - '17년 327건(7.1%)

▶ 학대발생빈도 및 지속기간

- 노인학대사례의 학대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1주일에 한번이상이 1,471건(31.8%), 1개월에 한번이상 1,243건(26.9%), 매일이 717건(1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매일 및 1주일에 한번이상 학대를 받는 경우가 2,188건(47.3%)으로 학대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학대지속기간은 최초 학대가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지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5년 이상이 1,591건(34.4%), 1년 이상 5년 미만이 1,508건(32.6%),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828건(1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이상 학대가 지속된 경우가 3,099건(67.0%)으로 나타남.
 - 이는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대상황이 더 악화 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10) 2015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에 한하여 생활시설 학대로 집계함

▶ 학대행위자 원인

- 2017년 한 해 동안 신고접수 된 학대사례 중에서 학대 발생원인이 학대행위자에게서 발견된 경우 그 세부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중복)하게 했을 때 총 8,415건 중 개인의 내적 문제가 2,899건(34.5%), 개인의 외적문제가 1,496건(17.8%)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 개인의 내적·외적 기질적 특성으로 인한 학대행위자 원인이 52.3%로 과반을 차지함.
 - 개인의 내적문제는 학대행위자의 성격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노, 고집, 자신감 결여, 폭력 및 충동성 등의 조절 또는 통제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해당되며, 학대 피해노인 부양부담은 부양의무감 및 책임감으로 느끼게 되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감을 의미하고, 개인의 외적문제는 학대행위자의 이혼, 재혼, 부부갈등, 스트레스, 실직 등의 문제를 나타냄.

▶ 가족 - 환경 원인

- 학대 발생원인이 가족 - 환경 원인에 있는 경우는 총 4,329건으로 피해자 - 학대행위자 갈등이 2,709건(62.6%)으로 가장 높고,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이 1,005건(23.2%),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615건(14.2%)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 - 학대행위자 갈등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두 사람 사이의 갈등 관계를 의미하며,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은 부모 부양문제, 재산 문제 등으로 학대피해 노인 자녀 간, 형제 간, 친족 간의 갈등으로 여러 사람이 갈등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의미함.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보호노인 현황

- 2017년 보호노인은 총 1,379명이며 입소자가 520명, 이용자가 859명으로 쉼터 1개당 월 평균 6.4명이 입소 및 이용하였음.

▶ 보호노인 연령대

- 보호노인 전체 연령 비율은 주로 70대에서 80대 초반에 분포되어 있음.

- 입소자 : 70~84세 연령대 수 352명(67.7%)
- 이용자 : 70~84세 연령대 수 635명(73.9%)

▶ 보호노인 결혼 유형

- 보호노인 전체 결혼 유형은 배우자 없음이 780명(56.6%), 배우자 있음이 596명(43.2%)으로 나타남.
 - 입소자와 이용자 간의 결혼 유형 비율은 입소자의 배우자 있음의 비율이 더 높았음(입소자 258명 49.6%, 이용자 338명 39.3%).

▶ 보호노인의 가구형태

- 입소자의 가구형태 비율은 노인부부 - 자녀동거 - 노인단독의 순인 반면, 이용자의 가구형태 비율은 노인단독 - 노인부부 - 자녀동거로 다른 양상을 보임
 - 입소자 : 노인부부 210명(40.4%) - 자녀동거 157명(30.2%) - 노인단독 97명(18.7%)
 - 이용자 : 노인단독 417명(48.5%) - 노인부부 257명(29.9%) - 자녀동거 114명(13.3%)

▶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 입소자의 동거자 유형은 배우자 211명(43.0%), 아들 143명(29.1%), 딸 44명(9.0%)의 순이며
 - 이용자는 배우자 298명(51.1%), 아들 129명(22.1%), 손자녀 50명(8.6%) 등임.

▶ 보호노인 주거형태

- 보호노인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입소자의 경우 자가 349명(67.1%), 기타 56명(10.8%), 월세 54명(10.4%), 전세가 37명(7.1%) 등의 순이며
 - 이용자는 자가 455명(53.0%), 전세 174명(20.3%), 월세 160명(18.6%) 순이었음.

▶ 보호노인 학대 유형

- 입소자의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 413건(43.8%), 신체적 학대 356건(37.7%), 경제적 학대 79건(8.4%) 등의 순이며, 이용자는 정서적 학대 633건(49.3%), 신체적 학대 319건(24.8%), 자기방임 104건(8.1%)의 순으로 나타남.

▶ 보호노인 치매여부

- 보호노인의 치매여부를 보면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로 판정받은 경우는 입소자의 경우 73명(14.0%), 이용자는 33명(3.8%)으로 나타남.

▶ 보호노인의 우울증 검사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보호노인은 사전·사후 자가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여 우울증의 감소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 2017년 보호노인 1,379명 중 급작스런 퇴소, 학대피해노인의 거부, 치매,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제외한 우울증 검사를 실시한 사례는 1,185건이며 그 중 1,170명(98.7%)이 우울증이 감소하였음.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서비스 제공현황

- 입소노인에 대한 쉼터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총 46,476회, 104,969명(연인원)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 제공된 서비스는 식사제공, 법률상담연결 및 법률소송지원등의 **법률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등의 **의료서비스**,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상담원 상담 및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및 건강증진, 문화여가, 사회기능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음.
- 이용노인에 대한 쉼터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총 3,448회, 8,367명(연인원)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Chapter 01

서론

1. 발간목적
2. 법적근거
3. 자료수집과정
4. 자료분석
5. 주요내용

1 발간목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제도적 발달이 늦은 것은 사실이나, 지난 10년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동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질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1개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18개¹¹⁾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국의 노인학대 현황 추이를 분석하고 노인학대와 관련한 인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한국사회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통계청 승인번호 11767)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제4목에 따라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기록된 노인학대 사례 및 교육·홍보 활동 자료를 분석하였음

11) 이 중 경북서북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경상북도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3 자료수집과정

본 자료는 2017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노인학대 예방 사업실적을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집계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며, 해당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다.

4 자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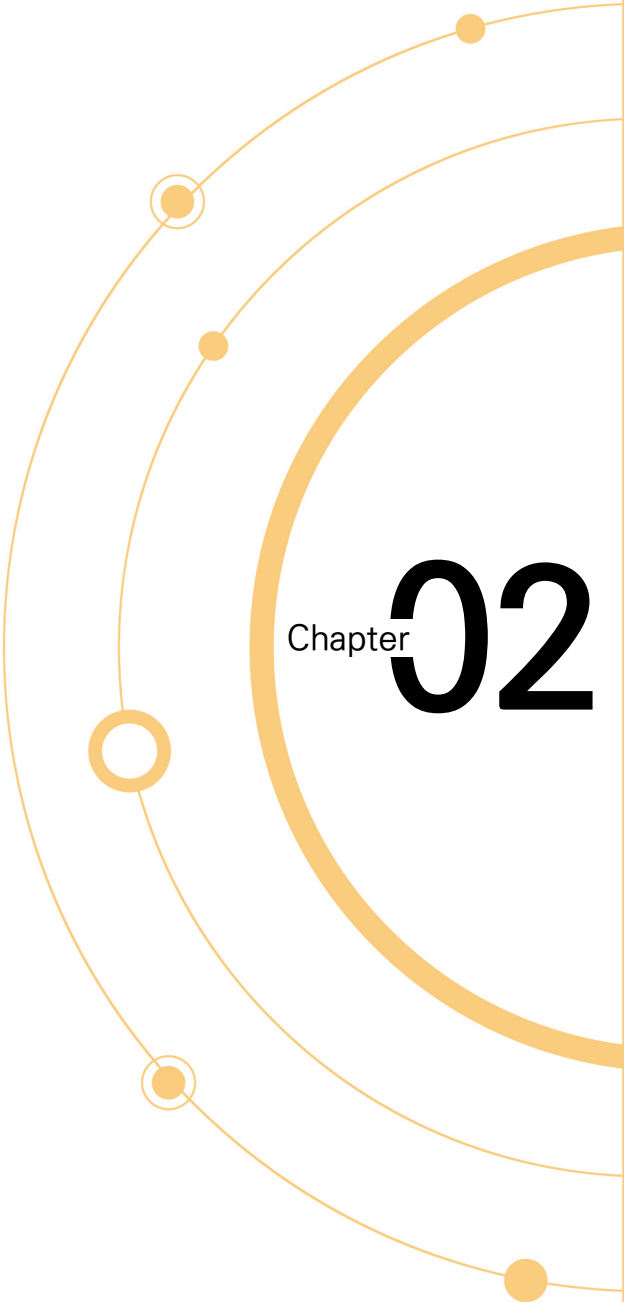
모든 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의미 있는 몇 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인학대 현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 학대사례에 대해 연도별 변화(05년~17년)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10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2017. 6. 3.)에 따라 2017년 6월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침에서는 2017년 11월 이후부터 65세 연령기준이 반영되었으므로 본 보고서는 연령기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60세로 두었다.

5 주요내용

전국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집계된 노인학대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에서 파악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 류	내 용	
신고접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접수 및 상담 건수 • 신고자 유형 • 신고접수 경로 및 인지경로 유형 	
노인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 • 사례판정 • 종결률 및 종결사유 	
노인학대 사례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피해노인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대, 결혼유형 - 가구형태, 주거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직업유형, 교육정도 - 건강상태, 일상생활 정도 -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 학대행위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대, 결혼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직업유형, 교육정도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학대행위자 유형) - 건강상태,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 노인학대 유형 II (학대 유형 건수) •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빈도, 학대지속기간, 학대발생원인 	
특성별 노인학대 사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 재학대 • 노인단독가구 현황 • 시설학대 현황 • 노(老) - 노(老)학대 현황 • 치매노인 학대현황 	
기타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연도별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 연도별 재학대 현황 • 연도별 신고자 유형 • 연도별 상담횟수 •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 연도별 생활시설학대 현황 •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 연도별 피해자 가구형태 • 연도별 학대행위자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 연도별 종결사례 현황 • 연도별 종결사유



Chapter **02**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1. 노인학대 신고접수
2. 노인학대 상담

제2장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1 노인학대 신고접수

1) 전체 신고접수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속한 학대사례 개입을 위하여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인인권증진 및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직접내방, 가정방문, 이동상담 등을 통한 대면 접수 및 서신에 의한 접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¹²⁾, 보건복지콜센터 129¹³⁾, 112, 119 신고 등을 통하여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신고접수된 사례는 노인학대 여부, 응급성 정도, 현재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학대 지속성 여부 등의 기초정보를 수집하여 노인학대의심사례와 일반사례를 판정한다. 노인학대의심사례란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로 응급(12시간), 비응급 및 잠재적 사례(72시간)를 말하며, 일정시간 이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 조치 등을 확인하고 학대의심사례로서의 적합성 판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한다. 일반사례는 신고접수된 사례 중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로 노인학대와 관련 없이 단순 시설입소, 기관안내 등의 문의와 자녀 간 재산 갈등의 법적 분쟁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및 노인학대로 신고되었지만 정보부족(노인 및 기타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부족, 주소불명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2) 행정안전부가 '긴급 신고전화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함(2015.1.27.). 비응급 일반 민원이나 전문상담은 110을 이용하며, 2016년 7월부터 정부민원콜센터 110으로 걸려온 노인학대 관련문의콜센터 상담사가 접수하여 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함.

13) 행정안전부가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2016년 10월부터 전면시행하면서 범죄와 관련된 긴급신고 번호를 112로 통합함.

이처럼 신고당시 수집한 기초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각 기관은 자체사례회의 및 사례판정위원회 등을 거쳐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일반 사례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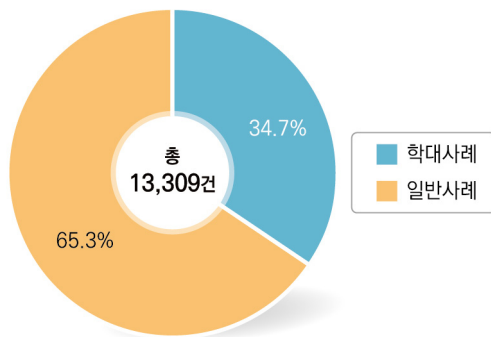
본 보고서에서는 학대사례에 포함되는 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와 일반사례 접수 건수의 총계를 전체 신고접수 건수로 보았다.

〈표2-1〉에서 보듯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201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 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13,309건이며, 이 중 일반사례 건수는 8,687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65.3%이며 학대사례는 4,622건, 34.7%로 나타났다. 접수된 학대사례 건수에는 2017년 처음 노인학대가 발생하여 신고 된 신규사례 4,263건(92.2%)과 2017년 이전 또는 당해 접수된 사례 중 재학대 되어 접수된 사례 359건(7.8%)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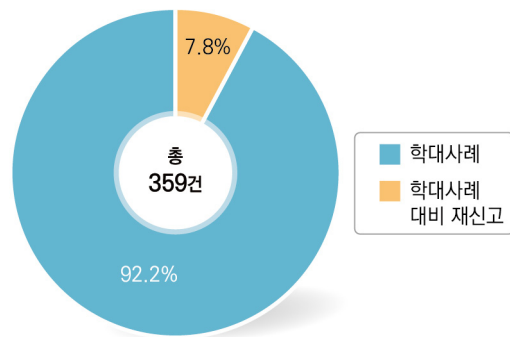
[표 2-1]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 건, %)

구 분	전체 신고접수			학대사례 대비 재학대 사례
	학대사례	일반사례	전 체	
건 수	4,622	8,687	13,309	359
비 율	34.7	65.3	100	7.8



[그림 2-1] 전체 신고건수 비율



[그림 2-2] 학대사례 건수 대비 재학대 건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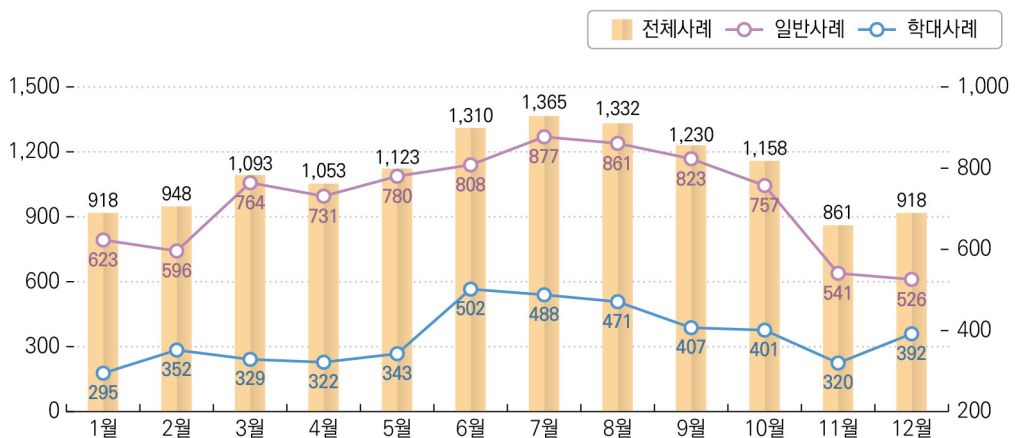


2017년 접수된 노인학대신고 접수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1,109.1건(8.3%)이 접수되었고 신고접수가 가장 많았던 달은 7월이 1,365건(10.3%)으로 가장 높았으며, 8월이 1,332건(10.0%), 6월 1,310건(9.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평균수준을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11월의 신고건수가 861건(6.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2] 월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분	학대사례		일반사례		전체사례	
1월	295	6.4	623	7.2	918	6.9
2월	352	7.6	596	6.9	948	7.1
3월	329	7.1	764	8.8	1,093	8.2
4월	322	7.0	731	8.4	1,053	7.9
5월	343	7.4	780	9.0	1,123	8.4
6월	502	10.9	808	9.3	1,310	9.8
7월	488	10.6	877	10.1	1,365	10.3
8월	471	10.2	861	9.9	1,332	10.0
9월	407	8.8	823	9.5	1,230	9.2
10월	401	8.7	757	8.7	1,158	8.7
11월	320	6.9	541	6.2	861	6.5
12월	392	8.5	526	6.1	918	6.9
계	4,622	100	8,687	100	13,309	100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건수 추이

2)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표 2-3〉과 같이 전체 지역별 신고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17개 시·도의 신고 접수 건수 평균은 78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신고 건수가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2017년 한 해 동안 2,092건이 신고 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가 1,470건, 경상 북도가 1,096건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신고 건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208건인 제주 특별자치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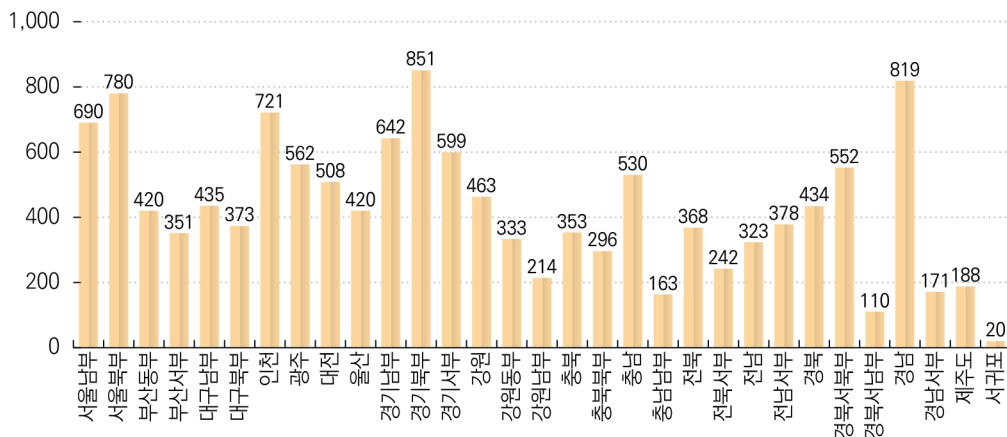
[표 2-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일반사례		계	
서울	서울남부	224	32.5	466	67.5	690	100
	서울북부	216	27.7	564	72.3	780	100
	소계	440	29.9	1,030	70.1	1,470	100
부산	부산동부	194	46.2	226	53.8	420	100
	부산서부	179	51.0	172	49.0	351	100
	소계	373	48.4	398	51.6	771	100
대구	대구남부	110	25.3	325	74.7	435	100
	대구북부	97	26.0	276	74.0	373	100
	소계	207	25.6	601	74.4	808	100
인천		444	61.6	277	38.4	721	100
광주		240	42.7	322	57.3	562	100
대전		119	23.4	389	76.6	508	100
울산		104	24.8	316	75.2	420	100
경기	경기남부	225	35.0	417	65.0	642	100
	경기북부	269	31.6	582	68.4	851	100
	경기서부	260	43.4	339	56.6	599	100
	소계	754	36.0	1,338	64.0	2,092	100
강원	강원	148	32.0	315	68.0	463	100
	강원동부	70	21.0	263	79.0	333	100
	강원남부	71	33.2	143	66.8	214	100
	소계	289	28.6	721	71.4	1,010	100
충북	충북	111	31.4	242	68.6	353	100
	충북북부	54	18.2	242	81.8	296	100
	소계	165	25.4	484	74.6	649	100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일반사례		계	
충남	충남	165	31.1	365	68.9	530	100
	충남남부	70	42.9	93	57.1	163	100
	소계	235	33.9	458	66.1	693	100
전북	전북	142	38.6	226	61.4	368	100
	전북서부	94	38.8	148	61.2	242	100
	소계	236	38.7	374	61.3	610	100
전남	전남	152	47.1	171	52.9	323	100
	전남서부	174	46.0	204	54.0	378	100
	소계	326	46.5	375	53.5	701	100
경북	경북	112	25.8	322	74.2	434	100
	경북서북부	144	26.1	408	73.9	552	100
	경북서남부	63	57.3	47	42.7	110	100
	소계	319	29.1	777	70.9	1,096	100
경남	경남	211	25.8	608	74.2	819	100
	경남서부	62	36.3	109	63.7	171	100
	소계	273	27.6	717	72.4	990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80	42.6	108	57.4	188	100
	제주도서귀포시	18	90.0	2	10.0	20	100
	소계	98	47.1	110	52.9	208	100
계		4,622	34.7	8,687	65.3	13,309	100



[그림 2-4] 지역 기관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지역별 신고 접수율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체인구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수와 비교하여 분석해보았다. 우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1,467,83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서울특별시가 1,359,901명, 부산광역시가 565,527명으로 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노인인구수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총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비율을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21.5%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가 19.0%, 전라북도가 18.9%로 나타나 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긴 하나, 각 지역의 전체인구수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노인인구수 천 명당 노인학대 신고 접수율을 추정해보면 노인인구 천 명당 학대 신고 접수율은 1.8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울산광역시와 강원도가 3.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 3.1명, 대전광역시 2.8명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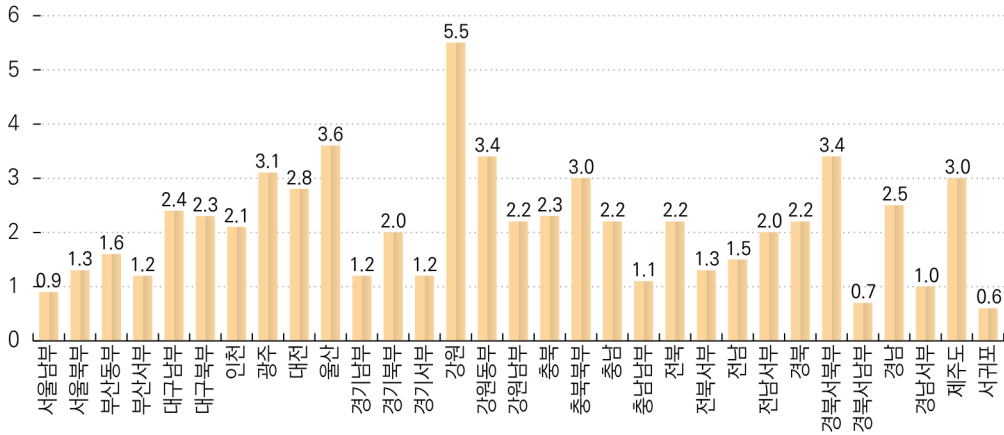
그러나 위의 수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접수에 의해 발생된 피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의 적극적 신고에 의한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노인학대의 은폐성을 고려할 때 학대 피해노인은 더 많을 수 있어 실제 노인학대 발생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2-4]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율

(단위: 명, 건, %)

지역 및 기관명		총인구수 (A)	65세 이상 인구수 (B)	총인구수대비 65세 이상 인구수 (C=B/A×100)	신고접수 건수 (D)	지역별신고 접수율 (노인인구 천명당) (E=D/B×1000)
서울	서울남부	5,688,866	739,566	13.0	690	0.9
	서울북부	4,168,560	620,335	14.9	780	1.3
	소계	9,857,426	1,359,901	13.8	1,470	1.1
부산	부산동부	1,623,326	269,058	16.6	420	1.6
	부산서부	1,847,327	296,469	16.0	351	1.2
	소계	3,470,653	565,527	16.3	771	1.4
대구	대구남부	1,413,499	184,020	13.0	435	2.4
	대구북부	1,061,732	163,439	15.4	373	2.3
	소계	2,475,231	347,459	14.0	808	2.3
인천		2,948,542	345,024	11.7	721	2.1
광주		1,463,770	180,862	12.4	562	3.1

지역 및 기관명	총인구수 (A)	65세 이상 인구수 (B)	총인구수대비 65세 이상 인구수 (C=B/A×100)	신고접수 건수 (D)	지역별신고 접수율 (노인인구 천명당) (E=D/B×1000)	
대전	1,502,227	180,667	12.0	508	2.8	
울산	1,165,132	116,633	10.0	420	3.6	
경기	경기남부	4,588,964	537,506	11.7	642	1.2
	경기북부	3,357,324	433,977	12.9	851	2.0
	경기서부	4,927,607	496,352	10.1	599	1.2
	소계	12,873,895	1,467,835	11.4	2,092	1.4
강원	강원	480,478	84,141	17.5	463	5.5
	강원동부	554,838	96,999	17.5	333	3.4
	강원남부	514,826	98,836	19.2	214	2.2
	소계	1,550,142	279,976	18.1	1,010	3.6
충북	충북	1,083,109	152,290	14.1	353	2.3
	충북북부	511,323	100,144	19.6	296	3.0
	소계	1,594,432	252,434	15.8	649	2.6
충남	충남	1,808,041	243,782	13.5	530	2.2
	충남남부	588,829	146,015	24.8	163	1.1
	소계	2,396,870	389,797	16.3	693	1.8
전북	전북	962,163	167,777	17.4	368	2.2
	전북서부	892,444	183,505	20.6	242	1.3
	소계	1,854,607	351,282	18.9	610	1.7
전남	전남	1,087,929	220,136	20.2	323	1.5
	전남서부	808,495	188,315	23.3	378	2.0
	소계	1,896,424	408,451	21.5	701	1.7
경북	경북	1,041,180	201,457	19.3	434	2.2
	경북서북부	602,349	162,557	27.0	552	3.4
	경북서남부	1,048,177	148,667	14.2	110	0.7
	소계	2,691,706	512,681	19.0	1,096	2.1
경남	경남	2,611,871	333,037	12.8	819	2.5
	경남서부	768,533	171,423	22.3	171	1.0
	소계	3,380,404	504,460	14.9	990	2.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478,700	61,653	12.9	188	3.0
	제주도서귀포시	178,383	31,464	17.6	20	0.6
	소계	657,083	93,117	14.2	208	2.2
계	51,778,544	7,356,106	14.2	13,309	1.8	



[그림 2-5] 기관별 노인학대 신고접수율(노인인구 천명당)

3) 신고자 유형

노인학대 신고자의 유형은 크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되며 신고의무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의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기사 등으로 분류된다.

〈표 2-5〉는 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신고접수 된 전체 4,622건에 대한 신고자 유형을 살펴 본 것이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635건으로, 전년 대비 15.4% 가량 감소하였다('16년 751건 → '17년 635건). 반면 비신고의무자는 3,987건으로 작년 대비 약 1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년 3,529건 → '17년 3,98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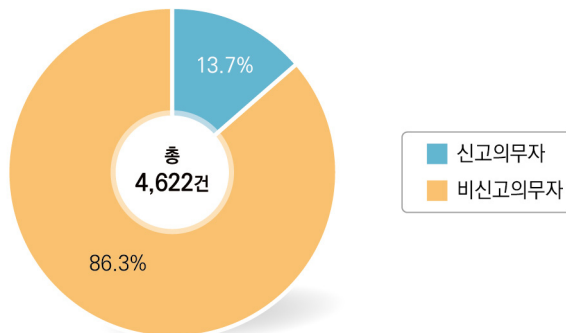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표 2-5] 신고자 유형 I

(단위: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계
635	3,987	4,622
13.7	86.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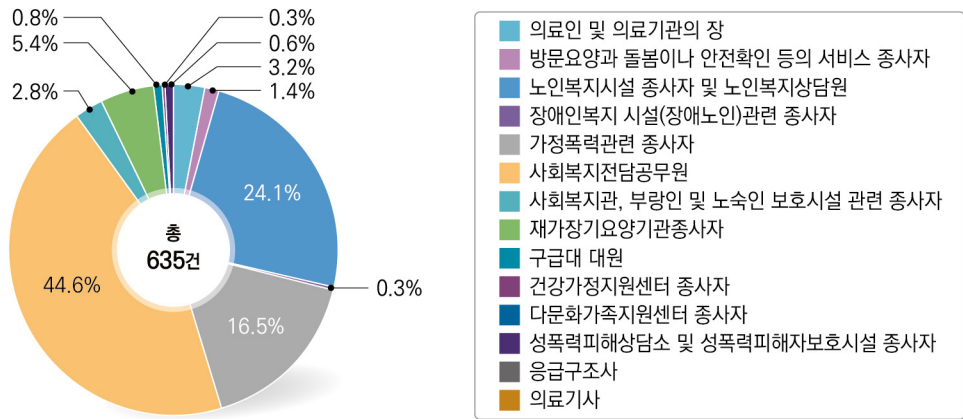
[그림 2-6] 신고자 유형 I

〈표 2-6〉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유형을 세분화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전체 신고의무자의 각 직군별 신고건수와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전체 635건 중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283건(44.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이 153건(24.1%)으로 나타났다.

【표 2-6】 신고자 유형Ⅱ(신고의무자)

(단위: 건, %)

신고의무자														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관련 종사자	가정폭력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급대 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20	9	153	2	105	283	18	34	5	2	-	4	-	-	635
3.2	1.4	24.1	0.3	16.5	44.6	2.8	5.4	0.8	0.3	-	0.6	-	-	100



【그림 2-7】 신고자 유형Ⅱ

비신고의무자의 세부 유형의 경우 전체 3,987건 중 관련기관¹⁴⁾이 2,388건(5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타인이 755건(18.9%), 학대피해노인 본인이 신고한 건수가 431건(10.8%)으로 뒤를 이었다. 타인은 기타 관련 기관 종사자, 동거인, 이웃, 익명, 친구 등이 해당된다.

14)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표 2-7] 신고자 유형Ⅲ (비신고의무자)

(단위: 건, %)

비신고의무자					계
학대피해노인 본인	학대행위자 본인	친족 ¹⁵⁾	타인 ¹⁶⁾	관련기관 ¹⁷⁾	
431	6	407	755	2,388	3,987
10.8	0.2	10.2	18.9	59.9	100

4) 신고접수 및 인지경로 유형

가. 신고접수 경로

신고접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사례의 응급성 정도, 현재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학대 지속성 여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대처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신고접수 경로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112 또는 119 신고에 의해 접수된다. 2016년 7월부터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걸려온 노인학대 관련 문의를 콜센터 상담사가 접수 후 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하기로 추진되어 신고접수 경로에 포함되었다.

<표 2-8>을 살펴보면 자체접수가 2,727건(59.0%), 112이관이 1,622건(35.1%), 희망복지지원단이 101건(2.2%) 순으로 나타나 자체접수와 112이관이 전체 신고접수 경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 보건복지콜센터 129이관을 통한 신고는 94건(2.0%), 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접수는 31건(0.7%), 노인돌봄서비스생활관리사가 28건(0.6%), 건강보험공단이 6건(0.1%), 110이관과 노인일자리사업이 5건(0.1%), 경로당이 3건(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신고접수 경로

(단위: 건, %)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이관	보건복지 콜센터 129이관	112이관	건강보험 공단	경로당	노인돌봄 서비스 생활 관리사	노인 일자리 사업	자체 접수	타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관	희망 복지 지원단	계
5	94	1,622	6	3	28	5	2,727	31	101	4,622
0.1	2.0	35.1	0.1	0.1	0.6	0.1	59.0	0.7	2.2	100

15) 친족에는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등이 해당됨.

16) 타인에는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기타 타인, 동거인, 이웃, 익명, 친구 등이 해당됨.

17)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나. 신고접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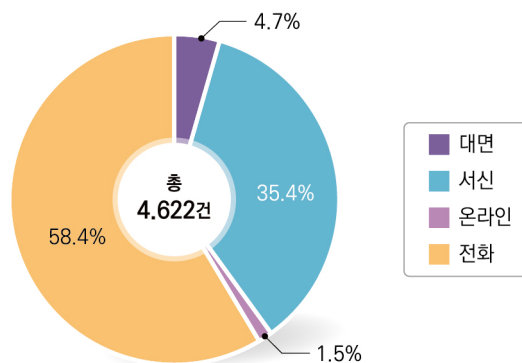
신고접수 유형은 신고접수 경로의 세부적인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를 통한 전화신고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신고, 신고자의 기관내방 또는 상담원 방문 등의 대면신고 및 서신에 의한 신고로 분류된다.

가장 높은 신고접수 유형은 전화로, 총 2,701건이 신고 되었으며 접수유형의 58.4%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서신 신고가 1,636건(35.4%), 상담원의 방문 및 신고자의 내방 등으로 인한 대면신고가 216건(4.7%), 온라인은 69건(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서신을 통한 신고접수가 크게 증가하였다('16년: 648건 → '17년: 1,636건).

[표 2-9] 신고접수 유형

(단위: 건, %)

대 면	서 신	온라인	전 화	계
216	1,636	69	2,701	4,622
4.7	35.4	1.5	58.4	100



[그림 2-8] 신고접수 유형

다. 신고 인지경로 유형

신고 인지경로 유형은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알게 된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 2-10>과 같이 분류한다.

전체 신고 인지경로 유형을 살펴보면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 경우에 의한 신고가 3,296건(7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접홍보 신고의 경우가 354건(7.7%), 336건



(7.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타 기관 안내(5.3%), 대중매체(3.7%), 인터넷(2.4%), 주변인(2.4%) 등을 통해서 신고경로를 인지한 경우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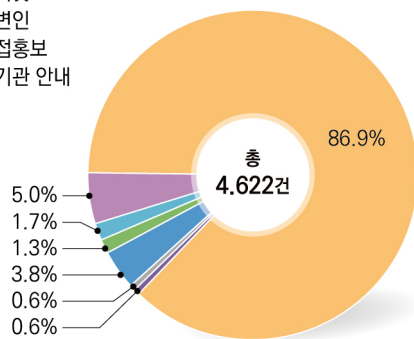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에 따른 신고 인지경로 유형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의 경우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이 552건(86.9%)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이미 개입 경험이 있으며 직접 홍보의 경우'가 32건(5.0%)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의 경우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이 2,744건(68.8%)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접홍보'가 330건(8.3%)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10] 신고 인지경로 유형별 신고자 구분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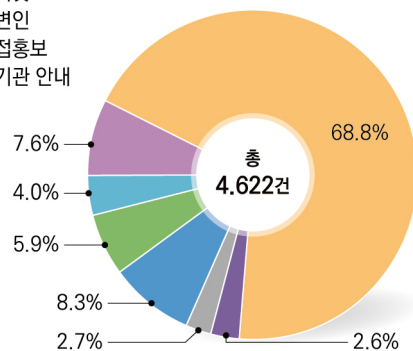
구분	대중매체	이미 개입 경험이 있으며 직접 홍보의 경우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	인터넷	주변인	직접홍보	타기관 안내	계
신고 의무자	11	32	552	4	4	24	8	635
	1.7	5.0	86.9	0.6	0.6	3.8	1.3	100
비신고 의무자	161	304	2,744	105	106	330	237	3,987
	4.0	7.6	68.8	2.6	2.7	8.3	5.9	100
계	172	336	3,296	109	110	354	245	4,622
	3.7	7.3	71.3	2.4	2.4	7.7	5.3	100

- 대중매체
- 이미 개입 경험이 있으며 직접 홍보의 경우
-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
- 인터넷
- 주변인
- 직접홍보
- 타기관 안내



[그림 2-9] 신고의무자의 신고 인지경로

- 대중매체
- 이미 개입 경험이 있으며 직접 홍보의 경우
-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
- 인터넷
- 주변인
- 직접홍보
- 타기관 안내



[그림 2-10]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인지경로

2 노인학대 상담

1) 월별 상담횟수

2017년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 13,309건에 대한 전체 상담횟수는 111,245회로, 학대상담 횟수가 88,919회(79.9%), 일반상담 횟수는 22,326회(20.1%)로 나타났다. 학대상담의 경우 접수상담, 방문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담이 이루어진다. 반면, 일반상담은 단순 정보제공 등의 일반사례에 대한 상담으로 대부분 1~2회 상담이 이루어지며 보통 정보제공과 동시에 상담이 종료된다.

월별 상담횟수 현황을 살펴보면 학대상담의 경우 월평균 7,409.9회, 일반상담의 경우 월평균 1,860.5회 진행되었다. 월별 전체 상담횟수 추이는 7월이 10,948회(9.8%), 8월이 10,786회(9.7%), 9월이 10,364회(9.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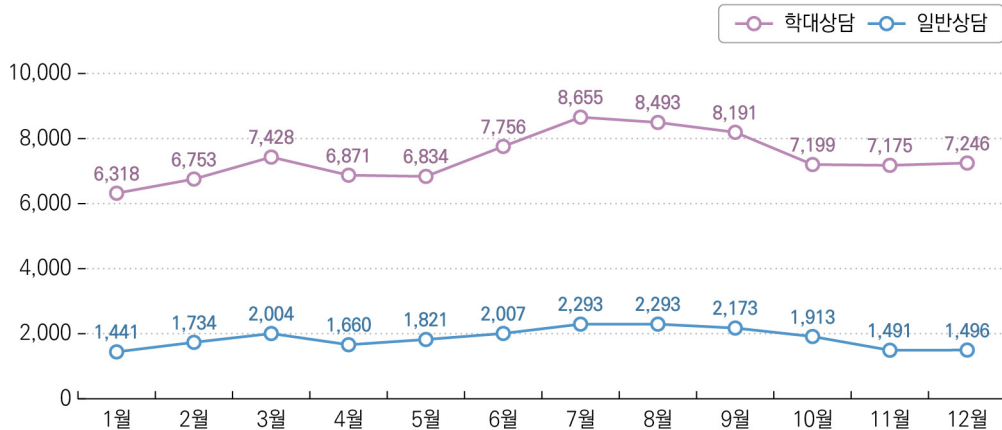
[표 2-11] 월별 상담횟수

(단위: 회, %)

구 분	학대상담	일반상담	전 체
1월	6,318	1,441	7,759
	7.1	6.5	7.0
2월	6,753	1,734	8,487
	7.6	7.8	7.6
3월	7,428	2,004	9,432
	8.4	9.0	8.5
4월	6,871	1,660	8,531
	7.7	7.4	7.7
5월	6,834	1,821	8,655
	7.7	8.2	7.8
6월	7,756	2,007	9,763
	8.7	9.0	8.8
7월	8,655	2,293	10,948
	9.7	10.3	9.8
8월	8,493	2,293	10,786
	9.6	10.3	9.7



구 분	학대상담	일반상담	전 체
9월	8,191	2,173	10,364
	9.2	9.7	9.3
10월	7,199	1,913	9,112
	8.1	8.6	8.2
11월	7,175	1,491	8,666
	8.1	6.7	7.8
12월	7,246	1,496	8,742
	8.1	6.7	7.9
계	88,919	22,326	111,245
	100	100	100



[그림 2-11] 월별 상담횟수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학대상담방법은 전체 학대상담 횟수 88,919회에 대한 구체적 상담방법에 대한 분류로, 전체 상담 중 59,511회(66.9%)를 차지한 전화상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이 진행된 방문상담이 23,115회(26.0%)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상담방법의 대부분(92.9%)이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상담방법으로는 서신이 3,029회(3.4%), 내방이 1,995회(2.2%), 기타가 1,006회(1.1%), 온라인이 263회(0.3%) 순으로 나타났다.

비율이 가장 높은 학대상담방법을 기준으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화상담의 경우

서울특별시 11.8%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11.0%, 부산광역시 10.1%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방문상담의 경우 경기도가 9.6%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 9.2%, 서울특별시 9.0%, 강원도 8.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기관별로 보면, 전화상담의 경우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7.9%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방문상담의 경우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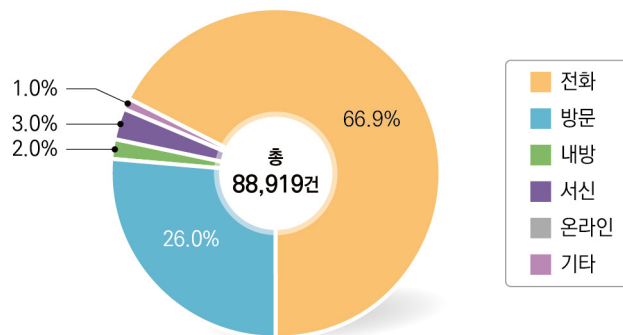
[표 2-1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단위: 건, %)

지역	지역기관	전 화		방 문		내 방		서 신		온라인		기 타		계	
서울	서울남부	3,611	6.1	1,045	4.5	34	1.7	210	6.9	58	22.1	323	32.1	5,281	5.9
	서울북부	3,407	5.7	1,037	4.5	82	4.1	142	4.7	51	19.4	154	15.3	4,873	5.5
	소계	7,018	11.8	2,082	9.0	116	5.8	352	11.6	109	41.4	477	47.4	10,154	11.4
부산	부산동부	3,022	5.1	1,018	4.4	54	2.7	207	6.8	9	3.4	11	1.1	4,321	4.9
	부산서부	2,986	5.0	660	2.9	63	3.2	20	0.7	-	-	5	0.5	3,734	4.2
	소계	6,008	10.1	1,678	7.3	117	5.9	227	7.5	9	3.4	16	1.6	8,055	9.1
대구	대구남부	1,535	2.6	1,058	4.6	33	1.7	60	2.0	3	1.1	4	0.4	2,693	3.0
	대구북부	1,319	2.2	502	2.2	27	1.4	86	2.8	3	1.1	47	4.7	1,984	2.2
	소계	2,854	4.8	1,560	6.7	60	3.0	146	4.8	6	2.3	51	5.1	4,677	5.3
인천		3,336	5.6	1,254	5.4	29	1.5	665	22.0	10	3.8	-	-	5,294	6.0
광주		3,465	5.8	1,011	4.4	246	12.3	77	2.5	10	3.8	14	1.4	4,823	5.4
대전		1,450	2.4	738	3.2	150	7.5	235	7.8	1	0.4	15	1.5	2,589	2.9
울산		1,543	2.6	577	2.5	10	0.5	42	1.4	2	0.8	11	1.1	2,185	2.5
경기	경기남부	1,940	3.3	952	4.1	15	0.8	140	4.6	32	12.2	38	3.8	3,117	3.5
	경기북부	2,808	4.7	771	3.3	108	5.4	116	3.8	4	1.5	10	1.0	3,817	4.3
	경기서부	1,793	3.0	491	2.1	65	3.3	224	7.4	18	6.8	32	3.2	2,623	2.9
	소계	6,541	11.0	2,214	9.6	188	9.4	480	15.8	54	20.5	80	8.0	9,557	10.7
강원	강원	2,562	4.3	1,116	4.8	107	5.4	93	3.1	6	2.3	171	17.0	4,055	4.6
	강원동부	1,278	2.1	618	2.7	9	0.5	43	1.4	2	0.8	2	0.2	1,952	2.2
	강원남부	786	1.3	215	0.9	23	1.2	3	0.1	4	1.5	11	1.1	1,042	1.2
	소계	4,626	7.8	1,949	8.4	139	7.0	139	4.6	12	4.6	184	18.3	7,049	7.9
충북	충북	1,236	2.1	689	3.0	232	11.6	61	2.0	9	3.4	2	0.2	2,229	2.5
	충북북부	1,141	1.9	671	2.9	12	0.6	28	0.9	1	0.4	5	0.5	1,858	2.1
	소계	2,377	4.0	1,360	5.9	244	12.2	89	2.9	10	3.8	7	0.7	4,087	4.6



지역	지역기관	전 화		방 문		내 방		서 신		온라인		기 타		계	
충남	충남	2,124	3.6	1,245	5.4	171	8.6	159	5.2	4	1.5	18	1.8	3,721	4.2
	충남남부	557	0.9	284	1.2	12	0.6	48	1.6	5	1.9	1	0.1	907	1.0
	소계	2,681	4.5	1,529	6.6	183	9.2	207	6.8	9	3.4	19	1.9	4,628	5.2
전북	전북	1,926	3.2	586	2.5	123	6.2	52	1.7	-	-	4	0.4	2,691	3.0
	전북서부	976	1.6	736	3.2	36	1.8	57	1.9	9	3.4	16	1.6	1,830	2.1
	소계	2,902	4.9	1,322	5.7	159	8.0	109	3.6	9	3.4	20	2.0	4,521	5.1
전남	전남	1,230	2.1	524	2.3	40	2.0	9	0.3	2	0.8	1	0.1	1,806	2.0
	전남서부	2,558	4.3	1,301	5.6	11	0.6	23	0.8	3	1.1	11	1.1	3,907	4.4
	소계	3,788	6.4	1,825	7.9	51	2.6	32	1.1	5	1.9	12	1.2	5,713	6.4
경북	경북	903	1.5	452	2.0	118	5.9	50	1.7	6	2.3	4	0.4	1,533	1.7
	경북서북부	2,141	3.6	1,254	5.4	62	3.1	55	1.8	1	0.4	30	3.0	3,543	4.0
	경북서남부	1,270	2.1	415	1.8	1	0.1	40	1.3	2	0.8	18	1.8	1,746	2.0
	소계	4,314	7.2	2,121	9.2	181	9.1	145	4.8	9	3.4	52	5.2	6,822	7.7
경남	경남	4,689	7.9	900	3.9	28	1.4	31	1.0	1	0.4	10	1.0	5,659	6.4
	경남서부	758	1.3	595	2.6	10	0.5	2	0.1	7	2.7	1	0.1	1,373	1.5
	소계	5,447	9.2	1,495	6.5	38	1.9	33	1.1	8	3.0	11	1.1	7,032	7.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094	1.8	366	1.6	80	4.0	42	1.4	-	-	37	3.7	1,619	1.8
	제주시	67	0.1	34	0.1	4	0.2	9	0.3	-	-	-	-	114	0.1
	소계	1,161	2.0	400	1.7	84	4.2	51	1.7	-	-	37	3.7	1,733	1.9
계		59,511	100	23,115	100	1,995	100	3,029	100	263	100	1,006	100	88,919	100



[그림 2-12] 학대 상담구분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학대상담은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로 분류된다. 접수상담은 신고접수 시 초기상담을 의미하고, 진행상담은 사례개입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상담을 의미하며,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상담, 학대행위자 및 가족상담, 관련자 상담,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종결상담은 사례를 종결하기 위해 실시한 상담을 의미한다. 사후관리는 종결된 사례에 대해 학대피해노인이 안전한지, 학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매월 1회씩 최소 3개월 이상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재발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서비스를 의뢰한 연계기관과 협력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시설보호의 경우 시설 측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사후관리가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자체사례회의를 통하여 사후관리 여부를 판단한다.

〈표 2-13〉은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학대사례 상담과정에 따라 상담유형을 구분한 것으로, 전체 상담횟수 중 진행상담이 67,976회(7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관리가 11,759회(13.2%), 접수상담이 4,699회(5.3%), 종결상담이 4,485회(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상담구분별 비율정도를 살펴보면 접수상담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16.0%를 차지한 경기도였으며, 진행상담은 서울특별시가 11.9%, 종결상담은 경기도가 17.1%, 사후관리는 서울특별시가 10.2%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접수상담의 경우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9.4%, 진행상담은 경상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6.4%, 종결상담과 사후관리에서는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각각 7.8%, 8.2%로 나타났다.

【표 2-1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		계	
서울	서울남부	225	4.8	3,929	5.8	257	5.7	870	7.4	5,281	5.9
	서울북부	216	4.6	4,140	6.1	184	4.1	333	2.8	4,873	5.5
	소계	441	9.4	8,069	11.9	441	9.8	1,203	10.2	10,154	11.4
부산	부산동부	194	4.1	3,169	4.7	190	4.2	768	6.5	4,321	4.9
	부산서부	234	5.0	3,057	4.5	169	3.8	274	2.3	3,734	4.2
	소계	428	9.1	6,226	9.2	359	8.0	1,042	8.9	8,055	9.1
대구	대구남부	140	3.0	1,541	2.3	122	2.7	890	7.6	2,693	3.0
	대구북부	95	2.0	1,521	2.2	103	2.3	265	2.3	1,984	2.2
	소계	235	5.0	3,062	4.5	225	5.0	1,155	9.8	4,677	5.3

지역	기관명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		계	
	인천	444	9.4	3,539	5.2	350	7.8	961	8.2	5,294	6.0
	광주	239	5.1	3,859	5.7	249	5.6	476	4.0	4,823	5.4
	대전	120	2.6	1,679	2.5	124	2.8	666	5.7	2,589	2.9
	울산	104	2.2	1,652	2.4	98	2.2	331	2.8	2,185	2.5
경기	경기남부	225	4.8	2,282	3.4	230	5.1	380	3.2	3,117	3.5
	경기북부	267	5.7	2,619	3.9	277	6.2	654	5.6	3,817	4.3
	경기서부	259	5.5	1,953	2.9	260	5.8	151	1.3	2,623	2.9
	소계	751	16.0	6,854	10.1	767	17.1	1,185	10.1	9,557	10.7
강원	강원	147	3.1	3,315	4.9	113	2.5	480	4.1	4,055	4.6
	강원동부	73	1.6	1,704	2.5	64	1.4	111	0.9	1,952	2.2
	강원남부	69	1.5	893	1.3	50	1.1	30	0.3	1,042	1.2
	소계	289	6.2	5,912	8.7	227	5.1	621	5.3	7,049	7.9
충북	충북	111	2.4	1,499	2.2	108	2.4	511	4.3	2,229	2.5
	충북북부	63	1.3	1,526	2.2	72	1.6	197	1.7	1,858	2.1
	소계	174	3.7	3,025	4.5	180	4.0	708	6.0	4,087	4.6
충남	충남	168	3.6	2,989	4.4	162	3.6	402	3.4	3,721	4.2
	충남남부	69	1.5	721	1.1	69	1.5	48	0.4	907	1.0
	소계	237	5.0	3,710	5.5	231	5.2	450	3.8	4,628	5.2
전북	전북	143	3.0	1,879	2.8	145	3.2	524	4.5	2,691	3.0
	전북서부	91	1.9	1,615	2.4	64	1.4	60	0.5	1,830	2.1
	소계	234	5.0	3,494	5.1	209	4.7	584	5.0	4,521	5.1
전남	전남	152	3.2	1,288	1.9	168	3.7	198	1.7	1,806	2.0
	전남서부	176	3.7	3,097	4.6	170	3.8	464	3.9	3,907	4.4
	소계	328	7.0	4,385	6.5	338	7.5	662	5.6	5,713	6.4
경북	경북	112	2.4	970	1.4	116	2.6	335	2.8	1,533	1.7
	경북서북부	144	3.1	3,079	4.5	128	2.9	192	1.6	3,543	4.0
	경북서남부	62	1.3	1,619	2.4	39	0.9	26	0.2	1,746	2.0
	소계	318	6.8	5,668	8.3	283	6.3	553	4.7	6,822	7.7
경남	경남	201	4.3	4,344	6.4	234	5.2	880	7.5	5,659	6.4
	경남서부	59	1.3	1,198	1.8	85	1.9	31	0.3	1,373	1.5
	소계	260	5.5	5,542	8.2	319	7.1	911	7.7	7,032	7.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79	1.7	1,221	1.8	70	1.6	249	2.1	1,619	1.8
	제주도서귀포시	18	0.4	79	0.1	15	0.3	2	0.0	114	0.1
	소계	97	2.1	1,300	1.9	85	1.9	251	2.1	1,733	1.9
계		4,699	100	67,976	100	4,485	100	11,759	100	88,919	100

4) 지역 및 기관별 전체 상담횟수

전체 상담횟수 중에서 학대상담과 일반상담 횟수를 지역별로 비교하여 보면, 먼저 학대상담 횟수 비율의 경우 인천광역시가 89.9%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 89.8%, 경상남도 88.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횟수 중 학대상담 횟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곳은 대전광역시 54.2%, 제주특별자치도 57.4%였으며, 그 외 대부분의 지역은 전체 상담횟수의 70~90%를 학대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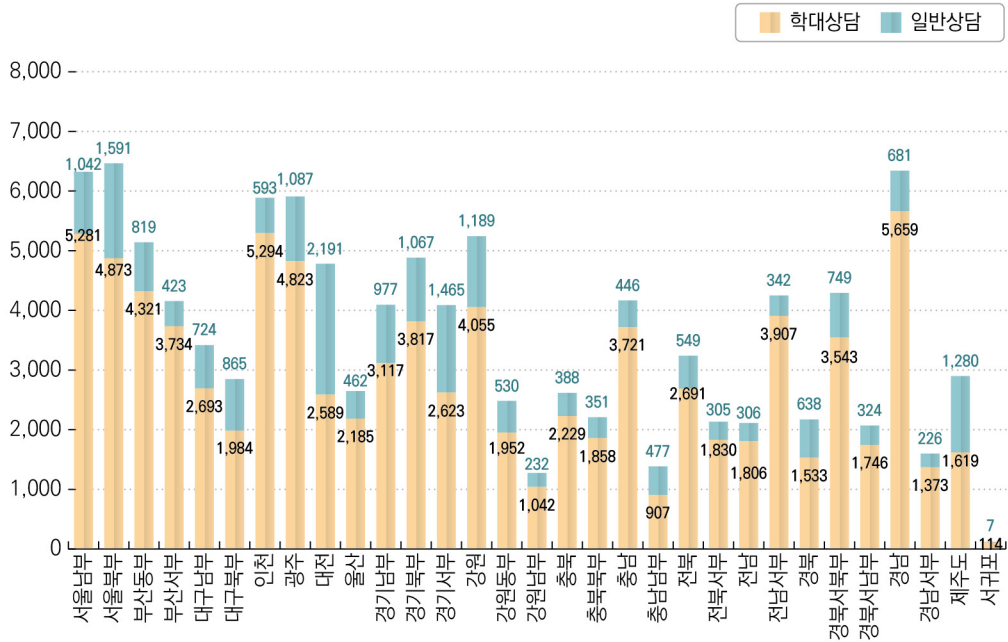
학대상담 비율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9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92.0%,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89.9%로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기관이 60~90%의 수준으로 학대상담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각각 54.2%, 55.8%로 학대상담 비율이 다소 낮았다.

[표 2-14] 지역 및 기관별 전체 상담횟수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일반상담		계	
서울	서울남부	5,281	83.5	1,042	16.5	6,323	100
	서울북부	4,873	75.4	1,591	24.6	6,464	100
	소계	10,154	79.4	2,633	20.6	12,787	100
부산	부산동부	4,321	84.1	819	15.9	5,140	100
	부산서부	3,734	89.8	423	10.2	4,157	100
	소계	8,055	86.6	1,242	13.4	9,297	100
대구	대구남부	2,693	78.8	724	21.2	3,417	100
	대구북부	1,984	69.6	865	30.4	2,849	100
	소계	4,677	74.6	1,589	25.4	6,266	100
	인천	5,294	89.9	593	10.1	5,887	100
	광주	4,823	81.6	1,087	18.4	5,910	100
	대전	2,589	54.2	2,191	45.8	4,780	100
	울산	2,185	82.5	462	17.5	2,647	100
경기	경기남부	3,117	76.1	977	23.9	4,094	100
	경기북부	3,817	78.2	1,067	21.8	4,884	100
	경기서부	2,623	64.2	1,465	35.8	4,088	100
	소계	9,557	73.1	3,509	26.9	13,066	100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일반상담		계	
강원	강원	4,055	77.3	1,189	22.7	5,244	100
	강원동부	1,952	78.6	530	21.4	2,482	100
	강원남부	1,042	81.8	232	18.2	1,274	100
	소계	7,049	78.3	1,951	21.7	9,000	100
충북	충북	2,229	85.2	388	14.8	2,617	100
	충북북부	1,858	84.1	351	15.9	2,209	100
	소계	4,087	84.7	739	15.3	4,826	100
충남	충남	3,721	89.3	446	10.7	4,167	100
	충남남부	907	65.5	477	34.5	1,384	100
	소계	4,628	83.4	923	16.6	5,551	100
전북	전북	2,691	83.1	549	16.9	3,240	100
	전북서부	1,830	85.7	305	14.3	2,135	100
	소계	4,521	84.1	854	15.9	5,375	100
전남	전남	1,806	85.5	306	14.5	2,112	100
	전남서부	3,907	92.0	342	8.0	4,249	100
	소계	5,713	89.8	648	10.2	6,361	100
경북	경북	1,533	70.6	638	29.4	2,171	100
	경북서북부	3,543	82.5	749	17.5	4,292	100
	경북서남부	1,746	84.3	324	15.7	2,070	100
	소계	6,822	79.9	1,711	20.1	8,533	100
경남	경남	5,659	89.3	681	10.7	6,340	100
	경남서부	1,373	85.9	226	14.1	1,599	100
	소계	7,032	88.6	907	11.4	7,939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619	55.8	1,280	44.2	2,899	100
	제주도서귀포시	114	94.2	7	5.8	121	100
	소계	1,733	57.4	1,287	42.6	3,020	100
계		88,919	79.9	22,326	20.1	111,245	100



[그림 2-13] 지역 및 기관별 전체 상담횟수

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횟수

학대사례 및 일반사례를 기준으로 한 사례당 상담횟수를 살펴보면, 전체 학대사례 4,622건 중 학대상담 횟수는 88,919건으로 평균 19.2회의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사례 경우 총 8,687건 중 일반상담 횟수는 22,326회로 평균 2.6회 이루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남도가 평균 25.8회로 가장 많은 학대상담이 이루어졌고, 충청북도가 24.8회, 강원도가 24.4회로 나타났다. 일반상담 횟수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11.7회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광역시가 5.6회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일반상담의 경우 1~3회의 일회성 상담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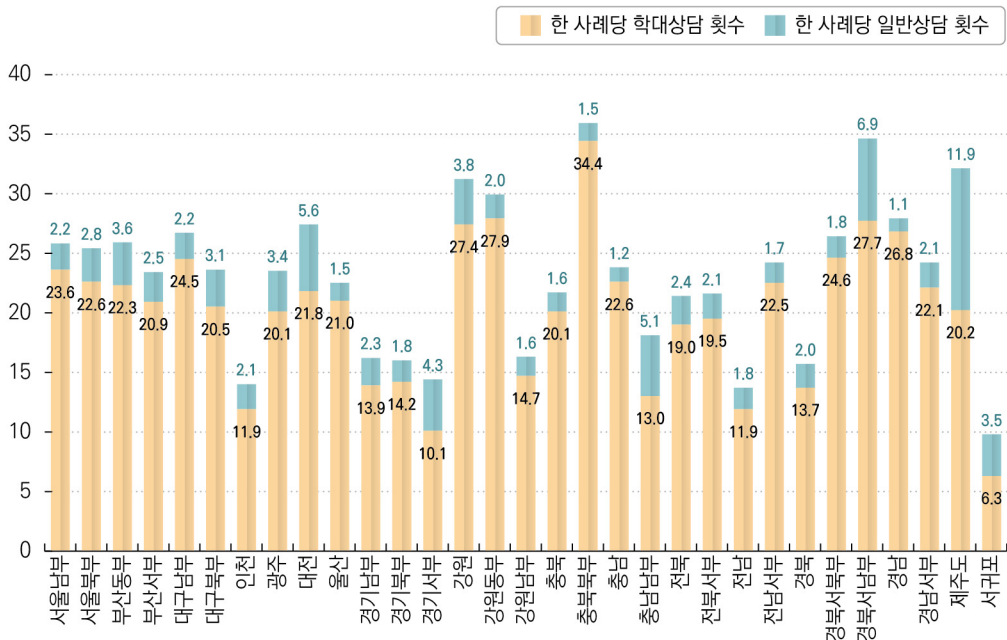
이를 기관별로 다시 살펴보면 학대상담의 한 사례당 상담횟수는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34.4회,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27.9회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상담의 한 사례당 상담횟수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11.9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상북도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6.9회,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5.6회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1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횟수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횟수	학대사례 건수	한 사례당 학대상담 횟수	일반상담 횟수	일반사례 건수	한 사례당 일반상담 횟수
서울	서울남부	5,281	224	23.6	1,042	466	2.2
	서울북부	4,873	216	22.6	1,591	564	2.8
	소계	10,154	440	23.1	2,633	1,030	2.6
부산	부산동부	4,321	194	22.3	819	226	3.6
	부산서부	3,734	179	20.9	423	172	2.5
	소계	8,055	373	21.6	1,242	398	3.1
대구	대구남부	2,693	110	24.5	724	325	2.2
	대구북부	1,984	97	20.5	865	276	3.1
	소계	4,677	207	22.6	1,589	601	2.6
인천		5,294	444	11.9	593	277	2.1
광주		4,823	240	20.1	1,087	322	3.4
대전		2,589	119	21.8	2,191	389	5.6
울산		2,185	104	21.0	462	316	1.5
경기	경기남부	3,117	225	13.9	977	417	2.3
	경기북부	3,817	269	14.2	1,067	582	1.8
	경기서부	2,623	260	10.1	1,465	339	4.3
	소계	9,557	754	12.7	3,509	1,338	2.6
강원	강원	4,055	148	27.4	1,189	315	3.8
	강원동부	1,952	70	27.9	530	263	2.0
	강원남부	1,042	71	14.7	232	143	1.6
	소계	7,049	289	24.4	1,951	721	2.7
충북	충북	2,229	111	20.1	388	242	1.6
	충북북부	1,858	54	34.4	351	242	1.5
	소계	4,087	165	24.8	739	484	1.5
충남	충남	3,721	165	22.6	446	365	1.2
	충남남부	907	70	13.0	477	93	5.1
	소계	4,628	235	19.7	923	458	2.0
전북	전북	2,691	142	19.0	549	226	2.4
	전북서부	1,830	94	19.5	305	148	2.1
	소계	4,521	236	19.2	854	374	2.3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횟수	학대사례 건수	한 사례당 학대상담 횟수	일반상담 횟수	일반사례 건수	한 사례당 일반상담 횟수
전남	전남	1,806	152	11.9	306	171	1.8
	전남서부	3,907	174	22.5	342	204	1.7
	소계	5,713	326	17.5	648	375	1.7
경북	경북	1,533	112	13.7	638	322	2.0
	경북서북부	3,543	144	24.6	749	408	1.8
	경북서남부	1,746	63	27.7	324	47	6.9
	소계	6,822	319	21.4	1,711	777	2.2
경남	경남	5,659	211	26.8	681	608	1.1
	경남서부	1,373	62	22.1	226	109	2.1
	소계	7,032	273	25.8	907	717	1.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619	80	20.2	1,280	108	11.9
	제주도서귀포시	114	18	6.3	7	2	3.5
	소계	1,733	98	17.7	1,287	110	11.7
계		88,919	4,622	19.2	22,326	8,687	2.6



[그림 2-14]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 횟수

6)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2017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을 측정하기 위해, 각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수와 신고접수 건수, 상담 횟수, 현장조사 건수, 방문상담 횟수,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횟수,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횟수 등을 비교하였다.

전국 31개 노인보호전문기관 248명의 상담원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각 기관의 기관장은 상담원 수에서 제외하였다.

[표 2-16]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단위: 명, 건, 회)

구 분	전체 상담원 업무량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상담원 수	248	1
신고접수 건수	13,309	53.7
상담횟수	111,245	448.6
현장조사 횟수	4,443	17.9
방문상담 횟수	23,115	93.2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128,134	516.7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20,502	82.7

201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일반사례가 8,687건, 학대사례가 4,622건으로 총 13,309건이며, 이에 대한 1인당 신고접수 건수는 53.7회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례 상담은 사례의 상황에 따라 1~2회에서 종결되기도 하며 수십 차례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2017년 한 해 동안 실시된 총 상담횟수는 111,245회로 상담원 1인당 상담횟수는 448.6회로 나타났으며, 월 37.4회, 하루 1.2회 이상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 학대사례로 판정이 되면 응급 사례의 경우 12시간 이내, 비응급 및 잠재적 사례의 경우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2017년 실시된 현장조사 횟수는 4,443회이며 1인당 현장조사 횟수는 17.9회로 나타났고, 방문상담의 경우 23,115회 진행되었으며 1인당 93.2회의 방문상담이 이루어졌다.

학대피해노인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128,134회,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20,502회로 나타났으며, 1인당 제공서비스는 각각 516.7회, 82.7회였다.



Chapter **03**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1. 현장조사
2. 사례판정
3. 종결사례

제3장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1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신고접수된 학대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최초의 방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접수판정 시 노인학대의심사례로 분류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장조사 시에는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신변 보장과 안전조치를 확인한다. 또한 학대의심사례로서 적합성 판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및 정보수집과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단 한 번의 현장조사만으로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방문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실시한 현장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대사례 4,622건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4,443건으로 현장조사 비율은 96.1%이다. 학대사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부터 현장조사 거부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현장조사를 미실시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부터의 완강한 거부, 학대피해노인의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 및 시설입소, 학대피해노인의 이사 및 이주 또는 학대피해노인이 현장조사를 원하지 않고, 제3의 장소나 기관 내방 등을 원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표 3-1] 현장조사

(단위: 건, %)

학대사례	현장조사	실시비율
4,622	4,443	96.1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대구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전라북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 100% 비율을 보였다.

학대사례에 대한 방문상담 건수를 보면 전체 4,622건 중 23,115회의 방문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한 사례 당 평균 5.0회의 방문상담을 진행하였다. 지역별 방문상담 횟수의 경우 충청북도가 8.2회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가 7.5회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다시 기관별로 살펴보면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12.4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상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동일하게 9.6회,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8.8회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지역 및 기관별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단위: 회, %)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A)	현장조사 (B)	실시비율 (C)=B/A×100	방문상담 (D)	방문상담비율 (E)=D/A
서울	서울남부	224	224	100.0	1,045	4.7
	서울북부	216	215	99.5	1,037	4.8
	소계	440	439	99.8	2,082	4.7
부산	부산동부	194	192	99.0	1,018	5.2
	부산서부	179	177	98.9	660	3.7
	소계	373	369	98.9	1,678	4.5
대구	대구남부	110	107	97.3	1,058	9.6
	대구북부	97	97	100.0	502	5.2
	소계	207	204	98.6	1,560	7.5
인천		444	384	86.5	1,254	2.8
광주		240	237	98.8	1,011	4.2
대전		119	119	100.0	738	6.2
울산		104	99	95.2	577	5.5
경기	경기남부	225	208	92.4	952	4.2
	경기북부	269	269	100.0	771	2.9
	경기서부	260	204	78.5	491	1.9
	소계	754	681	90.3	2,214	2.9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A)	현장조사 (B)	실시비율 (C)=B/A×100	방문상담 (D)	방문상담비율 (E)=D/A
강원	강원	148	145	98.0	1,116	7.5
	강원동부	70	68	97.1	618	8.8
	강원남부	71	70	98.6	215	3.0
	소계	289	283	97.9	1,949	6.7
충북	충북	111	107	96.4	689	6.2
	충북북부	54	54	100.0	671	12.4
	소계	165	161	97.6	1,360	8.2
충남	충남	165	162	98.2	1,245	7.5
	충남남부	70	70	100.0	284	4.1
	소계	235	232	98.7	1,529	6.5
전북	전북	142	142	100.0	586	4.1
	전북서부	94	94	100.0	736	7.8
	소계	236	236	100.0	1,322	5.6
전남	전남	152	149	98.0	524	3.4
	전남서부	174	171	98.3	1,301	7.5
	소계	326	320	98.2	1,825	5.6
경북	경북	112	112	100.0	452	4.0
	경북서북부	144	142	98.6	1,254	8.7
	경북서남부	63	62	98.4	415	6.6
	소계	319	316	99.1	2,121	6.6
경남	경남	211	209	99.1	900	4.3
	경남서부	62	60	96.8	595	9.6
	소계	273	269	98.5	1,495	5.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80	78	97.5	366	4.6
	제주도서귀포시	18	16	88.9	34	1.9
	소계	98	94	95.9	400	4.1
계		4,622	4,443	96.1	23,115	5.0

2 사례판정

현장조사 실시 후에는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학대여부를 판정하는데 이를 사례판정이라고 한다. 사례판정은 상황의 위급성 정도, 학대피해노인의 상황, 가족 또는 학대행위자 상황 등 학대의 심각성 및 응급성 여부에 따라 응급 사례, 비응급 사례, 잠재 사례, 일반사례로 분류 된다. 사례판정 시에는 충분한 자료를 통하여 사례를 판정하되, 판정하기 어려운 사례의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사례판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례를 판정해 사례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응급 사례는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 밖의 유기 및 장기간 방임으로 인하여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응급 사례의 조치방법으로는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노인의 안전을 위한 응급조치를 우선으로 제공해야 할 경우 가능한 112 또는 119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인이 이를 판단할 지적·심리적 능력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 처리한다. 응급상태가 해결되면 비응급 사례 조치방법에 준하여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지원한다.

비응급 사례는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조치방법으로는 노인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며 정확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서비스 계획에 의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향후에는 노인학대 원인이 개선되었는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잠재적 사례는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조치 방법으로 학대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학대 위험요인이 드러난 관계, 노인학대 유형, 학대발생 원인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아울러 이에 따른 정확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이다.

일반사례는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신고자 및 학대피해 노인의 연락두절로 개입이 불가능한 경우, 학대피해노인 및 기타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일반사례로 판정한다.

이처럼 노인학대의심사례로 판정되지 않았으나 신고접수 된 일반사례에 대해서는 노인 학대 예방 사업의 목적에 따라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노인문제 등 타 기관(노인복지회관, 재가노인복지센터, 일반노인상담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타 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2017년 전체사례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판정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총 4,622건 중 비응급 사례가 2,803건(60.6%)으로 가장 높았으며 잠재적 사례가 1,654건(35.8%), 응급 사례가 165건(3.6%)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사례의 경우 학대위험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응급 또는 비응급 사례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인학대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지역 및 기관별로 잠재적 사례로 판정되는 비율이 7%~80.9%까지의 큰 편차를 보이는데, 이를 지역적 특성 때문이라고 유추하기에는 편차 정도가 너무 커서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 기준만으로 노인학대 사례를 판정할 수 없지만 기관 간의 큰 편차는 사례판정 기준의 모호성 또는 사례판정의 해석을 달리 적용하여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사례의 기준 및 사례관리 과정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표 3-3]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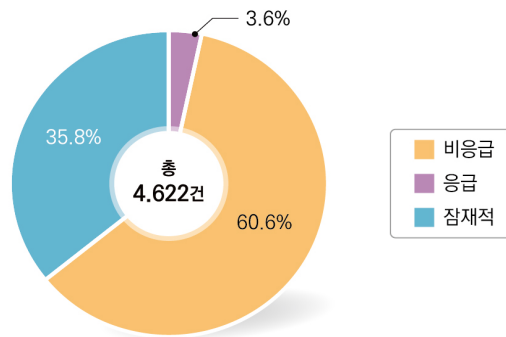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서울	서울남부	-	-	149	66.5	75	33.5	224	100
	서울북부	2	0.9	117	54.2	97	44.9	216	100
	소계	2	0.5	266	60.5	172	39.1	440	100
부산	부산동부	2	1.0	81	41.8	111	57.2	194	100
	부산서부	2	1.1	135	75.4	42	23.5	179	100
	소계	4	1.1	216	57.9	153	41.0	373	100
대구	대구남부	1	0.9	50	45.5	59	53.6	110	100
	대구북부	2	2.1	68	70.1	27	27.8	97	100
	소계	3	1.4	118	57.0	86	41.5	207	100

지역	기관명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천	1	0.2	84	18.9	359	80.9	444	100
	광주	28	11.7	195	81.3	17	7.1	240	100
	대전	5	4.2	70	58.8	44	37.0	119	100
	울산	-	-	68	65.4	36	34.6	104	100
경기	경기남부	7	3.1	173	76.9	45	20.0	225	100
	경기북부	3	1.1	181	67.3	85	31.6	269	100
	경기서부	9	3.5	104	40.0	147	56.5	260	100
	소계	19	2.5	458	60.7	277	36.7	754	100
강원	강원	27	18.2	82	55.4	39	26.4	148	100
	강원동부	-	-	34	48.6	36	51.4	70	100
	강원남부	3	4.2	44	62.0	24	33.8	71	100
	소계	30	10.4	160	55.4	99	34.3	289	100
충북	충북	13	11.7	87	78.4	11	9.9	111	100
	충북북부	4	7.4	28	51.9	22	40.7	54	100
	소계	17	10.3	115	69.7	33	20.0	165	100
충남	충남	26	15.8	118	71.5	21	12.7	165	100
	충남남부	6	8.6	54	77.1	10	14.3	70	100
	소계	32	13.6	172	73.2	31	13.2	235	100
전북	전북	1	0.7	116	81.7	25	17.6	142	100
	전북서부	1	1.1	49	52.1	44	46.8	94	100
	소계	2	0.8	165	69.9	69	29.2	236	100
전남	전남	7	4.6	145	95.4	-	-	152	100
	전남서부	2	1.1	149	85.6	23	13.2	174	100
	소계	9	2.8	294	90.2	23	7.1	326	100
경북	경북	-	-	39	34.8	73	65.2	112	100
	경북서북부	-	-	120	83.3	24	16.7	144	100
	경북서남부	1	1.6	47	74.6	15	23.8	63	100
	소계	1	0.3	206	64.6	112	35.1	319	100
경남	경남	7	3.3	94	44.5	110	52.1	211	100
	경남서부	4	6.5	41	66.1	17	27.4	62	100
	소계	11	4.0	135	49.5	127	46.5	273	100



지역	기관명	응급		비응급		잠재적		계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	1.3	70	87.5	9	11.3	80	100
	제주도서귀포시	-	-	11	61.1	7	38.9	18	100
	소계	1	1.0	81	82.7	16	16.3	98	100
계		165	3.6	2,803	60.6	1,654	35.8	4,622	100



[그림 3-1] 지역별 사례판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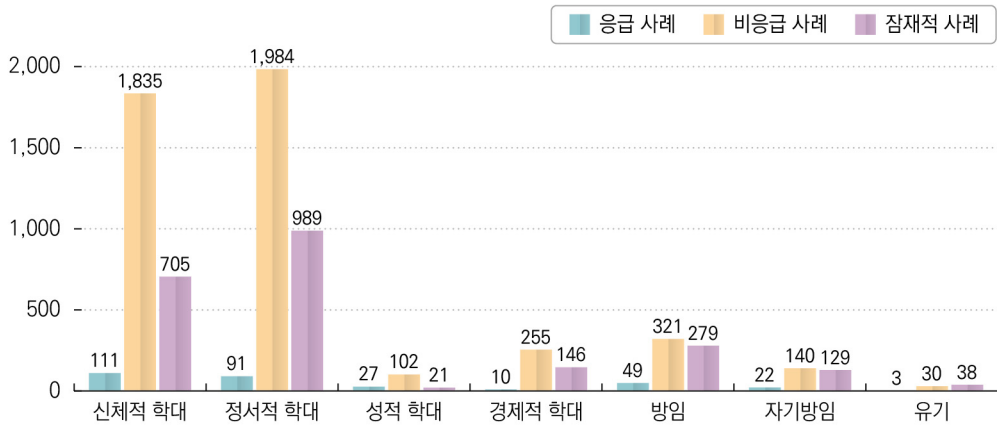
〈표 3-4〉는 사례판정별 노인학대 유형을 교차분석 한 것으로, 응급 사례의 경우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방임의 순으로 나타나 신체적 학대의 비율이 다른 노인학대 유형보다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비응급 사례는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 방임의 순으로, 응급 사례에 비해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사례의 경우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 방임 순으로 비응급 사례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표 3-4] 사례판정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응급		비응급		잠재적		계	
신체적 학대	111	35.5	1,835	39.3	705	30.6	2,651	36.4
정서적 학대	91	29.1	1,984	42.5	989	42.9	3,064	42.0
성적 학대	27	8.6	102	2.2	21	0.9	150	2.1
경제적 학대	10	3.2	255	5.5	146	6.3	411	5.6
방임	49	15.7	321	6.9	279	12.1	649	8.9
자기방임	22	7.0	140	3.0	129	5.6	291	4.0
유기	3	1.0	30	0.6	38	1.6	71	1.0
계	313	100	4,667	100	2,307	100	7,287	100

* 중복



[그림 3-2]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표 3-5〉는 사례판정별 신고자 유형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응급 사례로 판정된 사례의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관련기관 - 신고의무자 - 타인 - 피해자 본인 - 친족 순이며, 비응급 사례의 경우 관련기관 - 타인 - 신고의무자 - 친족 - 피해자본인, 잠재적 사례의 경우 관련기관 - 타인 - 피해자본인 - 신고의무자 - 친족 - 학대행위자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판정 결과 세 가지 유형 모두에서 관련기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응급 사례는 신고의무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비응급 사례와 잠재적 사례는 타인이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표 3-5] 신고자 유형별 사례판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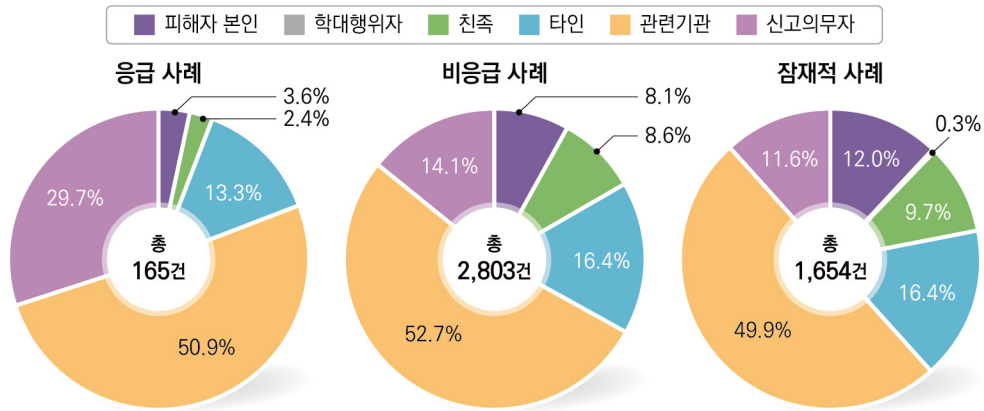
(단위: 건, %)

신고자유형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피해자 본인	6	3.6	227	8.1	198	12.0	431	9.3
학대행위자	-	-	1	-	5	0.3	6	0.1
친 족 ¹⁸⁾	4	2.4	242	8.6	161	9.7	407	8.8
타 인 ¹⁹⁾	22	13.3	461	16.4	272	16.4	755	16.3
관련기관 ²⁰⁾	84	50.9	1,478	52.7	826	49.9	2,388	51.7
신고의무자	49	29.7	394	14.1	192	11.6	635	13.7
계	165	100	2,803	100	1,654	100	4,622	100

18) 친족에는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이 해당됨.

19) 타인에는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기타타인, 동거인, 이웃, 익명, 친구가 해당됨.

20)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그림 3-3] 사례판정 결과별 학대 신고자 유형

3 종결사례

노인학대로 접수된 사례는 현장조사 및 사정을 통해 수립된 목표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통해 학대사례개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례의 지속여부 및 종결여부를 판단한다.

[사례를 종결하는 경우]

- 학대행위가 소멸된 경우
- 학대위험요인 제거로 학대 재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 학대피해노인의 개입거부나 학대피해노인의 소재지 불명 및 연락이 두절된 경우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사망, 불가피한 상황에 의하여 강제 종결되는 경우
- 학대피해노인 스스로 자기보호능력, 위기해결능력이 생겼을 경우
- 학대피해노인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의뢰)
- 제공 서비스의 제한에 의해 종결되는 경우(지지자원 거부, 내담자의 무리한 요구)
- 학대행위자가 자신의 학대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학대재발이 없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 학대행위자가 구속·기소되었을 때나 잠적할 경우

2017년 접수된 학대사례 4,622건 중 종결된 사례는 4,308건으로 종결률은 93.2%이며 진행 중인 사례는 314건으로 6.8%로 집계되었다. 진행 중인 사례는 2017년 말에 접수된 사례이거나 사례관리 기간이 장기로 진행되어 당해 연도에 종결이 어려워 2018년으로 이월된 사례들이다.

기관별 종결 현황의 경우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100%의 종결률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70~100%의 종결 수준을 나타냈다. 기관 간 종결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평균 사례개입기간이 3~6개월이므로 하반기에 사례접수가 집중될 경우 위와 같이 당해 연도에 종결이 어렵고 다음해로 이월되기 때문이다.

[표 3-6] 지역 및 기관별 종결 및 진행사례 현황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종결		진행		계	
서울	서울남부	180	80.4	44	19.6	224	100
	서울북부	173	80.1	43	19.9	216	100
	소계	353	80.2	87	19.8	440	100
부산	부산동부	193	99.5	1	0.5	194	100
	부산서부	175	97.8	4	2.2	179	100
	소계	368	98.7	5	1.3	373	100
대구	대구남부	109	99.1	1	0.9	110	100
	대구북부	95	97.9	2	2.1	97	100
	소계	204	98.6	3	1.4	207	100
인천		400	90.1	44	9.9	444	100
광주		234	97.5	6	2.5	240	100
대전		118	99.2	1	0.8	119	100
울산		99	95.2	5	4.8	104	100
경기	경기남부	212	94.2	13	5.8	225	100
	경기북부	269	100.0	-	-	269	100
	경기서부	257	98.8	3	1.2	260	100
	소계	738	97.9	16	2.1	754	100
강원	강원	148	100.0	-	-	148	100
	강원동부	68	97.1	2	2.9	70	100
	강원남부	59	83.1	12	16.9	71	100
	소계	275	95.2	14	4.8	289	100
충북	충북	103	92.8	8	7.2	111	100
	충북북부	49	90.7	5	9.3	54	100
	소계	152	92.1	13	7.9	165	100
충남	충남	163	98.8	2	1.2	165	100
	충남남부	53	74.6	18	25.4	70	100
	소계	216	91.5	20	8.5	235	100

지역	기관명	종결		진행		계	
전북	전북	142	100.0	-	-	142	100
	전북서부	76	80.9	18	19.1	94	100
	소계	218	92.4	18	7.6	236	100
전남	전남	151	99.3	1	0.7	152	100
	전남서부	146	83.9	28	16.1	174	100
	소계	297	91.1	29	8.9	326	100
경북	경북	112	100.0	-	-	112	100
	경북서북부	127	88.2	17	11.8	144	100
	경북서남부	51	81.0	12	19.0	63	100
	소계	290	90.9	29	9.1	319	100
경남	경남	194	92.4	16	7.6	211	100
	경남서부	56	90.3	6	9.7	62	100
	소계	250	91.9	22	8.1	273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78	97.5	2	2.5	80	100
	제주도서귀포시	18	100.0	-	-	18	100
	소계	96	98.0	2	2.0	98	100
계		4,308	93.2	314	6.8	4,622	100

종결된 사례 4,308건의 종결사유로는 사망, 학대피해노인 분리, 학대행위자 분리, 상황개선, 서비스 제한, 개입거부, 의뢰 등이 있다.

각 항목별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사망은 피해자 사망과 학대행위자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사례 중 118건으로 2.7%에 해당된다. 학대피해노인 분리의 경우 독립, 타 가족 동거, 시설입소, 병원입원 등으로 학대행위자와 동거하고 있는 곳에서 학대피해노인이 분리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사례 중 773건, 17.9%에 해당하였다.

반면에 학대행위자 분리의 경우 독립, 시설입소, 병원입원, 형사처벌 등으로 전체 종결사례 중 505건으로 11.7%에 해당하며 학대행위자가 분리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개선의 세부항목은 부양강화, 지지자원 강화, 학대행위자 태도변화로 전체 종결사례 중 2,030건으로 47.1%에 해당되며 전체 종결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여기서 지지자원 강화는 학대피해노인의 상황개선을 위해 수급권 지정, 비동거 자녀로 부터의 규칙적인 생활비 보조 및 방문, 기타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말하며, 부양강화는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부양자(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의무강화를 의미한다.

학대행위자 태도변화는 학대행위자가 학대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식하는 등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제한의 세부항목은 지지자원 거부, 내담자의 무리한 요구, 기타(이민 및 이주 등) 등으로 전체 종결사례 중 314건으로 7.3%에 해당된다. 지지자원의 거부는 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노인 가족 등이 개입을 거부하였을 경우이다. 내담자의 무리한 요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방향과 다른 일방적 요구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수급권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권 지정을 원하거나, 거주할 곳이나 생활비를 요구하는 등 문제의 직접적 해결을 원하거나 학대행위자를 바로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들이다. 이밖에 서비스 제한 중에는 이민이나 이주 등으로 더 이상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개입거부는 학대피해노인 본인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전체 종결사례 중 486건이며 11.3%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뢰는 학대피해노인이 타 지역으로 이사함에 따른 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아닌 타 기관 업무로 타 기관의뢰로 개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타 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로 전체 종결사례 중 82건이며 1.9%에 해당된다.

[표 3-7] 종결사유

(단위: 건, %)

분 류		건 수	비 율
사망	피해자사망	101	2.3
	학대행위자사망	17	0.4
	소계	118	2.7
학대피해 노인분리	독립(피해자)	214	5.0
	타 가족 동거(피해자)	150	3.5
	시설입소(피해자)	226	5.2
	병원입원(피해자)	183	4.2
	소계	773	17.9
학대행위자 분리	독립(학대행위자)	195	4.5
	시설입소(학대행위자)	24	0.6
	병원입원(학대행위자)	237	5.5
	형사처벌(학대행위자)	49	1.1
	소계	505	11.7

분 류		건 수	비 율
상황개선	부양강화	206	4.8
	지지자원 강화	439	10.2
	학대행위자태도변화	1,385	32.1
	소계	2,030	47.1
서비스제한	지지자원 거부	136	3.2
	내담자의 무리한 요구	73	1.7
	기타(이민 및 이주 등)	105	2.4
	소계	314	7.3
개입거부	피해자 개입거부	486	11.3
	소계	486	11.3
의뢰	타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의뢰	18	0.4
	타기관 의뢰	64	1.5
	소계	82	1.9
계		4,308	100.0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각 비율의 소계가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사례개입 중 사망한 학대피해노인은 101명으로 남자가 51명(50.5%), 여자가 50명(49.5%)으로 집계되었으나 사망의 원인이 단순히 학대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질병 및 노환 등과 같은 기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표 3-8] 사례개입 중 사망한 학대피해노인 성별

(단위: 명, %)

남자	여자	계
51	50	101
50.5	49.5	100

사례개입 중 사망한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연령대에서 70대와 80대가 40.6%로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고, 성별 기준 시 남자의 경우 75~79세가 37.3%, 여자의 경우 85~89세가 24.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표 3-9] 사례개입 중 사망한 학대피해노인의 성별과 연령 분포

(단위: 명, %)

구 분	60~ 64세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 89세	90~ 94세	95~ 99세	계
남자	1	4	7	19	12	6	1	1	51
	2.0	7.8	13.7	37.3	23.5	11.8	2.0	2.0	100.0
여자	4	1	4	11	11	12	4	3	50
	8.0	2.0	8.0	22.0	22.0	24.0	8.0	6.0	100.0
계	5	5	11	30	23	18	5	4	101
	5.0	5.0	10.9	29.7	22.8	17.8	5.0	4.0	100



Chapter **04**

노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

1. 학대피해노인 현황
2. 학대행위자 현황
3.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제4장 노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



1 학대피해노인 현황

1) 학대피해노인 성별

2017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4,622건 중 남녀 성별비율을 보면 여성노인이 3,460건(74.9%), 남성노인이 1,162건(25.1%)으로 여성노인의 비율이 남성노인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표 4-1] 65세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65세 이상 인구 수	비율	학대피해노인 수	비율
남	3,130,925	42.6	1,162	25.1
여	4,225,181	57.4	3,460	74.9
계	7,356,106	100	4,622	100

※ 65세 이상 인구 수 : 행정자치부 2017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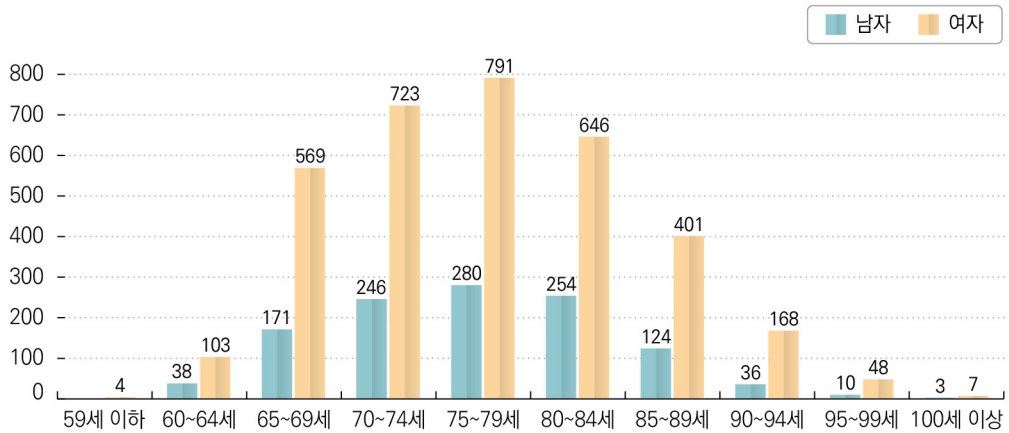
2)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70대를 기점으로 학대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연령대별 학대피해노인 분포를 살펴보면 60대 881명(19.1%), 70대 2,040명(44.2%), 80대 1,425명(30.9%)으로 나타나, 70대를 기준으로 학대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2]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분포

(단위: 건, %)

피해자 성별	59세 이하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	38	171	246	280	254	124	36	10	3	1,162
	-	3.3	14.7	21.2	24.1	21.9	10.7	3.1	0.9	0.3	100
여성	4	103	569	723	791	646	401	168	48	7	3,460
	0.1	3.0	16.4	20.9	22.9	18.7	11.6	4.9	1.4	0.2	100
계	4	141	740	969	1,071	900	525	204	58	10	4,622
	0.1	3.1	16.0	21.0	23.2	19.5	11.4	4.4	1.3	0.2	100



[그림 4-1]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분포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지역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노인의 경우 강원도가 29.8%로 남성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노인의 경우 대전이 8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남 성		여 성		계	
서울	서울남부	57	25.4	167	74.6	224	100
	서울북부	40	18.5	176	81.5	216	100
	소계	97	22.0	343	78.0	440	100
부산	부산동부	36	18.6	158	81.4	194	100
	부산서부	48	26.8	131	73.2	179	100
	소계	84	22.5	289	77.5	373	100
대구	대구남부	25	22.7	85	77.3	110	100
	대구북부	22	22.7	75	77.3	97	100
	소계	47	22.7	160	77.3	207	100
인천		116	26.1	328	73.9	444	100
광주		71	29.6	169	70.4	240	100
대전		15	12.6	104	87.4	119	100
울산		24	23.1	80	76.9	104	100

지역	기관명	남 성		여 성		계	
경기	경기남부	55	24.4	170	75.6	225	100
	경기북부	78	29.0	191	71.0	269	100
	경기서부	69	26.5	191	73.5	260	100
	소계	202	26.8	552	73.2	754	100
강원	강원	48	32.4	100	67.6	148	100
	강원동부	18	25.7	52	74.3	70	100
	강원남부	20	28.2	51	71.8	71	100
	소계	86	29.8	203	70.2	289	100
충북	충북	25	22.5	86	77.5	111	100
	충북북부	14	25.9	40	74.1	54	100
	소계	39	23.6	126	76.4	165	100
충남	충남	44	26.7	121	73.3	165	100
	충남남부	24	34.3	46	65.7	70	100
	소계	68	28.9	167	71.1	235	100
전북	전북	39	27.5	103	72.5	142	100
	전북서부	23	24.5	71	75.5	94	100
	소계	62	26.3	174	73.7	236	100
전남	전남	34	22.4	118	77.6	152	100
	전남서부	48	27.6	126	72.4	174	100
	소계	82	25.2	244	74.8	326	100
경북	경북	20	17.9	92	82.1	112	100
	경북서북부	33	22.9	111	77.1	144	100
	경북서남부	18	28.6	45	71.4	63	100
	소계	71	22.3	248	77.7	319	100
경남	경남	59	28.0	152	72.0	211	100
	경남서부	15	24.2	47	75.8	62	100
	소계	74	27.1	199	72.9	273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0	25.0	60	75.0	80	100
	제주도서귀포시	4	22.2	14	77.8	18	100
	소계	24	24.5	74	75.5	98	100
계		1,162	25.1	3,460	74.9	4,62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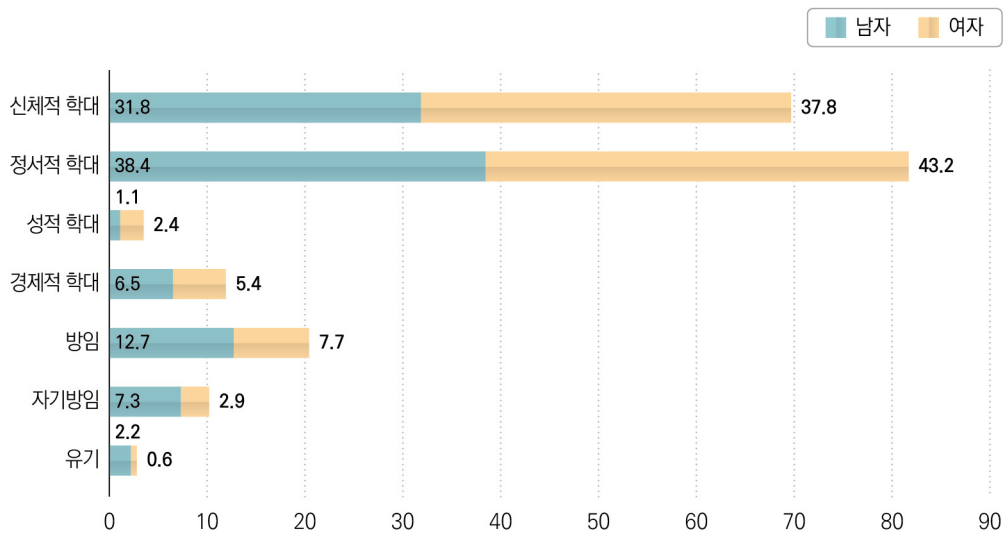
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학대피해노인 성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각각 672건(38.4%), 2,392건(43.2%)으로 정서적 학대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 방임의 순을 보였다.

[표 4-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피해자 성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남성	557	672	19	113	222	128	39	1,750
	31.8	38.4	1.1	6.5	12.7	7.3	2.2	100
여성	2,094	2,392	131	298	427	163	32	5,537
	37.8	43.2	2.4	5.4	7.7	2.9	0.6	100
계	2,651	3,064	150	411	649	291	71	7,287
	36.4	42.0	2.1	5.6	8.9	4.0	1.0	100



[그림 4-2]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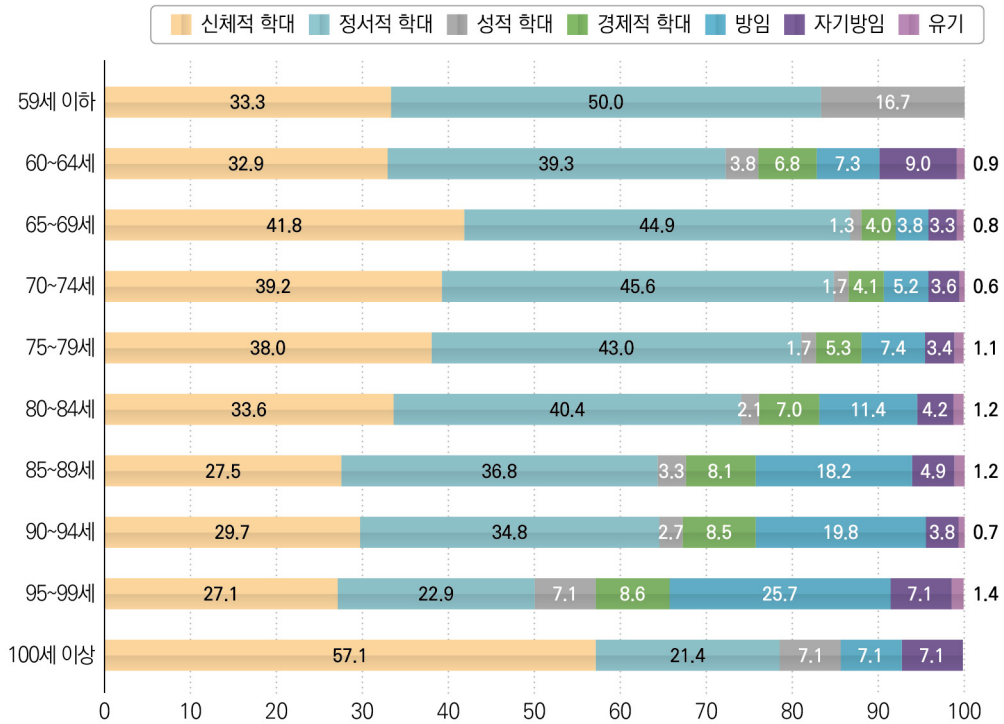
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별 학대 유형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3,064건 (42.0%)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 방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85세 이상 초고령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방임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피해자 연령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59세 이하	2	3	1	-	-	-	-	6
	33.3	50.0	16.7	-	-	-	-	100
60~64세	77	92	9	16	17	21	2	234
	32.9	39.3	3.8	6.8	7.3	9.0	0.9	100
65~69세	501	539	16	48	46	40	10	1,200
	41.8	44.9	1.3	4.0	3.8	3.3	0.8	100
70~74세	614	714	26	64	81	56	10	1,565
	39.2	45.6	1.7	4.1	5.2	3.6	0.6	100
75~79세	662	748	29	92	129	60	20	1,740
	38.0	43.0	1.7	5.3	7.4	3.4	1.1	100
80~84세	470	564	30	98	159	59	17	1,397
	33.6	40.4	2.1	7.0	11.4	4.2	1.2	100
85~89세	211	283	25	62	140	38	9	768
	27.5	36.8	3.3	8.1	18.2	4.9	1.2	100
90~94세	87	102	8	25	58	11	2	293
	29.7	34.8	2.7	8.5	19.8	3.8	0.7	100
95~99세	19	16	5	6	18	5	1	70
	27.1	22.9	7.1	8.6	25.7	7.1	1.4	100
100세 이상	8	3	1	-	1	1	-	14
	57.1	21.4	7.1	-	7.1	7.1	-	100
계	2,651	3,064	150	411	649	291	71	7,287
	36.4	42.0	2.1	5.6	8.9	4.0	1.0	100



[그림 4-3]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6) 학대피해노인 결혼 유형

학대피해노인의 결혼 유형을 살펴보면 학대피해노인의 개인사, 가족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배우자 있음과 배우자 없음으로 나눈 뒤, 배우자 있음의 세부 항목은 초혼, 재혼, 사실혼으로, 배우자 없음은 사별, 이혼, 별거, 가출, 미혼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4,622명 중 배우자 없음이 2,286명(49.5%), 배우자 있음의 경우 2,336명(50.5%)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가장 많은 결혼 유형은 초혼 노인 2,093명으로 이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45.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표 4-6] 학대피해노인 결혼 유형

(단위: 명, %)

구 분		명 수	비 율
배우자있음	초혼	2,093	45.3
	재혼	144	3.1
	사실혼	99	2.1
	소계	2,336	50.5

구 분		명 수	비 율
배우자없음	사별	1,898	41.1
	이혼	236	5.1
	별거	67	1.4
	가출	13	0.3
	미혼	72	1.6
	소계	2,286	49.5
계		4,622	100

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및 동거자 유형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와 동거중인 비율은 3,194명(69.1%)으로 과반을 보이고 있어 일반적으로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노인일수록 학대위험요인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따로 거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실행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거, 비동거 어느 한쪽의 위험요인이 더 높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표 4-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단위: 명, %)

동거	비동거	계
3,194	1,428	4,622
69.1	30.9	100

학대피해노인 동거자 유형은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가족 및 기타 타인 등의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대피해노인의 환경 및 지지자원 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7년 신고접수 된 노인학대 사례 중 학대피해노인의 동거자 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1,790명으로 36.3%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동거자 유형으로는 아들이 1,599명(32.4%), 손자녀가 443명(9.0%)으로 나타났다.

[표 4-8] 학대피해노인 동거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명 수	비 율
배우자	1,790	36.3
아 들	1,599	32.4

구 분	명 수	비 율
며느리	214	4.3
딸	387	7.8
사 위	52	1.1
손자녀	443	9.0
기타 친·인척	53	1.1
기타 동거인	60	1.2
병 원	62	1.3
시 설	274	5.6
계	4,934	100

* 중복

8)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는 학대피해노인과 동거가족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 혼자 거주하는 노인단독가구, 노부부만 거주하는 노인부부가구와 노인과 손자녀만 거주하는 손자녀동거가구, 자녀와 손자녀까지 함께 거주하는 자녀·손자녀동거가구, 노인과 자녀만 동거하는 자녀동거가구로 분류되며, 기타 가구형태로는 시설에 거주하거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형태 등이 포함된다.

2017년 접수된 전체 학대사례 중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자녀동거가구 형태가 1,536명(33.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인부부가 1,216명(26.3%), 노인단독가구가 1,007명(21.8%)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4-9]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명, %)

피해자가구형태	명 수	비 율
노인단독	1,007	21.8
노인부부	1,216	26.3
자녀동거	1,536	33.2
손자녀동거	178	3.9
자녀·손자녀동거	245	5.3
기 타	440	9.5
계	4,622	100

9)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학대피해노인의 주거형태란 학대피해노인의 거주지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경제적 능력과 주거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주거형태는 자택, 전세, 월세, 영구임대, 의료시설, 무상 등으로 분류된다.

학대피해노인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본인명의로 된 집에서 사는 학대피해노인이 2,793명(60.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세가 463명(10.0%), 월세가 454명(9.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0]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단위: 명, %)

자택	전세	월세	영구임대	의료시설	무상	기타	계
2,793	463	454	285	200	121	306	4,622
60.4	10.0	9.8	6.2	4.3	2.6	6.6	100

10)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생활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급여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785명(17.0%)으로 나타났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6.4%라는 점에서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11]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전체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622	785
	17.0

11)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학대피해노인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초졸이 2,034명(44.0%)으로 가장 높았고, 무학이 1,436명(31.1%), 중졸이 564명(12.2%)으로 나타나 무학 및 초졸이 75.1%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2]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단위: 명, %)

무 학	초 졸	중 졸	고 졸	전문대졸이상	계
1,436	2,034	564	459	129	4,622
31.1	44.0	12.2	9.9	2.8	100

12)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학대피해노인의 직업유형은 학대피해노인의 주 수입원인 직업의 유무와 직종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업유형은 학대피해노인의 생활수준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대피해노인의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무직이 4,037명(87.3%)으로 대부분의 학대피해노인이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학대피해노인의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203명(4.4%), 농·어·축산업 종사자가 158명(3.4%)의 순이었다.

[표 4-13]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단위: 명, %)

구 분	명 수	비 율
무직	4,037	87.3
공무원·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11	0.2
전문직	16	0.3
기술공 및 준전문가	8	0.2
서비스·판매종사자	70	1.5
농·어·축산업 종사자	158	3.4
기능업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	0.1
단순노무종사자	203	4.4
자영업자	107	2.3
종교인	8	0.2
계	4,622	100

13) 학대피해노인 건강상태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항목은 질병 유형, 장애 수, 장애유형, 치매정도, 중독 유형 등이 해당된다.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상태는 사례개입 시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상담 시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항목이다.

가. 학대피해노인 질병유형

학대피해노인의 질병 유형으로는 악성신생물(암), 관절염, 요통·좌골통, 디스크, 신경통, 골다공증, 소화성궤양, 만성간염·간경변, 당뇨병, 갑상선 질환, 고혈압, 저혈압, 중풍·뇌혈관 질환, 협심증·심근경색증, 폐결핵·결핵, 만성기관지염, 천식, 백내장, 녹내장, 만성중이염, 만성신장질환, 빈혈, 피부병, 골절·후유증,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학대피해노인의 질병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질병의 건수는 3,905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고혈압이 776건(19.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가 678건(17.4%), 관절염이 668건(17.1%), 당뇨병이 482건(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4] 학대피해노인 질병 유형

(단위: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악성신생물(암)	64	1.6
관절염	668	17.1
요통, 좌골통	69	1.8
디스크	165	4.2
신경통	184	4.7
골다공증	175	4.5
소화성궤양	32	0.8
만성간염, 간경변	6	0.2
당뇨병	482	12.3
갑상선 질환	29	0.7
고혈압	776	19.9
저혈압	25	0.6
중풍, 뇌혈관 질환	188	4.8
협심증, 심근경색증	72	1.8
폐결핵, 결핵	14	0.4
만성기관지염	18	0.5
천 식	33	0.8
백내장	29	0.7
녹내장	14	0.4
만성중이염	2	0.1

구 분	건 수	비 율
만성신장질환	36	0.9
빈 혈	34	0.9
피부병	25	0.6
골절, 후유증	87	2.2
기 타	678	17.4
계	3,905	100

* 중복

나. 학대피해노인 장애 수 및 장애유형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대피해노인은 전체 학대피해노인 4,622명 중 496명 (10.7%)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426명(85.9%)은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학대피해노인 장애 수

(단위: 명, %)

장애 수	건 수	비 율
1개	70	14.1
2개 이상	426	85.9
계	496	100

* 중복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분류되는데, 신체장애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장루, 요루, 간질 등이 해당되고, 정신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정신분열, 정동장애, 우울장애 등이 해당된다.

2017년 학대피해노인의 장애 유형을 보면 신체장애는 382건(77.0%)이며 정신장애는 114건(23.0%)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로 140건(28.2%)이며, 그 다음으로는 우울장애 84건(16.9%), 청각장애 82건(16.5%)으로 나타났다.

[표 4-16]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단위: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신체 장애	지체장애	140	28.2
	뇌병변장애	34	6.9
	시각장애	57	11.5
	청각장애	82	16.5
	언어장애	10	2.0
	신장장애	3	0.6
	심장장애	8	1.6
	호흡기장애	3	0.6
	장루요루장애	4	0.8
	간질장애	5	1.0
	지적장애	36	7.3
	소계	382	77.0
정신 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2	0.4
	정신분열	25	5.0
	정동장애	3	0.6
	우울장애	84	16.9
	소계	114	23.0
계	496	100	

* 중복

다.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는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와 병원진단 없이 상담원이 입의로 치매간이조사지표나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로 의심하는 치매의심으로 분류한다.

2017년 발생한 학대사례의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로 진단받은 사례는 총 1,122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24.3%로 집계되었다. 이 중 488건(10.6%)은 치매의심이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진단은 634건(13.7%)으로 나타났다.

[표 4-17]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건, %)

전체학대사례	치매의심(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치매로 진단받음)	계
4,622	488	634	1,122
	10.6	13.7	24.3

라. 학대피해노인 중독 유형

학대피해노인의 중독 유형은 중독성을 지닌 항목의 중독여부 및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약물 사용 장애, 도박중독 등이 해당된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거나, 알코올 의존비율이 높은 경우를 의미하고, 약물 사용 장애도 마찬가지로 약물중독 진단을 받았거나, 약물 의존비율이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전체 학대사례 4,622건 중 63건(1.4%)이 중독 유형을 보였으며, 이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60건으로 중독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4-18] 학대피해노인 중독 유형

(단위: 건, %)

전체학대사례	알코올 사용 장애	약물 사용 장애	도박중독	계
4,622	60	2	1	63
	1.3	0.0	0.0	1.4

14)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정도는 학대피해노인의 기능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은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타기, 방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등을 통해 파악한다.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몸단장하기, 집안일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 사러가기, 금전 관리하기, 전화 사용하기, 약 챙겨먹기 등을 통해 파악한다.

2017년 접수된 학대사례에 대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상생활 정도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경우 각각의 항목은 71~75% 수준에서 완전자립이 가능한 상태이며,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각각의 항목은 67~73% 수준에서 완전자립이 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완전도움의 경우 각각의 항목은 8~10% 수준이었으며,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각각의 항목은 9~12% 수준으로 나타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서 조금 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단위: 명, %)

구 분		부분도움	완전도움	완전자립	계
일상생활 수행능력 (ADL)	옷 벗고 입기	778	409	3,435	4,622
		16.8	8.8	74.3	100
	세수하기	766	398	3,458	4,622
		16.6	8.6	74.8	100
	양치질하기	769	398	3,455	4,622
		16.6	8.6	74.8	100
	목욕하기	844	465	3,313	4,622
		18.3	10.1	71.7	100
	식사하기	822	378	3,422	4,622
		17.8	8.2	74.0	100
	체위변경하기	774	379	3,469	4,622
		16.7	8.2	75.1	100
	일어나 앉기	793	388	3,441	4,622
		17.2	8.4	74.4	100
	움겨 타기	796	425	3,401	4,622
		17.2	9.2	73.6	100
	방밖으로 나오기	771	409	3,442	4,622
		16.7	8.8	74.5	100
	화장실 사용하기	776	416	3,430	4,622
		16.8	9.0	74.2	100
대변조절하기	766	399	3,457	4,622	
	16.6	8.6	74.8	100	
소변조절하기	767	397	3,458	4,622	
	16.6	8.6	74.8	100	

구 분		부분도움	완전도움	완전자립	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IADL)	몸 단장하기	814	437	3,371	4,622
		17.6	9.5	72.9	100
	집안일 하기	904	522	3,196	4,622
		19.6	11.3	69.1	100
	식사준비하기	882	530	3,210	4,622
		19.1	11.5	69.5	100
	빨래하기	877	544	3,201	4,622
		19.0	11.8	69.3	100
	근거리 외출하기	919	521	3,182	4,622
		19.9	11.3	68.8	100
	교통수단 이용하기	928	567	3,127	4,622
		20.1	12.3	67.7	100
	물건 사러가기	881	540	3,201	4,622
		19.1	11.7	69.3	100
	금전관리하기	863	535	3,224	4,622
		18.7	11.6	69.8	100
	전화 사용하기	823	471	3,328	4,622
		17.8	10.2	72.0	100
	약 챙겨 먹기	841	470	3,311	4,622
		18.2	10.2	71.6	100

15)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이를 다시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상담서비스는 학대피해노인 개별상담, 학대피해노인 집단상담, 가족상담, 관련자상담, 심리 및 기타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는 국민기초수급권 연결, 긴급복지지원 연결, 가족지원서비스 연결, 재가서비스 연결,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기타자원 연결, 후원 연결, 직접 후원 등이 해당된다.

법률서비스는 법률상담 연결, 법률소송 지원,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이며, 의료서비스는 연계(이송), 연계(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연계(방문간호), 지원(이송 및 동행), 지원(의료비

지급)으로 분류된다. 보호서비스는 지킴이 연결, 시설보호, 일시보호 등이 해당되며 정보 제공서비스는 정보제공, 재학대 예방교육 등으로 분류된다.

2017년 접수된 학대사례 중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제공서비스는 총 128,134회이며 이 중 상담서비스가 76,235회(59.5%)로 가장 높았고, 정보제공서비스가 40,148회(31.3%), 복지 서비스 제공이 9,336회(7.3%)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담서비스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대피해노인 개별상담이 33,225회(25.9%), 관련자 상담이 30,408회(23.7%), 가족상담 11,833회(9.2%)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자 상담이란 학대피해노인의 관련자로서 이웃, 회사동료, 동사무소 등의 상담을 의미한다. 상담서비스의 주된 기능은 객관적인 상황판단 및 가족 간 변화를 파악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개입을 위한 노력,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서비스가 아닌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면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표 4-20]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단위: 회, %)

구 분		횟 수	비 율
상담서비스	학대피해노인 개별상담	33,225	25.9
	학대피해노인 집단상담	415	0.3
	가족상담	11,833	9.2
	관련자 상담	30,408	23.7
	심리 및 기타검사	354	0.3
	소계	76,235	59.5
복지서비스	국민기초 수급권 연결	89	0.1
	긴급복지지원연결	36	0.0
	가족지원서비스 연결	28	0.0
	재가 서비스 연결	53	0.0
	사회복지 서비스 연결	3,261	2.5
	기타자원 연결	4,244	3.3
	후원 연결	185	0.1
	직접 후원	1,440	1.1
	소계	9,336	7.3

구 분		횟 수	비 율
법률서비스	법률상담연결	214	0.2
	법률소송지원	45	0.0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22	0.0
	소계	281	0.2
의료서비스	연계(이송)	93	0.1
	연계(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286	0.2
	연계(방문간호)	35	0.0
	지원(이송 및 동행)	591	0.5
	지원(의료비 지급)	250	0.2
	소계	1,255	1.0
보호서비스	지킴이연결	297	0.2
	시설보호	69	0.1
	일시보호	513	0.4
	소계	879	0.7
정보제공 서비스	정보제공	37,268	29.1
	재학대 예방교육	2,880	2.2
	소계	40,148	31.3
계		128,134	100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각 비율의 소계가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학대행위자 현황

1)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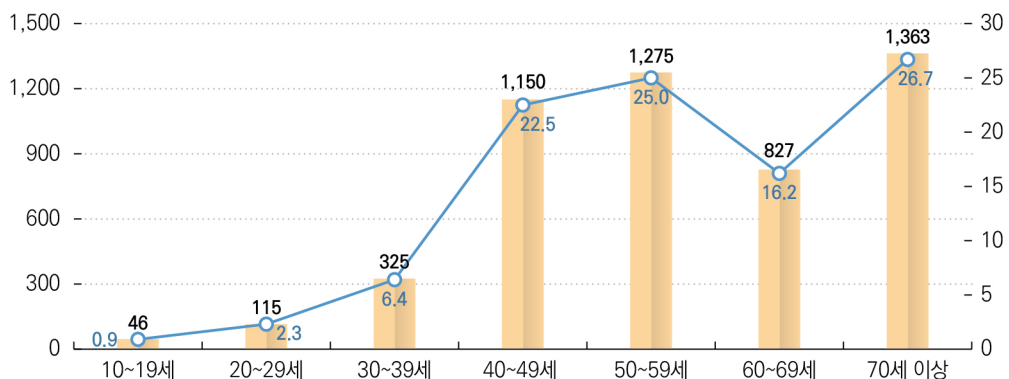
2017년 학대피해노인 4,622명에 대한 학대행위자는 5,101명으로 한 명의 학대피해노인에 대해 두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존재할 수 있어 학대피해노인의 수보다 행위자가 더 많게 나타날 수 있다. 전체 학대행위자 5,101명 중 남성은 3,585명(70.3%)이며 여성은 1,516명(29.7%)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70세 이상이 1,363명(26.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대(1,275명, 25.0%), 40대(1,150명, 22.5%) 등의 순을 나타냈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 학대행위자의 경우 70세 이상이 1,092건(30.5%)으로 가장 높았으나, 여성 학대행위자의 경우에는 50대가 452건(29.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1] 학대행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명, %)

구 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남성	24	93	250	807	823	496	1,092	3,585
	0.7	2.6	7.0	22.5	23.0	13.8	30.5	100
여성	22	22	75	343	452	331	271	1,516
	1.5	1.5	4.9	22.6	29.8	21.8	17.9	100
계	46	115	325	1,150	1,275	827	1,363	5,101
	0.9	2.3	6.4	22.5	25.0	16.2	26.7	100



[그림 4-4] 학대행위자 연령분포

2) 학대행위자 지역 및 기관별 분포

학대행위자의 지역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대행위자 5,101명 중 경기도가 796명(15.6%)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539명(10.6%), 서울특별시가 455명(8.9%)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별 학대행위자 분포는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446명(8.7%)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395명(7.7%)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300명(5.9%)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명(0.4%)으로 학대행위자 분포가 가장 적었으며,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57명(1.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역이나 기관의 차이라기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소일(2017. 12.)을 감안하여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노인은 574명(72.1%)으로 경기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여성노인은 272명(50.5%)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4-2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시도	시설명	남 성		여 성		계	
서울	서울남부	171	73.1	63	26.9	234	100
	서울북부	170	76.9	51	23.1	221	100
	소계	341	74.9	114	25.1	455	100
부산	부산동부	163	81.1	38	18.9	201	100
	부산서부	144	74.6	49	25.4	193	100
	소계	307	77.9	87	22.1	394	100
대구	대구남부	94	81.0	22	19.0	116	100
	대구북부	74	76.3	23	23.7	97	100
	소계	168	78.9	45	21.1	213	100
인천		362	81.2	84	18.8	446	100
광주		169	69.3	75	30.7	244	100
대전		47	37.0	80	63.0	127	100
울산		70	64.2	39	35.8	109	100

시도	시설명	남 성		여 성		계	
경기	경기남부	176	77.2	52	22.8	228	100
	경기북부	199	66.3	101	33.7	300	100
	경기서부	199	74.3	69	25.7	268	100
	소계	574	72.1	222	27.9	796	100
강원	강원	158	40.0	237	60.0	395	100
	강원동부	56	80.0	14	20.0	70	100
	강원남부	53	71.6	21	28.4	74	100
	소계	267	49.5	272	50.5	539	100
충북	충북	90	81.1	21	18.9	111	100
	충북북부	44	77.2	13	22.8	57	100
	소계	134	79.8	34	20.2	168	100
충남	충남	134	79.3	35	20.7	169	100
	충남남부	60	78.9	16	21.1	76	100
	소계	194	79.2	51	20.8	245	100
전북	전북	107	69.0	48	31.0	155	100
	전북서부	73	73.0	27	27.0	100	100
	소계	180	70.6	75	29.4	255	100
전남	전남	109	71.2	44	28.8	153	100
	전남서부	157	64.9	85	35.1	242	100
	소계	266	67.3	129	32.7	395	100
경북	경북	66	58.9	46	41.1	112	100
	경북서북부	110	74.8	37	25.2	147	100
	경북서남부	51	77.3	15	22.7	66	100
	소계	227	69.8	98	30.2	325	100
경남	경남	153	68.9	69	31.1	222	100
	경남서부	49	74.2	17	25.8	66	100
	소계	202	70.1	86	29.9	288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61	74.4	21	25.6	82	100
	제주도서귀포시	16	80.0	4	20.0	20	100
	소계	77	75.5	25	24.5	102	100
계		3,585	70.3	1,516	29.7	5,101	100

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크게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으로 분류된다. 친족은 다시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의 세부항목으로 분류되며, 타인은 동거인, 이웃, 친구, 기타 타인으로, 기관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기타 기관 관련 종사자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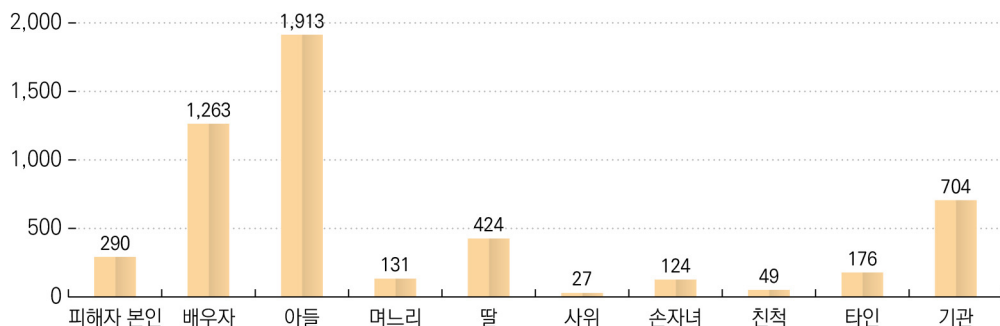
2017년 접수된 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족 관계인 경우가 3,931명(77.1%)으로 가장 많았다. 친족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들이 1,913명(37.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배우자 1,263명(24.8%), 딸 424명(8.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들의 경우는 전체 세부항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37.5%)을 보였으며, 배우자의 경우도 전체 세부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24.8%)을 보였다. 아들과 딸을 합친 자녀의 경우는 2,337명(45.8%)으로 학대행위자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친족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기관 704명(13.8%), 피해자 본인 290명(5.7%)이었다. 학대행위자가 피해자 본인인 경우는 노인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자기방임 사례에 해당한다. 학대행위자가 동거인·이웃·친구 등의 타인인 경우는 176명(3.5%)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2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명, %)

피해자 본인	친 족							타 인	기 관	계
	배우자	아 들	며느리	딸	사 위	손자녀	친 척			
290	1,263	1,913	131	424	27	124	49	176	704	5,101
5.7	24.8	37.5	2.6	8.3	0.5	2.4	1.0	3.5	13.8	100



[그림 4-5]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의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70대 이상에서는 배우자가 1,007건(19.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대피해노인 본인 230건(4.5%), 타인 71건(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에 의한 학대와 학대피해노인 본인에 의한 학대는 7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40대와 50대에서는 아들이 각각 779건(15.3%), 719건(14.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 부양층인 40-50대 중 부양 부담을 주로 안고 있는 아들에 의해 노인학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4] 학대행위자 연령별 학대행위자 유형 분포

(단위: 건,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10~19세	-	-	-	-	1	-	44	1	-	-	46
	-	-	-	-	0.0	-	0.9	0.0	-	-	0.9
20~29세	-	-	18	2	9	-	58	-	2	26	115
	-	-	0.4	0.0	0.2	-	1.1	-	0.0	0.5	2.3
30~39세	-	-	222	18	45	2	17	2	7	12	325
	-	-	4.4	0.4	0.9	0.0	0.3	0.0	0.1	0.2	6.4
40~49세	-	3	779	40	162	8	5	7	17	129	1,150
	-	0.1	15.3	0.8	3.2	0.2	0.1	0.1	0.3	2.5	22.5
50~59세	-	20	719	52	152	15	-	11	35	271	1,275
	-	0.4	14.1	1.0	3.0	0.3	-	0.2	0.7	5.3	25.0
60~69세	60	233	155	16	49	2	-	12	44	256	827
	1.2	4.6	3.0	0.3	1.0	0.0	-	0.2	0.9	5.0	16.2
70세 이상	230	1,007	20	3	6	-	-	16	71	10	1,363
	4.5	19.7	0.4	0.1	0.1	-	-	0.3	1.4	0.2	26.7
계	290	1,263	1,913	131	424	27	124	49	176	704	5,101
	5.7	24.8	37.5	2.6	8.3	0.5	2.4	1.0	3.5	13.8	100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394건, 35.5%)와 자녀·손자녀동거가구(131건, 51.4%), 기타 가구(1,137건, 72.4%)에서는 아들이 주 학대행위자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부부가구는 배우자가 983건(80.0%), 손자녀동거가구에서는 손자녀가 73건(39.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자녀동거가구의 주 학대행위자는 581건(77.5%)을 차지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자녀동거

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대행위자는 친족이며,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 구성에 따라 학대행위자 유형도 대체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5] 학대피해노인 피해자가구형태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건,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노인단독	236	58	394	36	168	8	11	22	697	82	95	1,110
	21.3	5.2	35.5	3.2	15.1	0.7	1.0	2.0	62.8	7.4	8.6	100
노인부부	13	983	140	7	27	2	6	4	1,169	37	10	1,229
	1.1	80.0	11.4	0.6	2.2	0.2	0.5	0.3	95.1	3.0	0.8	100
손자녀동거	3	24	56	10	14	1	73	-	178	3	3	187
	1.6	12.8	29.9	5.3	7.5	0.5	39.0	-	95.2	1.6	1.6	100
자녀·손자녀 동거	2	27	131	30	26	8	29	1	252	1	-	255
	0.8	10.6	51.4	11.8	10.2	3.1	11.4	0.4	98.8	0.4	-	100
자녀동거	16	19	55	5	16	1	-	20	116	37	581	750
	2.1	2.5	7.3	0.7	2.1	0.1	-	2.7	15.5	4.9	77.5	100
기타	20	152	1,137	43	173	7	5	2	1,519	16	15	1,570
	1.3	9.7	72.4	2.7	11.0	0.4	0.3	0.1	96.8	1.0	1.0	100
소계	290	1,263	1,913	131	424	27	124	49	3,931	176	704	5,101
	5.7	24.8	37.5	2.6	8.3	0.5	2.4	1.0	77.1	3.5	13.8	100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는 70세 이상이 1,309건(30.6%)으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시설은 60대가 242건(37.7%), 이용시설은 50대가 11건(47.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병원에서는 60대(10건, 35.7%)의 학대행위자가, 공공장소에서는 70세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26건(4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장소에서는 40대(19건, 27.5%)의 학대행위자가 가장 많았다.

[표 4-26]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건, %)

구 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가정내	46	87	303	993	989	552	1,309	4,279
	1.1	2.0	7.1	23.2	23.1	12.9	30.6	100
생활시설	-	23	7	120	241	242	9	642
	-	3.6	1.1	18.7	37.5	37.7	1.4	100

구 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이용시설	-	3	1	4	11	1	3	23
	-	13.0	4.3	17.4	47.8	4.3	13.0	100
병원	-	-	4	4	9	10	1	28
	-	-	14.3	14.3	32.1	35.7	3.6	100
공공장소	-	1	6	10	10	7	26	60
	-	1.7	10.0	16.7	16.7	11.7	43.3	100
기타	-	1	4	19	15	15	15	69
	-	1.4	5.8	27.5	21.7	21.7	21.7	100
계	46	115	325	1,150	1,275	827	1,363	5,101
	0.9	2.3	6.4	22.5	25.0	16.2	26.7	100

학대피해노인의 학대발생장소별 전체적인 학대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가정 내의 경우 아들 1,884건(44.0%), 배우자 1,253건(29.3%), 딸 411건(9.6%)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정 내의 경우 아들에 의한 학대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활시설의 경우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기타기관 관련 종사자 등의 기관에 의한 학대행위자가 637건(99.2%)으로 생활시설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이 관련기관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와 기타 장소의 경우 타인이 각각 29건(48.3%), 22건(31.9%)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체적인 학대행위자 유형은 아들-배우자-기관 순으로 나타나지만, 학대발생장소에 따라 학대행위자 유형도 달라짐을 의미한다.

[표 4-27]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건, %)

구 분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 원	공공장소	기 타	계
피해자본인	279	-	-	-	4	7	290
	6.5	-	-	-	6.7	10.1	5.7
배우자	1,253	-	-	-	6	4	1,263
	29.3	-	-	-	10.0	5.8	24.8
아들	1,884	-	-	-	15	14	1,913
	44.0	-	-	-	25.0	20.3	37.5
며느리	129	-	-	-	-	2	131
	3.0	-	-	-	-	2.9	2.6

구 분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 원	공공장소	기 타	계
딸	411	-	-	-	3	10	424
	9.6	-	-	-	5.0	14.5	8.3
사위	27	-	-	-	-	-	27
	0.6	-	-	-	-	-	0.5
손자녀	122	-	-	-	2	-	124
	2.9	-	-	-	3.3	-	2.4
친척	48	1*	-	-	-	-	49
	1.1	0.2	-	-	-	-	1.0
타인	117	4	3	1	29	22	176
	2.7	0.6	13.0	3.6	48.3	31.9	3.5
기관	9	637	20	27	1	10	704
	0.2	99.2	87.0	96.4	1.7	14.5	13.8
계	4,279	642	23	28	60	69	5,10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주) 생활시설*친척의 1건은 해당 케이스의 주 학대행위자가 시설종사자이면서 복수이므로 학대발생장소를 가정 내가 아닌 시설학대로 포함함

4)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학대행위자의 결혼여부 및 그 유형을 크게 배우자 있음과 배우자 없음으로 분류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배우자 있음은 초혼, 재혼, 사실혼으로, 배우자 없음은 미혼, 사별, 이혼, 별거, 가출로 다시 분류하였다. 학대행위자의 결혼여부를 살펴보면 배우자 있음은 2,922명(57.3%), 배우자 없음은 2,179명(42.7%)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초혼인 경우가 2,620명(51.4%)으로 가장 많았고, 미혼이 1,242명(24.3%)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이혼이 605명(11.9%), 사별이 232명(4.5%), 재혼이 168명(3.3%)으로 나타났다.

[표 4-28]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단위: 명, %)

구 분		명 수	비 율
배우자 있음	초혼	2,620	51.4
	재혼	168	3.3
	사실혼	134	2.6
	소계	2,922	57.3
배우자 없음	미혼	1,242	24.3
	사별	232	4.5
	이혼	605	11.9
	별거	88	1.7
	가출	12	0.2
	소계	2,179	42.7
계		5,101	100

5)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생활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급여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575명(11.3%)으로 나타났다.

[표 4-29]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전체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101	575
	11.3

한편 학대행위자 연령대 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대행위자 575명 중 30대 이하가 45명(7.8%), 40대가 128명(22.3%), 50대가 136명(23.7%)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대비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16년: 577명, 12.4% → '17년: 575명, 11.3%).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령대를 통해 세부적으로 보면 노년층의 학대행위자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중장년층의 학대행위자 수급 비중은 증가하였다('16년: 40-50대: 202명, 35.0%, 60-70대 이상: 344명, 59.6% → '17년: 40-50대: 264명, 46.0%, 60-70대 이상: 266명, 46.3%).

[표 4-30]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19세	7
	1.2
20~29세	11
	1.9
30~39세	27
	4.7
40~49세	128
	22.3
50~59세	136
	23.7
60~69세	89
	15.5
70세 이상	177
	30.8
계	575
	100

6)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학대행위자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고졸이 1,978명으로 38.8%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졸 이상이 995명으로 19.5%를 차지하여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초1~고1) 미이수에 해당하는 중졸 이하는 2,128명(41.7%)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의 교육정도는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표 4-31]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단위: 명, %)

무 학	초 졸	중 졸	고 졸	전문대졸이상	계
402	945	781	1,978	995	5,101
7.9	18.5	15.3	38.8	19.5	100

7)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은 학대행위자의 주 수입원인 직업의 유무와 종류를 의미한다. 따라서 직업유형은 학대행위자의 생활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경제적 부양부담과도 연결된다.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은 무직이 2,970명(58.2%)으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판매종사자가 545명(10.7%), 단순노무종사자가 508명(10.0%), 전문직이 354명(6.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2]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무직	2,970	58.2
공무원·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68	1.3
전문직	354	6.9
기술공 및 준전문가	88	1.7
사무종사자	88	1.7
서비스·판매종사자	545	10.7
농·어·축산업 종사자	163	3.2
기능업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1	0.6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27	0.5
단순노무종사자	508	10.0
자영업자	239	4.7
종교인	20	0.4
계	5,101	100

8) 학대행위자 장애 및 중독유형

학대행위자 중 장애를 가진 경우는 전체 5,101명 중 608명으로 11.9%에 해당된다. 장애 유형은 크게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분류된다. 신체장애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등이 해당된다. 정신장애로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정신분열, 정동장애, 우울장애가 해당된다.

학대행위자의 신체장애는 184명으로 전체 장애유형 중 30.4%에 해당되며, 정신장애는 424명으로 전체 장애유형 중 6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행위자의 장애

유형은 신체장애보다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정신장애 중에서도 정신분열이 191명(3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장애가 110명(18.1%)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4-33] 학대행위자 장애유형

(단위: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신체 장애	지체장애	86	14.1
	뇌병변장애	18	3.0
	시각장애	21	3.5
	청각장애	38	6.3
	언어장애	5	0.8
	안면장애	-	-
	신장장애	6	1.0
	심장장애	1	0.2
	간장애	-	-
	호흡기장애	1	0.2
	장루·요루장애	-	-
	간질장애	8	1.3
	소계	184	30.4
정신 장애	지적장애	67	11.0
	자폐성장애	2	0.3
	반사회적 인격장애	33	5.4
	정신분열	191	31.4
	정동장애	21	3.5
	우울장애	110	18.1
	소계	424	69.7
계	608	100	

학대행위자의 중독 유형은 중독성을 지닌 항목의 중독여부와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약물 사용 장애, 도박중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거나, 알코올 의존비율이 높은 경우를 의미하고, 약물 사용 장애도 마찬가지로 약물 중독 진단을 받았거나, 약물 의존비율이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전체 학대행위자 5,101명 중 835명(16.4%)이 중독유형에 해당되며,

이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801명(15.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도박중독은 18명(0.4%), 약물 사용 장애 16명(0.3%)으로 나타났다.

[표 4-34] 학대행위자 중독 유형

(단위: 명, %)

전체 학대행위자	도박중독	알코올 사용 장애	약물 사용 장애	계
5,101	18	801	16	835
	0.4	15.7	0.3	16.4

9)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는 처벌보단 상담·치료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7년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20,502회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서비스의 경우 총 12,078회(59.0%)를 제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재학대 예방교육 및 기타 정보제공에 관한 정보제공서비스가 7,483회(36.5%)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등의 복지서비스가 734회(3.4%), 의료서비스가 191회(0.9%), 법률서비스가 16회(0.1%)의 순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주로 상담서비스와 정보제공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표 4-35]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단위: 회, %)

구 분	횟 수	비 율	
상담서비스	학대행위자 개별상담	8,657	42.2
	학대행위자 집단상담	31	0.2
	가족상담	1,147	5.6
	관련자 상담	2,163	10.6
	심리 및 기타검사	80	0.4
	소계	12,078	59.0

구 분		횟 수	비 율
복지서비스	국민기초 수급권 연결	17	0.1
	긴급복지지원연결	7	0.0
	가족지원서비스 연결	9	0.0
	재가 서비스 연결	8	0.0
	사회복지 서비스 연결	379	1.8
	기타자원 연결	181	0.9
	직접후원	133	0.6
	소계	734	3.4
법률서비스	법률상담연결	15	0.1
	법률소송지원	1	0.0
	소계	16	0.1
의료서비스	연계(이송)	34	0.2
	연계(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46	0.2
	연계(방문간호)	-	-
	지원(이송 및 동행)	89	0.4
	지원(의료비 지급)	22	0.1
	소계	191	0.9
정보제공서비스	재학대 예방교육	1,371	6.7
	정보제공	6,112	29.8
	소계	7,483	36.5
보호서비스	시설입소	-	-
	소계	-	-
계		20,502	100

3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근거하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등으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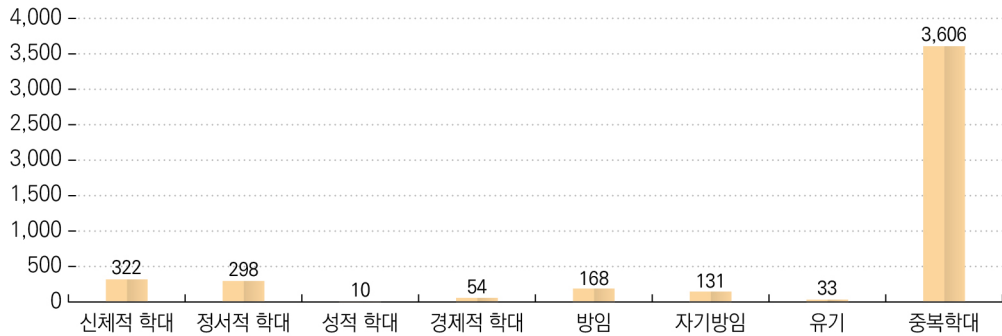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유형은 학대피해노인 수와 학대 유형 건수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먼저 학대피해노인 수를 기준으로 한 가지 학대 유형만 발생한 단일학대와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발생한 중복학대를 포함하여 분류한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학대사례 4,622건 중 중복학대가 3,606건(78.0%)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피해노인의 과반이 중복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일학대 건수의 경우 신체적 학대 322건(7.0%), 정서적 학대 298건(6.4%), 방임 168건(3.6%), 자기방임 131건(2.8%)순으로 나타나 전년도와 다른 양상(자기방임-정서적 학대-방임-신체적 학대)을 보였다.

[표 4-36]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중복학대	계
322	298	10	54	168	131	33	3,606	4,622
7.0	6.4	0.2	1.2	3.6	2.8	0.7	78.0	100



[그림 4-6] 노인학대 유형 I

2) 노인학대 유형II(학대 유형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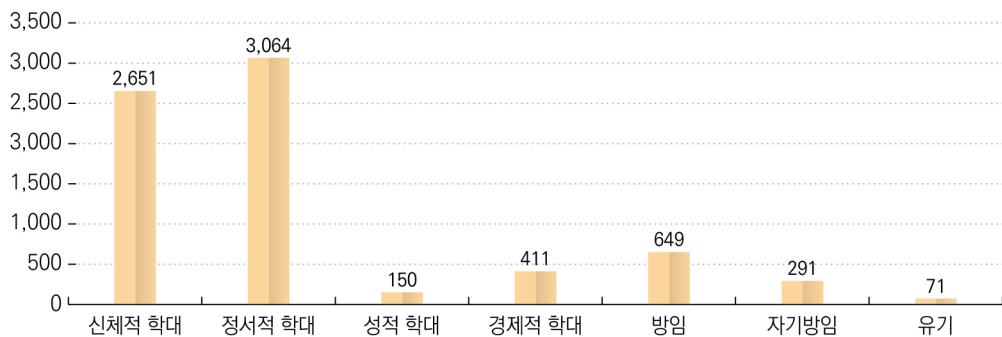
노인학대 유형II는 학대피해노인이 경험한 학대 유형을 기준으로 중복 집계하여 학대 유형을 분류한 것으로 전체 노인학대사례의 노인학대 유형 건수는 7,287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정서적 학대가 3,064건(42.0%)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가 2,651건(36.4%), 방임이 649건(8.9%)을 차지하였다. 이 세 유형의 학대건수는 전체 학대 건수의 87.3%에 해당하는 수치로 노인학대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경제적 학대 411건(5.6%), 자기방임 291건(4.0%), 성적 학대 150건(2.1%), 유기 71건(1.0%)순으로 나타났다.

[표 4-37] 노인학대 유형II(학대 유형 건수)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2,651	3,064	150	411	649	291	71	7,287
36.4	42.0	2.1	5.6	8.9	4.0	1.0	100

* 중복



[그림 4-7] 노인학대 유형II

노인학대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의 경우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가 2,441건으로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 행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전체 노인학대 건수 중 33.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정서적 학대 행위는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였으며 352건(4.8%)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가 198건(2.7%), ‘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한다’가 32건(0.4%), ‘노인을 무시하거나 기피한다’가 16건(0.2%)으로 뒤를 이었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노인을 폭행한다’가 1,913건(2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가 519건(7.1%)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제한한다’가 121건(1.7%),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가 64건(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가 297건(4.1%)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방임 행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가 120건(1.6%)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가 286건(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가 104건(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기방임의 경우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의 행위가 291건(4.0%)으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의 구체적 행위로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가 104건(1.4%),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가 46건(0.6%)으로 나타났다. 유기는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가 69건(0.9%),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유기한다’가 2건(0.0%)으로 나타났다.

[표 4-38] 노인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단위: 건, %)

구분	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제한한다.	121	1.7
	노인을 폭행한다.	1,913	26.3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3	0.0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	64	0.9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20	0.3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한다.	10	0.1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519	7.1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1	0.0
	소계	2,651	36.4
정서적 학대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10	0.1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352	4.8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2,441	33.5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198	2.7
	노인의 사생활과 입·퇴소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을 제한한다.	2	0.0
	노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다.	13	0.2
	노인을 무시하거나 기피한다.	16	0.2
	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한다.	32	0.4
소계	3,064	42.0	
성적 학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104	1.4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46	0.6
	소계	150	2.1
경제적 학대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286	3.9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104	1.4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21	0.3
	소계	411	5.6
방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297	4.1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120	1.6
	의료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88	1.2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	21	0.3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	42	0.6
	노인의 일상생활 관련 보호 및 서비스를 방치한다.	77	1.1
	학대사례를 방치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	4	0.1
	소계	649	8.9
자기 방임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	291	4.0
	소계	291	4.0
유기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69	0.9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유기한다.	2	0.0
	소계	71	1.0
계		7,287	100

* 중복

3)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학대피해노인 성별에 따른 전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남성노인 1,750건(24.0%), 여성노인 5,537건(76.0%)으로 성별 간 큰 차이를 보였다. 학대유형 별로 보면 대부분의 학대 유형이 성별에 따른 전체 건수 비율과 비슷하였으나 성적 학대의 경우 여성노인(131건, 87.3%)이 남성노인(19건, 12.7%)에 비해 발생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다른 학대 유형과 달리 자기방임과 유기는 남성노인이 각각 128건(44.0%), 39건(54.9%)로 나타나 여성노인에 비해 학대 발생 비율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39]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단위: 건, %)

구 분	남 성	여 성	계
신체적 학대	557	2,094	2,651
	21.0	79.0	100
정서적 학대	672	2,392	3,064
	21.9	78.1	100
성적 학대	19	131	150
	12.7	87.3	100
경제적 학대	113	298	411
	27.5	72.5	100
방임	222	427	649
	34.2	65.8	100
자기방임	128	163	291
	44.0	56.0	100
유기	39	32	71
	54.9	45.1	100
계	1,750	5,537	7,287
	24.0	76.0	100

* 중복

4)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의 연령을 살펴보면 70대 및 80대가 5,453건(74.8%)으로 많았으며, 세부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자기방임, 유기의 경우 70대 그룹에서, 성적 학대 및 방임 유형은 80대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학대의 경우 70대와 80대 모두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였다.

[표 4-40]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단위: 건, %)

구 분	59세 이하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신체적 학대	2 0.1	78 2.9	506 19.1	613 23.1	660 24.9	472 17.8	206 7.8	88 3.3	18 0.7	8 0.3
정서적 학대	5 0.2	93 3.0	543 17.7	714 23.3	745 24.3	560 18.3	283 9.2	103 3.4	15 0.5	3 0.1	3,064 100
성적학대	2 1.3	9 6.0	16 10.7	26 17.3	27 18.0	30 20.0	26 17.3	8 5.3	5 3.3	1 0.7	150 100
경제적 학대	1 0.2	16 3.9	47 11.4	67 16.3	91 22.1	97 23.6	61 14.8	25 6.1	6 1.5	- -	411 100
방 입	1 0.2	17 2.6	47 7.2	80 12.3	127 19.6	163 25.1	137 21.1	59 9.1	17 2.6	1 0.2	649 100
자기방입	1 0.3	21 7.2	40 13.7	56 19.2	59 20.3	60 20.6	37 12.7	13 4.5	3 1.0	1 0.3	291 100
유 기	- -	2 2.8	10 14.1	10 14.1	20 28.2	17 23.9	9 12.7	2 2.8	1 1.4	- -	71 100
계	12 0.2	236 3.2	1,209 16.6	1,566 21.5	1,729 23.7	1,399 19.2	759 10.4	298 4.1	65 0.9	14 0.2	7,287 100

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경우 아들 - 배우자 - 딸 순으로 나타났으며 방입의 경우는 아들 - 기관 - 딸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신체적 학대의 경우 자녀 및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주학대로 나타났으며, 방입의 경우는 자녀의 의한 방입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기관이 주학대로 나타났다.

경제적 학대의 경우 아들, 딸 등 자녀에 의한 비율이 274건(66.7%)으로 절반 이상이 자녀로부터 경제적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 학대의 경우 기관 - 배우자 - 타인, 유기의 경우 아들 - 딸 - 배우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1]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신체적 학대	-	957	1,098	55	174	15	85	25	74	168	2,651
	-	36.1	41.4	2.1	6.6	0.6	3.2	0.9	2.8	6.3	100

구 분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정서적 학대	2	1,040	1,375	87	237	20	91	20	116	77	3,065
	0.1	33.9	44.9	2.8	7.7	0.7	3.0	0.7	3.8	2.5	100
성적 학대	-	48	6	-	-	2	1	-	9	84	150
	-	32.0	4.0	-	-	1.3	0.7	-	6.0	56.0	100
경제적 학대	-	40	231	12	43	3	11	15	33	23	411
	-	9.7	56.2	2.9	10.5	0.7	2.7	3.6	8.0	5.6	100
방임	14	37	273	18	121	2	3	17	12	152	649
	2.2	5.7	42.1	2.8	18.6	0.3	0.5	2.6	1.8	23.4	100
자기방임	263	4	19	-	4	-	-	-	-	-	290
	90.7	1.4	6.6	-	1.4	-	-	-	-	-	100
유기	1	4	43	1	19	-	1	-	-	2	71
	1.4	5.6	60.6	1.4	26.8	-	1.4	-	-	2.8	100
계	280	2,130	3,045	173	598	42	192	77	244	506	7,287
	3.8	29.2	41.8	2.4	8.2	0.6	2.6	1.1	3.3	6.9	100

6) 노인학대 유형별 가구형태

학대 유형 별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1,209건, 39.5%), 신체적 학대(1,019건, 38.4%), 경제적 학대(147건, 35.8%)는 자녀동거가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반면 자기방임(236건, 81.1%) 및 유기(37건, 52.1%), 방임(295건, 45.5%)은 노인단독가구에서, 성적 학대는 기타(81건, 54.0%)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에 따라 학대 유형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2]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노인 단독	265	416	17	129	295	236	37	1,395
	10.0	13.6	11.3	31.4	45.5	81.1	52.1	19.1
노인 부부	880	980	39	54	58	13	2	2,026
	33.2	32.0	26.0	13.1	8.9	4.5	2.8	27.8
손자녀 동거	122	144	3	13	11	3	1	297
	4.6	4.7	2.0	3.2	1.7	1.0	1.4	4.1
자녀· 손자녀동거	172	195	2	26	25	2	1	423
	6.5	6.4	1.3	6.3	3.9	0.7	1.4	5.8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자녀 동거	1,019	1,209	8	147	135	21	4	2,543
	38.4	39.5	5.3	35.8	20.8	7.2	5.6	34.9
기타	193	120	81	42	125	16	26	603
	7.3	3.9	54.0	10.2	19.3	5.5	36.6	8.3
계	2,651	3,064	150	411	649	291	71	7,28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7) 학대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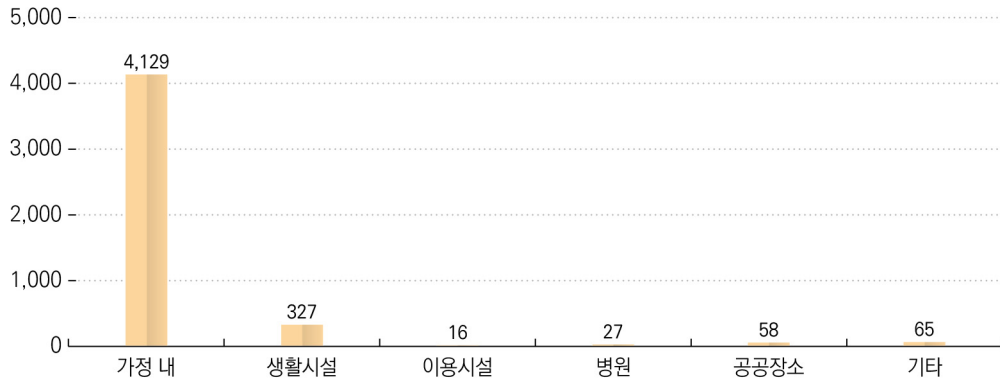
노인학대의 유형을 학대발생 공간에 따라 분류하면 가정 내, 생활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정 내 학대는 학대피해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한 학대를 말한다. 생활시설 학대는 양로시설 및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를 말하고 이용시설 학대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및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및 기타 재가서비스 등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를 말한다.

2017년 접수된 노인학대사례의 학대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가 4,129건으로 총 학대건수 4,622건 중 8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생활 시설의 경우 총 327건(7.1%)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이 35건(0.8%), 노인의료복지시설이 292건(6.3%)을 차지하였다. 이용시설의 경우 총 16건(0.3%)의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이 1건(0.0%), 재가노인복지시설이 15건(0.3%)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기타 장소가 65건(1.4%), 공공장소가 58건(1.3%), 병원이 27건(0.6%)으로 나타났다.

[표 4-43]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4,129	35	292	1	15	27	58	65	4,622
89.3	0.8	6.3	0.0	0.3	0.6	1.3	1.4	100



[그림 4-8]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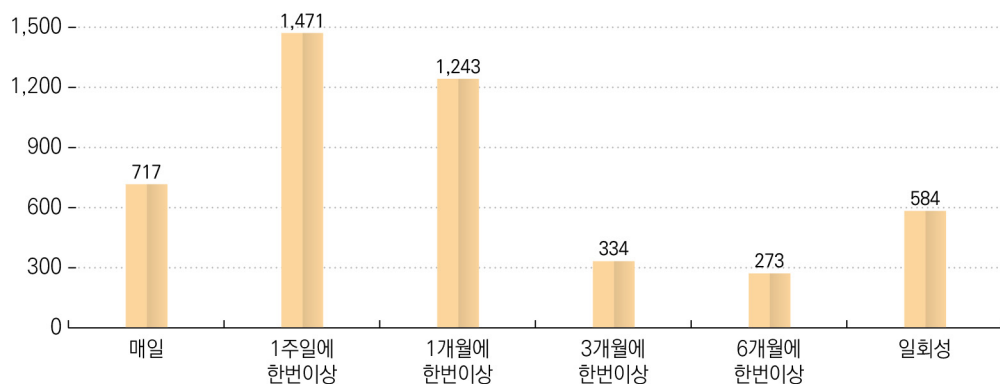
8) 학대발생빈도

전체 노인학대사례 중 학대발생빈도 현황을 살펴보면, 1주일에 한번 이상 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1,471건(31.8%)으로 가장 높았고, 1개월에 한번 이상 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1,243건(26.9%)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매일 학대를 당한다는 응답이 717건(15.5%), 일회성이 584건(12.6%), 3개월에 한번 이상이 334건(7.2%), 6개월에 한번 이상이 273건(5.9%)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노인학대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함을 의미한다.

[표 4-44]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빈도	건수	비율 (%)
매일	717	15.5
1주일에 한번 이상	1,471	31.8
1개월에 한번 이상	1,243	26.9
3개월에 한번 이상	334	7.2
6개월에 한번 이상	273	5.9
일회성	584	12.6
계	4,622	100



[그림 4-9] 학대발생빈도

학대발생빈도별 노인학대 유형은 학대가 발생하는 빈도를 기준으로 어떠한 노인학대 유형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학대가 매일 발생하는 경우 정서적 학대가 297건(27.7%)으로 가장 높았으며 방임유형이 260건(24.2%), 신체적 학대가 250건(23.3%)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각각 1개월에 한번 이상, 3개월에 한번 이상, 6개월에 한번 이상 학대빈도의 경우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 경제적 학대 순으로 학대가 발생하였다. 1주일에 한번 이상의 학대빈도에서는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 방임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반면, 일회성의 경우 신체적 - 정서적 - 방임 순으로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4-45] 발생빈도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매일	250	297	39	55	260	135	38	1,074
	23.3	27.7	3.6	5.1	24.2	12.6	3.5	100
1주일에 한번 이상	883	1,096	73	137	164	85	9	2,447
	36.1	44.8	3.0	5.6	6.7	3.5	0.4	100
1개월에 한번 이상	774	966	21	121	114	45	9	2,050
	37.8	47.1	1.0	5.9	5.6	2.2	0.4	100
3개월에 한번 이상	217	257	4	35	21	4	-	538
	40.3	47.8	0.7	6.5	3.9	0.7	-	100
6개월에 한번 이상	176	188	3	25	18	9	1	420
	41.9	44.8	0.7	6.0	4.3	2.1	0.2	100
일회성	351	260	10	38	72	13	14	758
	46.3	34.3	1.3	5.0	9.5	1.7	1.8	100
계	2,651	3,064	150	411	649	291	71	7,287
	36.4	42.0	2.1	5.6	8.9	4.0	1.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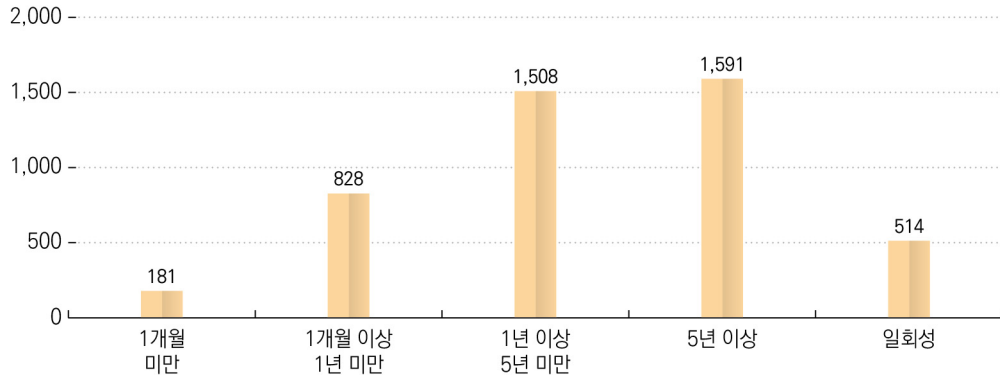
9) 학대지속기간

학대지속기간은 최초 학대가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지속기간을 의미하며 <표 4-46>과 같이 분류된다. 전체 학대사례 중 5년 이상이 1,591건(34.4%)이 가장 높았고, 1년 이상 5년 미만이 1,508건(32.6%)로 그 뒤를 이었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828건(17.9%), 일회성은 514건(11.1%), 1개월 미만은 181건(3.9%)으로 나타났다. 학대지속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전체 67.0%으로 매우 높은 비율의 학대피해노인이 장기간 학대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개월 미만 및 일회성은 전체의 1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6]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일회성	계
181	828	1,508	1,591	514	4,622
3.9	17.9	32.6	34.4	11.1	100



[그림 4-10] 학대지속기간 비율

10)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학대발생원인은 크게 학대행위자 원인과 가족 - 환경 원인, 피해자 원인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학대행위자 원인이란 노인학대 발생원인 중 학대행위자 측면에서의 발생원인을 의미한다. 학대행위자 원인으로는 개인의 내·외적 문제, 경제적 의존성, 과거 학대 받은 경험, 신체적 의존성,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정신적 의존성, 피해자 부양부담 등이 해당된다.

각각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내적인 문제는 성격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노, 고집스런 성격,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사회적 반응의 결핍, 적대적 행위, 충동적 성격, 폭력적 성격, 사회적 고립, 정서적 욕구불만 등이 포함된다. 개인의 외적 문제는 학대 행위자의 이혼, 재혼, 부부갈등, 스트레스(부양부담 스트레스 외) 실직 등이 해당된다. 경제적 의존성으로는 학대행위자가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소득이 낮아 학대피해노인에게 금전적인 부분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학대받은 경험은 과거 학대행위자가 아동이었을 때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것을 의미하며, 신체적 의존성은 학대행위자의 신체적 질환, 장애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학대피해노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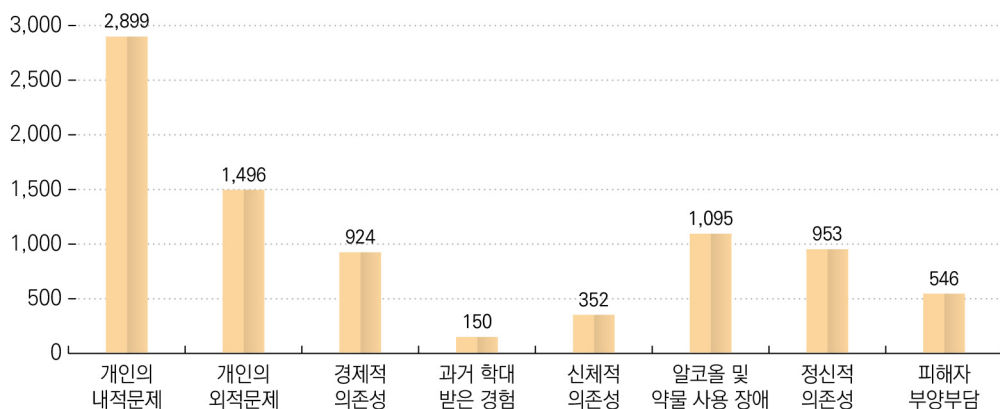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는 알코올 및 약물의 중독이나 의존을 의미하며 정신적 의존성은 학대행위자의 정신적 문제로 인해 학대피해노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정신질환 및 우울증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학대피해노인 부양부담은 학대피해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감 및 책임감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경제적인 부담감을 의미한다.

학대행위자 원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8,415건 중 개인의 내적문제가 2,899건(34.5%), 개인의 외적문제가 1,496건(17.8%) 순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 개인의 내적·외적 특성으로 인한 원인이 52.3%로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가 1,095건(13.0%), 정신적 의존성 953건(11.3%), 경제적 의존성 924건(11.0%) 등으로 나타났다.

[표 4-47] 학대행위자 원인

(단위: 건, %)

학대행위자 원인	건 수	비 율
개인의 내적문제	2,899	34.5
개인의 외적문제	1,496	17.8
경제적 의존성	924	11.0
과거 학대 받은 경험	150	1.8
신체적 의존성	352	4.2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1,095	13.0
정신적 의존성	953	11.3
피해자 부양부담	546	6.5
계	8,415	100



[그림 4-11] 학대행위자 원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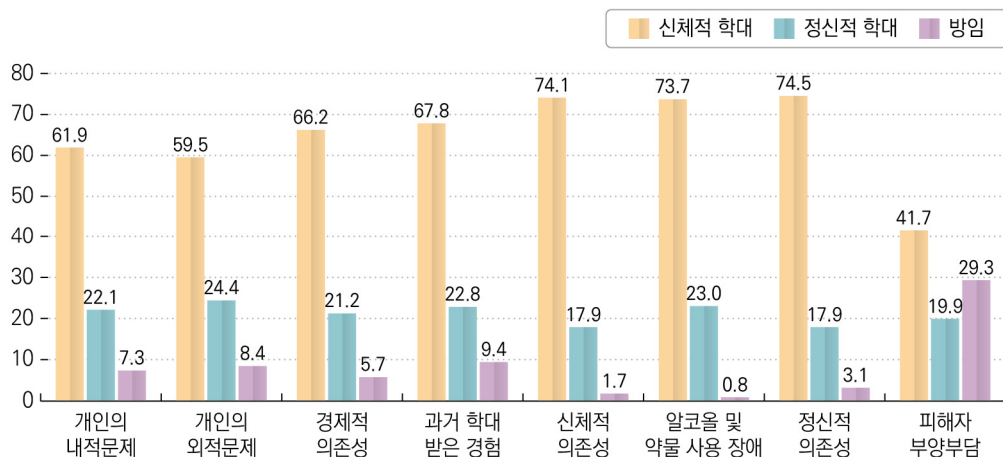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모든 원인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 유형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방임의 발생 원인은 피해자 부양부담이 29.3%로 나타나 다른 학대발생원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4-48]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학대발생원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방임	유 기	계
개인의 내적문제	1,769	632	54	60	210	120	13	2,858
	61.9	22.1	1.9	2.1	7.3	4.2	0.5	100
개인의 외적문제	872	357	9	41	123	59	5	1,466
	59.5	24.4	0.6	2.8	8.4	4.0	0.3	100
경제적 의존성	605	194	-	44	52	15	4	914
	66.2	21.2	-	4.8	5.7	1.6	0.4	100
과거 학대 받은 경험	101	34	-	-	14	-	-	149
	67.8	22.8	-	-	9.4	-	-	100
신체적 의존성	260	63	1	4	6	17	-	351
	74.1	17.9	0.3	1.1	1.7	4.8	-	100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장애	801	250	1	5	9	21	-	1,087
	73.7	23.0	0.1	0.5	0.8	1.9	-	100
정신적 의존성	706	170	1	8	29	34	-	948
	74.5	17.9	0.1	0.8	3.1	3.6	-	100
피해자 부양부담	225	107	2	18	158	5	24	539
	41.7	19.9	0.4	3.3	29.3	0.9	4.5	100
계	5,339	1,807	68	180	601	271	46	8,312
	64.2	21.7	0.8	2.2	7.2	3.3	0.6	100



[그림 4-12]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주요유형

11) 학대발생원인(가족 - 환경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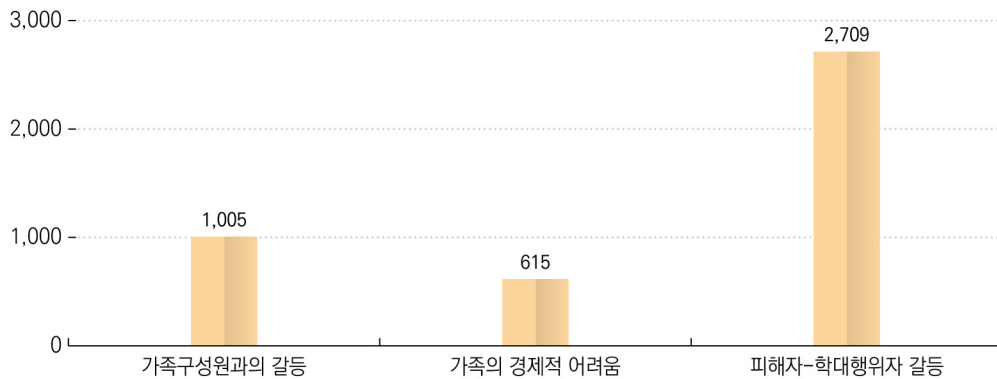
가족 - 환경적 측면에서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학대피해노인 - 학대행위자 갈등,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자녀 간, 형제 간, 친족 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해당된다. 학대 피해노인 - 학대행위자 갈등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의미하며,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은 부모 부양문제, 재산문제 등으로 학대피해노인 자녀 간, 형제 간, 친족 간의 갈등 등 여러 사람 간 갈등을 의미한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학대피해노인의 부양문제로 인한 부양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한다.

가족 - 환경 원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학대발생 4,329건 중 피해자 - 학대행위자 갈등이 2,709건(62.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이 1,005건(23.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가족 내 갈등이 학대발생의 주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615건(14.2%)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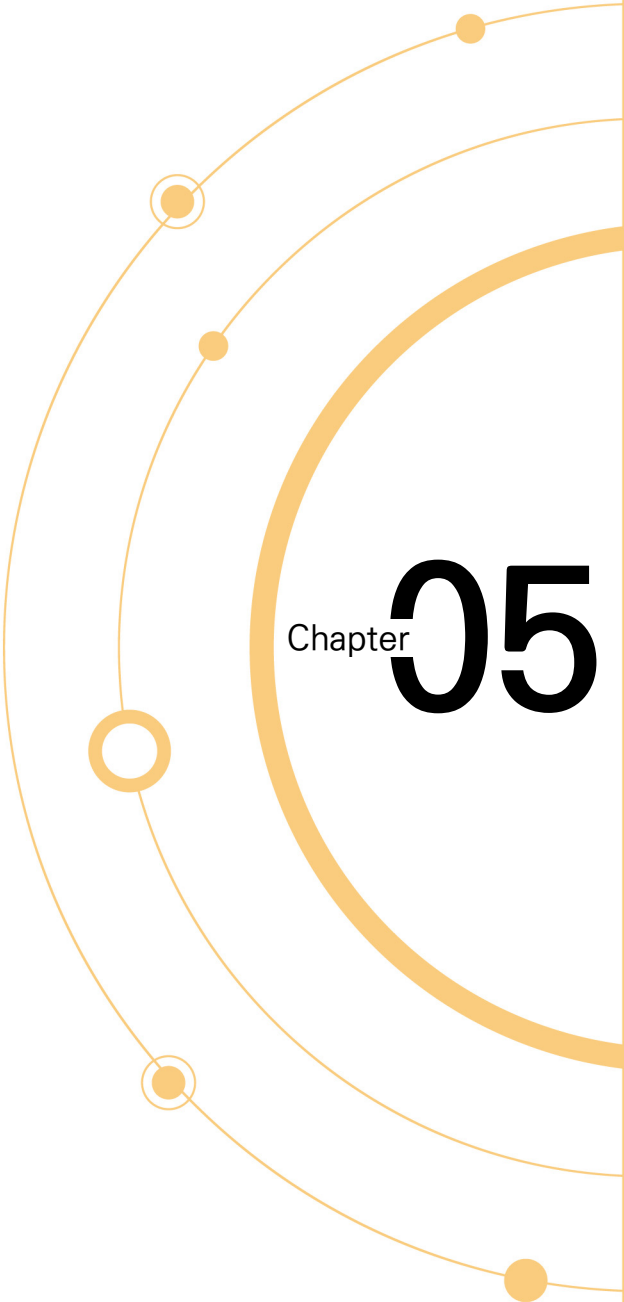
[표 4-49] 가족 - 환경 원인

(단위: 건, %)

가족구성원과의 갈등 (자녀간, 형제간, 친족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피해자-학대행위자 갈등	계
1,005	615	2,709	4,329
23.2	14.2	62.6	100



[그림 4-13] 가족 - 환경 원인



Chapter 05

특성별 노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2. 재학대
3. 노인단독가구 현황
4. 시설학대 현황
5. 노(老) - 노(老)학대 현황
6. 치매노인 학대현황

제5장 특성별 노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



노인학대사례를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재학대, 노인단독가구 현황, 시설학대 현황과 노(老) - 노(老)학대 현황, 치매노인 학대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대상의 특성에 따라 학대피해 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특성과 학대양상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경우 2016년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근거한 신고의무자 직군이 기존의 8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으로 확대되면서 신고의무자의 노인학대 사례발굴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전체 신고건수의 약 20%에 지나지 않아²¹⁾ 더욱 활발한 신고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의 신고사례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분석하여 보다 활발하게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재학대의 경우 2017년 기준 전체 사례의 약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 사례 중 매우 낮은 비율이나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가정 내에서 매우 잦은 빈도로 학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5년간 재학대 사례의 학대발생장소는 80% 이상이 가정 내 학대로 나타났고, 실제로 재학대 피해노인의 75% 이상(2017년도 기준)이 학대행위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재학대 발생 위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대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 학대 발생빈도 또한 신규사례에 비해 현저히 잦아진다. 매일~1주일에 한번 이상과 같이 잦은 빈도로 발생하는 학대의 경우 신규사례에 비해 재학대 사례가 약 7.8%p나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2017년 기준)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재학대 사례로 접수된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신규 사례에 비해 더 자주 학대에 노출 될 수 있고, 학대행위자와 분리된 안전한 처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가진 집단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노인단독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노인단독가구(독거노인가구)는 다른 가구 유형 보다 가구 내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매우 적고,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거나 다양한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고립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21) '13년 16.7% → '14년 20.1% → '15년 18.5% → '16년 17.5% → '17년 13.7%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고독, 생활만족도 저하, 신체·정신건강 및 인지기능의 저하, 자살 위험성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²²⁾. 학대피해노인의 가구 유형 중에서도 쉽게 사회적 자원의 부족, 사회적 고립, 건강의 악화를 경험 할 수 있는 노인단독가구의 특성 및 학대 양상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네 번째 대상 집단은 시설학대피해노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년도와 다르게 이용시설 학대사례를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시설학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건수는 생활시설 학대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갈수록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이나 이용시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설학대를 더욱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는 이용자의 의존성이 높아 일상생활에서 전인적인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학대의 시급성을 두고 주목해왔다. 그러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이용 욕구가 있는 65세 이상 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시설에 비해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오히려 노인학대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모두 포함한 시설학대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섯 번째 분석 대상은 노(老) - 노(老)학대 사례이다. 지난 2017년 8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또한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급속한 인구 노령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현상과 더불어 학대행위자의 연령도 점차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학대행위자의 연령대가 증가하는 것은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른 가족과의 동거기간 연장, 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부양 스트레스 등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노(老) - 노(老)학대를 단순히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학대행위자와 학대 피해노인 모두의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문제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치매노인 학대사례를 심층 분석 하였다. 2017년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²³⁾에 따르면, 2016년 기준 69만 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 명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014년 이후부터는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학대피해노인의 비율이 노인학대 건수의 24.3%를 차지하면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사례 분석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중점 과제가 되었다. 이에 치매가 있는 학대피해

22) Waite, Linda & Mary Hugfies(1999), 이신숙·김성희(2011), 이묘숙.(2012)

23)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1대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부터 치료지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9. 18.

노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대의 특성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1) 학대신고건수에 따른 신고의무자 유형

먼저 2017년 신고 된 전체 신고건수 13,309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1,197건으로 전체의 약 9%를 차지하였다. 신고의무자의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510건(3.8%)으로 가장 높은 신고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이 375건(2.8%), 가정폭력관련종사자가 131건(1.0%)으로 뒤를 이었다.

[표 5-1] 학대신고건수에 따른 신고의무자 유형

(단위: 건, %)

유형	세부유형	건	비율
신고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8	0.3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19	0.1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375	2.8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관련종사자	9	0.1
	가정폭력관련종사자	131	1.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10	3.8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36	0.3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58	0.4
	구급대의 대원	7	0.1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3	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10	0.1
	응급구조사	1	0.0
	의료기사	-	-
	소계	1,197	9.0
비신고의무자		12,112	91.0
계		13,309	100

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정 결과

다음은 학대사례로 판정된 4,622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 635건에 대한 사례판정 유형을 살펴보았다. 전체 635건 중 비응급 사례가 399건(62.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잠재적 사례가 189건(29.8%), 응급 사례가 47건(0.6%)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세부유형에 따라서는 응급 사례의 경우 가정폭력관련종사자가 18건(2.8%),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4건(2.2%),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은 6건(0.9%)의 순이었다. 반면 비응급 사례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가 184건(29.0%)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이 93건(14.6%), 가정폭력관련종사자가 68건(10.7%)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사례는 비응급 사례와 동일하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5건(13.4%),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54건(8.5%), 가정폭력관련종사자 19건(3.0%)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례의 응급성에 따라 신고의무자 유형 또한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표 5-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신고의무자 유형	응급		비응급		잠재적		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4	0.6	13	2.0	3	0.5	20	3.1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1	0.2	3	0.5	5	0.8	9	1.4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6	0.9	93	14.6	54	8.5	153	24.1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관련종사자	-	-	1	0.2	1	0.2	2	0.4
가정폭력관련종사자	18	2.8	68	10.7	19	3.0	105	16.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4	2.2	184	29.0	85	13.4	283	44.6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2	0.3	7	1.1	9	1.4	18	2.8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	0.3	22	3.5	10	1.6	34	5.4
구급대의 대원	-	-	2	0.3	3	0.5	5	0.8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2	0.3	-	-	2	0.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	-	4	0.6	-	-	4	0.6
응급구조사	-	-	-	-	-	-	-	-
의료기사	-	-	-	-	-	-	-	-
계	47	7.4	399	62.8	189	29.8	635	100

3)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표 5-3〉은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에 대해 알아본 것이다. 신고의무자에 의해 가장 많이 신고 된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309건(32.4%)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 265건(27.8%), 방임 161건(16.9%)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의무자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401건(42.0%)으로 신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이 215건(22.5%), 가정폭력관련종사자가 194건(2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대유형 마다 신고의무자 세부유형은 조금씩 차이점을 보였는데,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관련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상담원의 순으로 신고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방임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순이었다. 자기방임의 경우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관련 종사자의 순으로 신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3]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신고의무자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4	13	-	2	4	-	1	34
	1.5	1.4	-	0.2	0.4	-	0.1	3.6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5	5	-	4	3	-	-	17
	0.5	0.5	-	0.4	0.3	-	-	1.8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56	69	4	24	34	19	9	215
	5.9	7.2	0.4	2.5	3.6	2.0	0.9	22.5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1	1	-	-	1	-	-	3
	0.1	0.1	-	-	0.1	-	-	0.3
가정폭력관련종사자	82	90	7	8	5	2	-	194
	8.6	9.4	0.7	0.8	0.5	0.2	-	20.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4	96	3	36	99	75	8	401
	8.8	10.1	0.3	3.8	10.4	7.9	0.8	42.0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3	9	-	2	4	4	-	22
	0.3	0.9	-	0.2	0.4	0.4	-	2.3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6	18	-	5	10	2	-	51
	1.7	1.9	-	0.5	1.0	0.2	-	5.3

신고의무자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구급대의 대원	-	3	-	1	1	2	-	7
	-	0.3	-	0.1	0.1	0.2	-	0.7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2	2	-	-	-	-	-	4
	0.2	0.2	-	-	-	-	-	0.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	-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2	3	1	-	-	-	-	6
	0.2	0.3	0.1	-	-	-	-	0.6
응급구조사	-	-	-	-	-	-	-	-
	-	-	-	-	-	-	-	-
의료기사	-	-	-	-	-	-	-	-
	-	-	-	-	-	-	-	-
계	265	309	15	82	161	104	18	954
	27.8	32.4	1.6	8.6	16.9	10.9	1.9	100

* 중복

4)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학대발생장소

〈표 5-4〉에 따르면 신고의무자 신고건수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신고의무자 직군이 가정 내의 사례를 증점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의 경우 타 신고의무자 직군에 비하여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가정 내가 236건(83.4%), 생활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이 32건(11.3%), 노인주거복지시설이 6건(2.1%)의 순인 반면,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은 가정 내가 89건(58.2%), 생활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이 49건(32.0%), 기타가 6건(3.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 폭력관련종사자는 세 번째로 신고율이 높았으나 신고건수 105건 중 단 1건을 제외한 104건(99.0%)이 모두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또한 가정 내 17건(85.0%), 병원 3건(15.0%)의 비율을 보였다.

[표 5-4]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신고의무자 유형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 장소	기타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7	-	-	-	-	3	-	-	20
	85.0	-	-	-	-	15.0	-	-	100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7	-	-	-	-	-	2	-	9
	77.8	-	-	-	-	-	22.2	-	100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89	4	49	-	4	-	1	6	153
	58.2	2.6	32.0	-	2.6	-	0.7	3.9	100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2	-	-	-	-	-	-	-	2
	100.0	-	-	-	-	-	-	-	100
가정폭력관련종사자	104	-	-	-	-	-	1	-	105
	99.0	-	-	-	-	-	1.0	-	1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36	6	32	1	3	-	2	3	283
	83.4	2.1	11.3	0.4	1.1	-	0.7	1.1	100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17	-	-	-	-	-	-	1	18
	94.4	-	-	-	-	-	-	5.6	100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1	-	2	-	1	-	-	-	34
	91.2	-	5.9	-	2.9	-	-	-	100
구급대의 대원	5	-	-	-	-	-	-	-	5
	100.0	-	-	-	-	-	-	-	100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2	-	-	-	-	-	-	-	2
	100.0	-	-	-	-	-	-	-	1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	-	-	-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4	-	-	-	-	-	-	-	4
	100.0	-	-	-	-	-	-	-	100
응급구조사	-	-	-	-	-	-	-	-	-
	-	-	-	-	-	-	-	-	-
의료기사	-	-	-	-	-	-	-	-	-
	-	-	-	-	-	-	-	-	-
계	514	10	83	1	8	3	6	10	635
	80.9	1.6	13.1	0.2	1.3	0.5	0.9	1.6	100

5)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발생빈도

다음은 신고 여부에 따른 학대발생빈도를 살펴보았다.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매일 혹은 1주일에 한번 이상 잦은 빈도로 발생하는 학대사례의 경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보다 약 13%p 높게 나타나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일회성이거나 학대발생빈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보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약 13%p 높게 나타나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5-5]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신고자 유형	매일	1주일에 한번이상	1개월에 한번이상	3개월에 한번이상	6개월에 한번이상	일회성	계
신고의무자	167	205	133	29	29	72	635
	26.3	32.3	20.9	4.6	4.6	11.3	100
비신고의무자	550	1,266	1,110	305	244	512	3,987
	13.8	31.8	27.8	7.6	6.1	12.8	100
계	717	1,471	1,243	334	273	584	4,622
	15.5	31.8	26.9	7.2	5.9	12.6	100

6)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지속기간

〈표 5-6〉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사례 모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등 장기간 지속된 학대의 경우 신고의무자보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약 3%p 높게 나타났으며,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비교적 단기간 발생한 학대의 경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비신고의무자보다 약 6%p나 학대발견 비율이 높았다.

[표 5-6]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신고자 유형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일회성	계
신고의무자	28	144	204	206	53	635
	4.4	22.7	32.1	32.4	8.3	100
비신고의무자	153	684	1,304	1,385	461	3,987
	3.8	17.2	32.7	34.7	11.6	100
계	181	828	1,508	1,591	514	4,622
	3.9	17.9	32.6	34.4	11.1	100

7)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종결사유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학대사례 종결사유를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사례 모두 부양강화, 지지자원 강화, 학대행위자의 태도 변화 등 상황개선으로 인한 종결사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신고 사례 중 학대피해노인을 분리보호 한 경우가 비신고의무자에 비해 7.8%p 높았으며, 반면 비신고의무자는 학대행위자를 분리보호한 경우가 신고의무자의 신고 사례에 비해 약 5.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의 개입거부로 인한 종결사유는 신고의무 여부에 따라 7.1%p 차이를 보였다.

[표 5-7]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종결사유

(단위: 건, %)

신고자 유형	학대 피해노인 사망	학대 행위자 사망	학대 피해노인 분리보호	학대 행위자 분리보호	상황개선	서비스 제한	개입거부	의뢰	계
신고의무자	25	-	147	41	299	38	31	13	594
	4.2	-	24.7	6.9	50.3	6.4	5.2	2.2	100
비신고의무자	76	17	626	464	1,731	276	455	69	3,714
	2.0	0.5	16.9	12.5	46.6	7.4	12.3	1.9	100
계	101	17	773	505	2,030	314	486	82	4,308
	2.3	0.4	17.9	11.7	47.1	7.3	11.3	1.9	100.0

2 재학대

1)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접수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 된 사례를 의미한다. 재학대 사례에는 2017년 처음으로 노인학대가 발생하여 신고 접수 된 사례와 2017년 이전에 신고 된 적이 있는 사례가 2017년에 다시 신고 된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재학대 건수는 359건으로 전체 학대사례 4,622건 중 7.8%에 해당되며 전국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별로 재학대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재학대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0.8%를 차지한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기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 전라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었으며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재학대율이 높은 기관은 부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0.6%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0.5%로 세 번째를 차지하였다.

반면 재학대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0.0%)으로 나타났으며, 신고건수 기준 시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각 1건으로 가장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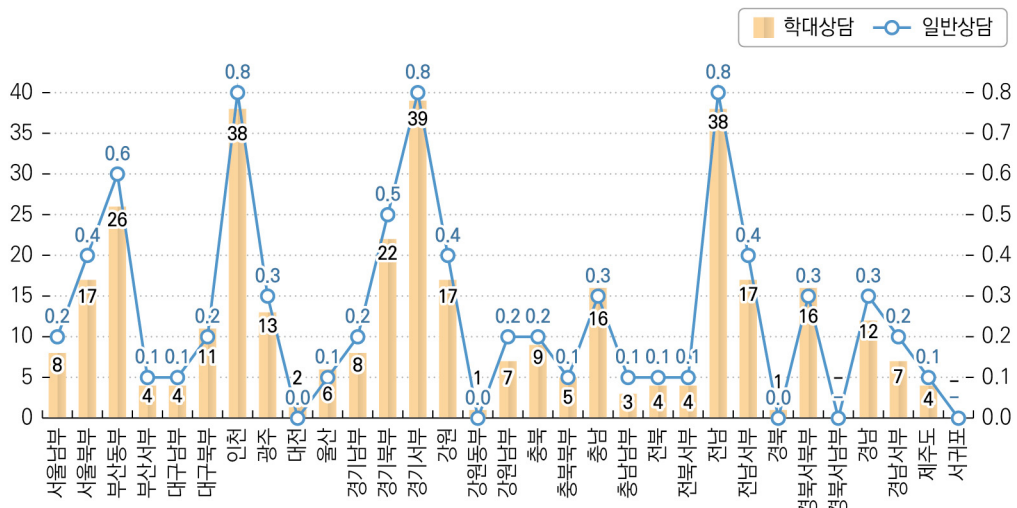
[표 5-8]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접수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재학대		전체 학대사례 건수
		건수	비율	
서울	서울남부	8	0.2	224
	서울북부	17	0.4	216
	소계	25	0.5	440
부산	부산동부	26	0.6	194
	부산서부	4	0.1	179
	소계	30	0.6	373
대구	대구남부	4	0.1	110
	대구북부	11	0.2	97
	소계	15	0.3	207
	인천	38	0.8	444
	광주	13	0.3	240
	대전	2	0.0	119
	울산	6	0.1	104
경기	경기남부	8	0.2	225
	경기북부	22	0.5	269
	경기서부	39	0.8	260
	소계	69	1.5	754
강원	강원	17	0.4	148
	강원동부	1	0.0	70
	강원남부	7	0.2	71
	소계	25	0.5	289
충북	충북	9	0.2	111
	충북북부	5	0.1	54
	소계	14	0.3	165



지 역	기관명	재학대		전체 학대사례 건수
		건 수	비 율	
충남	충남	16	0.3	165
	충남남부	3	0.1	70
	소계	19	0.4	235
전북	전북	4	0.1	142
	전북서부	4	0.1	94
	소계	8	0.2	236
전남	전남	38	0.8	152
	전남서부	17	0.4	174
	소계	55	1.2	326
경북	경북	1	0.0	112
	경북서북부	16	0.3	144
	경북서남부	-	-	63
	소계	17	0.4	319
경남	경남	12	0.3	211
	경남서부	7	0.2	62
	소계	19	0.4	27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4	0.1	80
	제주도서귀포시	-	-	18
	소계	4	0.1	98
계		359	7.8	4,622



[그림 5-1] 기관별 재학대 접수 건수 및 비율

2) 재학대 신고자유형

재학대 사례와 신규사례의 신고자 유형을 비교하여 보면 신규사례의 경우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13.9%였으며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11.2%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타 신고의무자 직군에 비하여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 모두 신고비율이 가장 높았다.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의 비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을 살펴보면 신규사례의 경우 86.0%였으며, 재학대 사례의 경우 88.9%로 비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신규사례보다 높았다. 특히 비신고의무자 중 학대피해노인 본인의 신고비율이 신규사례(9.0%) 보다 재학대 사례(13.1%)에서 높았으며, 관련기관 신규사례 신고비율(63.7%)에 비해 재학대 사례 신고비율(65.5%)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규사례 보다 학대피해노인 본인 또는 관련 기관에서 노인학대를 인지하여 신고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5-9] 신규 - 재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구 분		신 규		재학대 신고	
신고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9	0.4	1	0.3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8	0.2	1	0.3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146	3.4	7	1.9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관련종사자	1	0.0	1	0.3
	가정폭력관련종사자	96	2.3	9	2.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68	6.3	15	4.2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16	0.4	2	0.6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1	0.7	3	0.8
	구급대의 대원	5	0.1	-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1	0.0	1	0.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4	0.1	-	-
	응급구조사	-	-	-	-
	의료기사	-	-	-	-
	소계	595	13.9	40	11.2

24)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구 분		신 규		재학대 신고	
비신고의무자	학대피해노인본인	384	9.0	47	13.1
	학대행위자본인	5	0.1	1	0.3
	친족	377	8.8	30	8.4
	타인	180	4.2	6	1.7
	관련기관 ²⁴⁾	2,714	63.7	235	65.5
	익명	8	0.2	-	-
	소계	3,668	86.0	319	88.9
계		4,263	100	359	100

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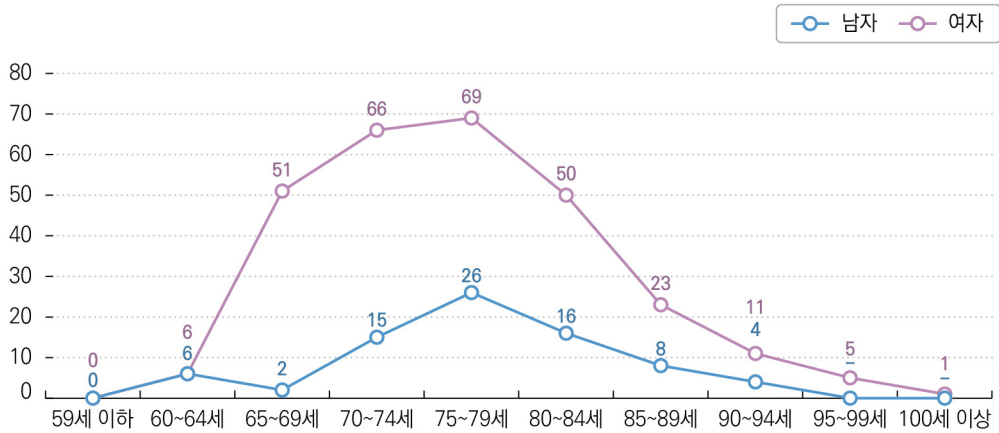
재학대 사례의 학대피해노인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노인이 77명(21.4%), 여성노인이 282명(78.6%)으로 여성노인의 재학대 사례가 남성노인에 비해 매우 높았다.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비율(남성노인 25.1%, 여성노인 74.9%)과 비교했을 때도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재학대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재학대 피해노인 중 70대가 176명(49.1%), 80대가 97명(27.0%), 90대 이상이 21명(5.9%)으로 7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에 따른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80대 이상의 고령의 경우 남성노인이 36.4%, 여성노인이 32.0%로 나타나 남성 재학대 피해노인의 고령 비율이 높았다.

[표 5-10] 재학대 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성별	59세 이하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	6	2	15	26	16	8	4	-	-	77
	-	7.8	2.6	19.5	33.8	20.8	10.4	5.2	-	-	100
여성	-	6	51	66	69	50	23	11	5	1	282
	-	2.1	18.1	23.4	24.5	17.7	8.2	3.9	1.8	0.4	100
계	-	12	53	81	95	66	31	15	5	1	359
	-	3.3	14.8	22.6	26.5	18.4	8.6	4.2	1.4	0.3	100



[그림 5-2] 재학대 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4) 재학대 사례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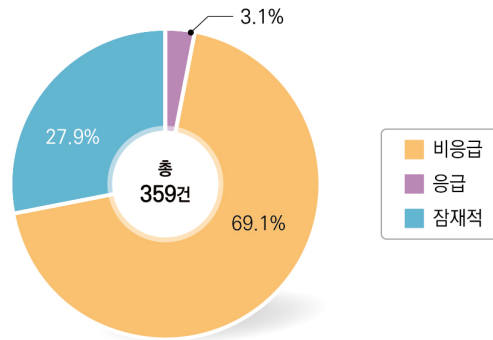
재학대에 대한 사례판정 유형을 보면 비응급 사례 248건(69.1%), 잠재적 사례 100건(27.9%), 응급 사례 11건(3.1%)으로 나타났다. 신규사례에 대한 사례판정 유형은 비응급 사례 2,555건(59.9%), 잠재적 사례 1,554건(36.5%), 응급 사례 154건(3.6%)의 순이었다.

재학대 사례와 신규사례의 사례판정 유형을 비교해보면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규사례에 비해 응급 학대 사례와 잠재적 학대 사례 비율은 낮았으나, 비응급 학대 사례의 비율은 재학대가 현저히 높았다.

[표 5-11] 신규 - 재학대 피해노인 사례판정

(단위: 건, %)

구분	응급	비응급	잠재적	계
신규	154	2,555	1,554	4,263
	3.6	59.9	36.5	100
재학대	11	248	100	359
	3.1	69.1	27.9	100
계	165	2,803	1,654	4,622
	3.6	60.6	35.8	100



[그림 5-3] 재학대 사례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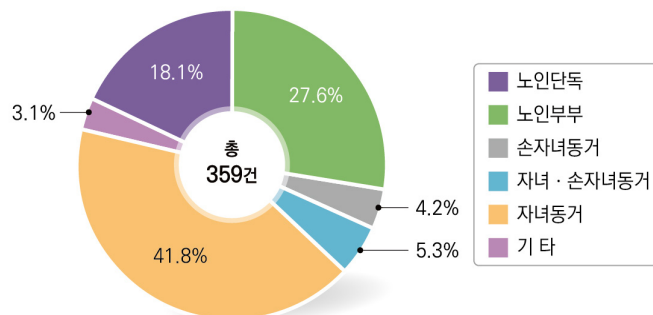
5) 재학대 피해노인 가구형태

재학대 사례의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를 보면 자녀동거가구가 150건(41.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부부가구 99건(27.6%), 노인단독가구 65건(1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례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의 가구형태는 자녀동거가구로 1,386건(32.5%)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인부부가구 1,117건(26.2%), 노인단독가구 942건(22.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를 비교해보면,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규 사례에 비해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신규 - 재학대 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손자녀 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자녀동거	기 타	계
신규	942	1,117	163	226	1,386	429	4,263
	22.1	26.2	3.8	5.3	32.5	10.1	100
재학대	65	99	15	19	150	11	359
	18.1	27.6	4.2	5.3	41.8	3.1	100



[그림 5-4] 재학대 피해노인 가구형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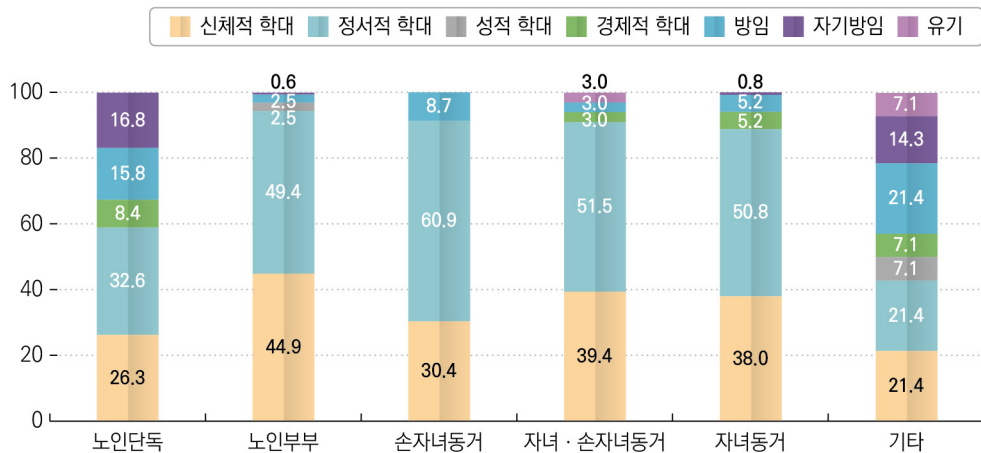
재학대 사례의 학대 유형 건수는 573건으로, 기타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손자녀동거가구가 타 가구형태 보다 경제적 학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달리, 2017년도에는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13] 재학대 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건수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노인단독	25	31	-	8	15	16	-	95
	26.3	32.6	-	8.4	15.8	16.8	-	100
노인부부	71	78	4	-	4	1	-	158
	44.9	49.4	2.5	-	2.5	0.6	-	100
손자녀동거	7	14	-	-	2	-	-	23
	30.4	60.9	-	-	8.7	-	-	100
자녀·손자녀 동거	13	17	-	1	1	-	1	33
	39.4	51.5	-	3.0	3.0	-	3.0	100
자녀동거	95	127	-	13	13	2	-	250
	38.0	50.8	-	5.2	5.2	0.8	-	100
기타	3	3	1	1	3	2	1	14
	21.4	21.4	7.1	7.1	21.4	14.3	7.1	100
계	214	270	5	23	38	21	2	573
	37.3	47.1	0.9	4.0	6.6	3.7	0.3	100

* 중복



[그림 5-5] 재학대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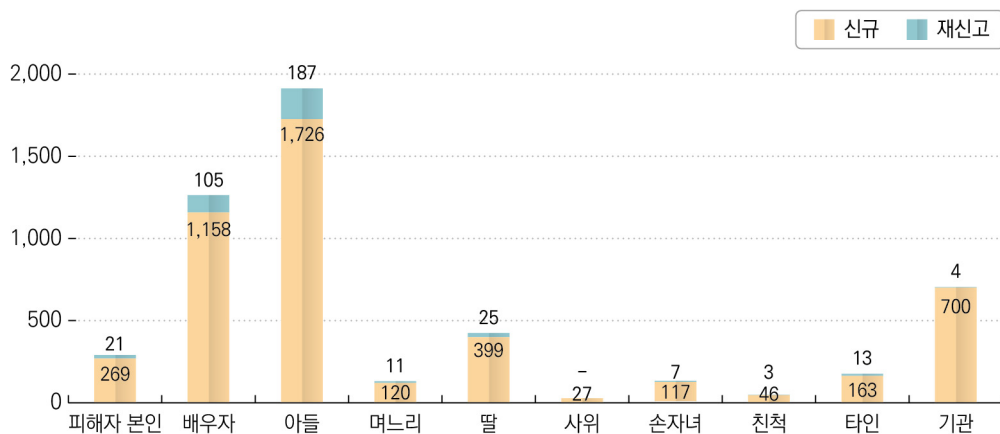
6) 재학대 행위자 유형

학대피해노인의 학대행위자 유형을 신규 사례와 재학대 사례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신규 사례의 경우 아들 - 배우자 - 기관 순으로 높았으며, 재학대 사례는 아들 - 배우자 - 딸 순으로 높았다. 특히 재학대 사례의 경우 기관의 비율이 신규 사례보다 13.7%p 차이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통해 학대발생원인을 제거하였거나 행정처분 등의 처벌로 인해 재학대로 신고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5-14] 신규 - 재학대 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신규	269	1,158	1,726	120	399	27	117	46	163	700	4,725
	5.7	24.5	36.5	2.5	8.4	0.6	2.5	1.0	3.4	14.8	100
재학대	21	105	187	11	25	-	7	3	13	4	376
	5.6	27.9	49.7	2.9	6.6	-	1.9	0.8	3.5	1.1	100
계	290	1,263	1,913	131	424	27	124	49	176	704	5,101
	5.7	24.8	37.5	2.6	8.3	0.5	2.4	1.0	3.5	13.8	100



[그림 5-6] 신규 - 재학대 행위자 유형

7) 재학대 피해노인 동거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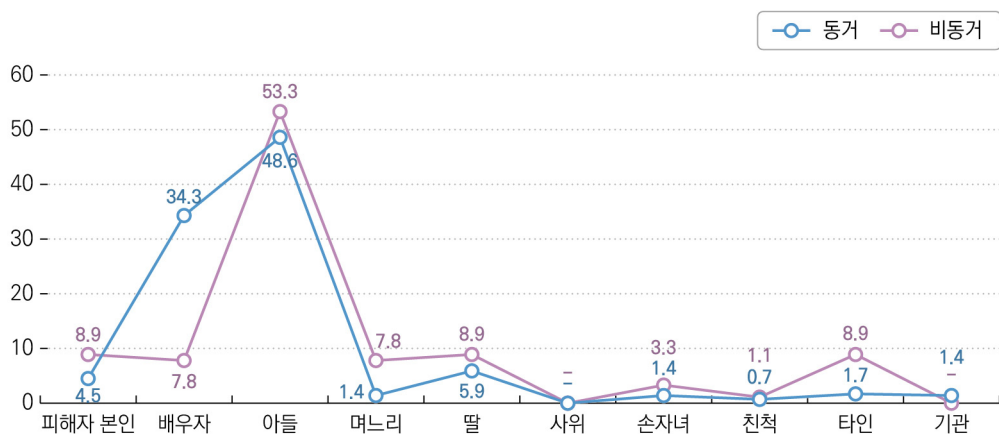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376명 중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비율은 76.1%(286명)이었으며, 동거하지 않는 비율은 23.9%(90명)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비율은 69.1%(3,194명)임을 미루어 볼 때, 재학대 사례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재학대 사례 중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 아들과 동거하는 비율이 48.6%(139명)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34.3%(98명)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전체 학대피해노인과 아들의 동거 비율(1,599명, 32.4%) 대비 재학대 사례에서 아들과의 동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15] 재학대 피해노인 동거여부(학대행위자수 기준)

(단위: 명,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동거	13	98	139	4	17	-	4	2	264	5	4	286
	4.5	34.3	48.6	1.4	5.9	-	1.4	0.7	92.3	1.7	1.4	100
비동거	8	7	48	7	8	-	3	1	74	8	-	90
	8.9	7.8	53.3	7.8	8.9	-	3.3	1.1	82.2	8.9	-	100
계	21	105	187	11	25	-	7	3	338	13	4	376
	5.6	27.9	49.7	2.9	6.6	-	1.9	0.8	89.9	3.5	1.1	100



[그림 5-7] 재학대 행위자 동거 여부



8) 재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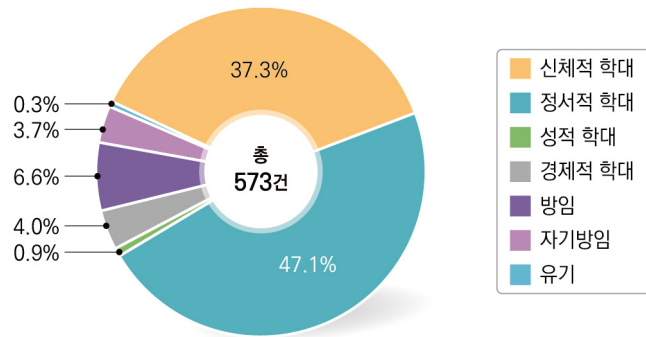
재학대 사례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573건 중 정서적 학대가 270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가 214건(37.3%), 방임이 38건(6.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 학대 건수의 경우 정서적 학대 비율이 42.0%(3,064건), 신체적 학대 비율이 36.4%(2,651건)라는 점에서 재학대 사례의 경우 비교적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6] 재학대 유형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방임	유 기	계
214	270	5	23	38	21	2	573
37.3	47.1	0.9	4.0	6.6	3.7	0.3	100

* 중복



[그림 5-8] 재학대 유형

9) 재학대 발생장소

재학대 사례 총 359건 중 가정 내 학대가 348건(96.9%)으로, 재학대로 신고 된 사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사례의 가정 내 학대 비율이 88.7%인 것에 비하여 재학대 사례의 가정 내 학대 비율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17]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구 분	가정내	공공장소	기타	병원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신규	3,781	55	62	27	323	15	4,263
	88.7	1.3	1.5	0.6	7.6	0.4	100
재학대	348	3	3	-	4	1	359
	96.9	0.8	0.8	-	1.1	0.3	100
계	4,129	58	65	27	327	16	4,622
	89.3	1.3	1.4	0.6	7.1	0.3	100

재학대의 발생장소별로 학대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재학대행위자 376명 중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아들이 185명(51.0%)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가 105건(28.9%)으로 나타나 두 번째로 높았다. 즉 가정 내 학대로 인한 재학대의 경우 주로 아들과 배우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8] 재학대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가정내	21	105	185	10	25	-	7	3	335	7	-	363
	5.8	28.9	51.0	2.8	6.9	-	1.9	0.8	92.3	1.9	-	100
생활 시설	-	-	-	-	-	-	-	-	-	-	4	4
	-	-	-	-	-	-	-	-	-	-	-	-
이용 시설	-	-	-	-	-	-	-	-	-	3	-	3
	-	-	-	-	-	-	-	-	-	100.0	-	100
병원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 장소	-	-	1	-	-	-	-	-	1	2	-	3
	-	-	33.3	-	-	-	-	-	33.3	66.7	-	100
기타	-	-	1	1	-	-	-	-	2	1	-	3
	-	-	33.3	33.3	-	-	-	-	66.7	33.3	-	100
계	21	105	187	11	25	-	7	3	338	13	4	376
	5.6	27.9	49.7	2.9	6.6	-	1.9	0.8	89.9	3.5	1.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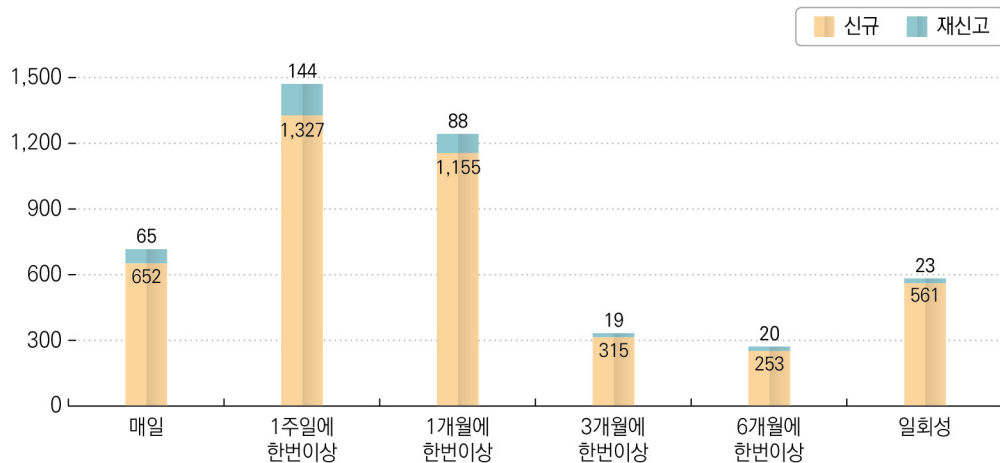
10)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발생빈도

재학대 사례의 학대발생빈도는 1주일에 한번 이상이 144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개월에 한번 이상이 88건(24.5%), 매일이 65건(18.1%)의 순으로 많았다. 이를 신규 사례와 비교해보면 일회성의 경우 신규사례에 비해 6.8%p 낮은 반면, 1주일에 한번 이상의 비율은 9.0%p, 매일의 비율은 2.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학대의 경우 매일 및 1주일 한번 이상 잦은 횟수로 발생하는 학대가 신규사례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9] 신규 - 재학대 사례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구분	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1개월에 한번 이상	3개월에 한번 이상	6개월에 한번 이상	일회성	계
신규	652	1,327	1,155	315	253	561	4,263
	15.3	31.1	27.1	7.4	5.9	13.2	100
재학대	65	144	88	19	20	23	359
	18.1	40.1	24.5	5.3	5.6	6.4	100
계	717	1,471	1,243	334	273	584	4,622
	15.5	31.8	26.9	7.2	5.9	12.6	100



[그림 5-9] 신규 - 재학대 신고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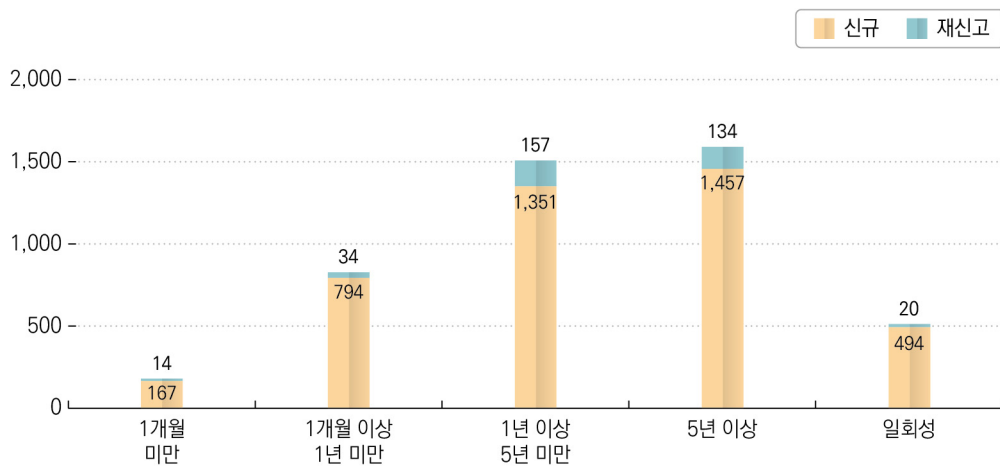
11)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지속기간

재학대로 신고 된 학대피해노인의 학대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5년 미만 및 5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학대가 지속된 비율은 신규사례가 65.9%, 재학대 사례가 81.0%로, 신규 사례보다 장기간 지속된 학대비율이 높았다.

[표 5-20] 신규 -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 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일회성	계
신규	167	794	1,351	1,457	494	4,263
	3.9	18.6	31.7	34.2	11.6	100
재학대	14	34	157	134	20	359
	3.9	9.5	43.7	37.3	5.6	100
계	181	828	1,508	1,591	514	4,622
	3.9	17.9	32.6	34.4	11.1	100



[그림 5-10] 신규 -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지속기간

12) 재학대 행위자의 성별 및 연령대

재학대의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를 살펴보면 총 376명 중 남성이 311명(82.7%), 여성이 65명(17.3%)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70세 이상이 2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밖에 40세~49세 미만, 50~59세 미만이 각각 25.3%, 23.9%로 나타났다. 즉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대다수 남성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학대행위자의 연령대는 40~50대인 중장년층이 49.2%로 과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표 5-21] 재학대 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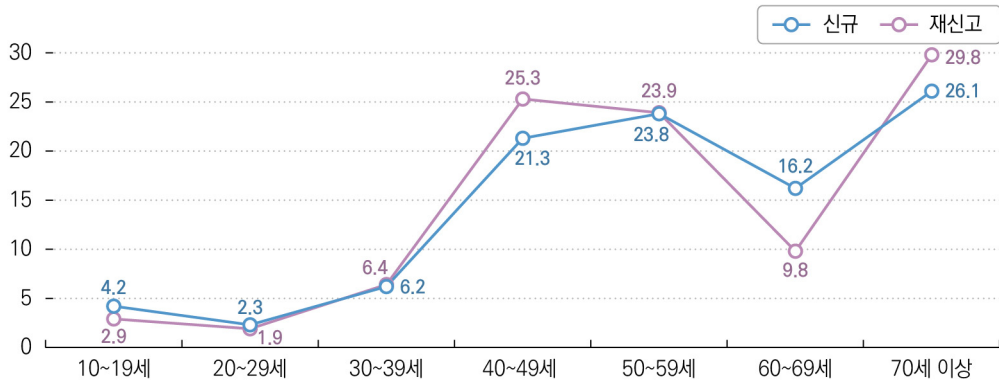
구 분	10~19세 미만	20~29세 미만	30~39세 미만	40~49세 미만	50~59세 미만	60~69세 미만	70세 이상	계
남성	11	7	18	72	82	28	93	311
	3.5	2.3	5.8	23.2	26.4	9.0	29.9	100
여성	-	-	6	23	8	9	19	65
	-	-	9.2	35.4	12.3	13.8	29.2	100
계	11	7	24	95	90	37	112	376
	2.9	1.9	6.4	25.3	23.9	9.8	29.8	100

신규사례와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연령대 중 주요 학대행위자 연령대인 40~50대의 비율을 보면 신규사례의 경우 45.1%, 재학대 사례의 경우 49.2%로 재학대 사례에서 40~50대 학대행위자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2] 신규 - 재학대 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10~19세 미만	20~29세 미만	30~39세 미만	40~49세 미만	50~59세 미만	60~69세 미만	70세이상	계
신규	198	108	291	1,006	1,124	765	1,233	4,725
	4.2	2.3	6.2	21.3	23.8	16.2	26.1	100
재학대	11	7	24	95	90	37	112	376
	2.9	1.9	6.4	25.3	23.9	9.8	29.8	100
계	209	115	315	1,101	1,214	802	1,345	5,101
	4.1	2.3	6.2	21.6	23.8	15.7	26.4	100



[그림 5-11] 신규 - 재학대 행위자 연령대 비율

재학대 행위자의 연령대가 높게 나타난 40~50대의 학대행위자 유형은 아들이 40~49세, 50~59세 연령대에서 각 연령대 전체 대비 76.8%, 82.2%로 나타났다. 재학대 사례의 40~50대 학대행위자 185명 중 아들이 79.5%에 해당하여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5-23] 연령별 재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10~19세	-	5	2	-	-	-	1	-	8	-	3	11
	-	45.5	18.2	-	-	-	9.1	-	72.7	-	27.3	100
20~29세	-	-	2	-	-	-	5	-	7	-	-	7
	-	-	28.6	-	-	-	71.4	-	100.0	-	-	100
30~39세	-	-	18	2	2	-	1	-	23	1	-	24
	-	-	75.0	8.3	8.3	-	4.2	-	95.8	4.2	-	100
40~49세	-	-	73	17	4	-	-	-	94	1	-	95
	-	-	76.8	17.9	4.2	-	-	-	98.9	1.1	-	100
50~59세	-	3	74	4	4	-	-	2	87	3	-	90
	-	3.3	82.2	4.4	4.4	-	-	2.2	96.7	3.3	-	100
60~69세	4	12	16	2	1	-	-	-	31	1	1	37
	10.8	32.4	43.2	5.4	2.7	-	-	-	83.8	2.7	2.7	100
70세이상	17	85	2	-	-	-	-	1	88	7	-	112
	15.2	75.9	1.8	-	-	-	-	0.9	78.6	6.3	-	100
계	21	105	187	25	11	-	7	3	338	13	4	376
	5.6	27.9	49.7	6.6	2.9	-	1.9	0.8	89.9	3.5	1.1	100

13) 재학대 행위자 중독 유형

재학대 행위자 376건 중 중독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례는 113건으로, 전체 재학대 사례의 30.1%를 차지하였다. 이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112건(29.8%), 약물 사용 장애가 1건(0.3%)으로 중독유형의 대부분은 알코올 사용 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4] 재학대 행위자 중독 유형

(단위: 건, %)

재학대 행위자	도박중독	알코올사용장애	약물사용장애	계
376	-	112	1	113
	-	29.8	0.3	30.1

14) 재학대 피해노인 치매정도

재학대 사례의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결과를 보면 총 376건의 재학대 사례 중 치매가 의심되는 치매의심이 25건(6.6%),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진단이 22건(5.9%)으로,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사례는 전체 재학대 사례의 47건(12.5%)으로 나타났다.

[표 5-25] 재학대 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건, %)

전체학대사례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계
376	25	22	47
	6.6	5.9	12.5

3 노인단독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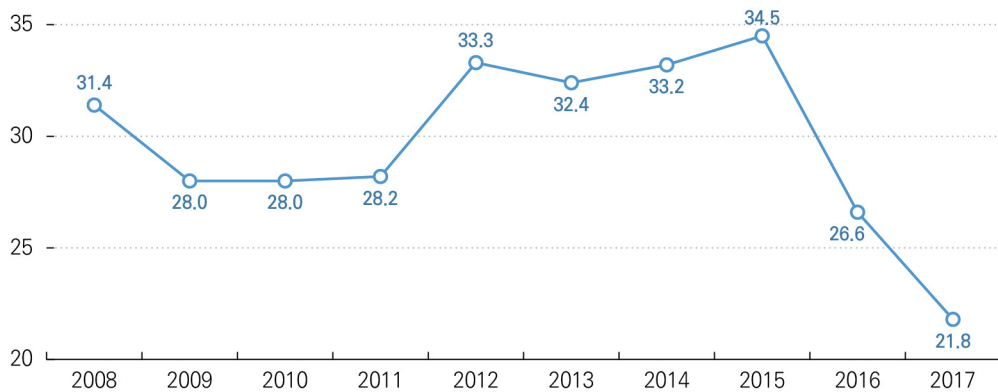
1) 연도별 노인단독가구 추이

2017년 노인단독가구는 전년 1,140건(26.6%) 대비 1,007건(21.8%)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지난해의 경우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가 자녀동거가구-노인단독가구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2017년에는 자녀동거가구(1,536건, 33.2%)가 가장 많았으며, 노인부부가 1,216건(36.3%), 노인단독가구가 1,007건(21.8%)로 세 번째를 차지하였다.

[표 5-26] 연도별 노인단독가구 추이

(단위: 건,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43	750	858	970	1,140	1,141	1,172	1,318	1,140	1,007
31.4	28.0	28.0	28.2	33.3	32.4	33.2	34.5	26.6	21.8



[그림 5-12] 연도별 노인단독가구 비율 추이

2) 지역별 노인단독가구 현황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의 지역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가구형태 유형을 살펴보았다. 노인단독가구 유형은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49.0%,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35.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7.6%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8.3%,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9.8%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7]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 현황

(단위: 건, %)

구 분	기관명	노인단독		전체사례 건수
		인 원	비 율	
서울	서울남부	39	17.4	224
	서울북부	18	8.3	216
	소계	57	13.0	440
부산	부산동부	38	19.6	194
	부산서부	27	15.1	179
	소계	65	17.4	373
대구	대구남부	21	19.1	110
	대구북부	14	14.4	97
	소계	35	16.9	207
	인천	61	13.7	444
	광주	71	29.6	240
	대전	9	7.6	119
	울산	51	49.0	104
경기	경기남부	22	9.8	225
	경기북부	81	30.1	269
	경기서부	38	14.6	260
	소계	141	18.7	754
강원	강원	36	24.3	148
	강원동부	20	28.6	70
	강원남부	17	23.9	71
	소계	73	25.3	289

구 분	기관명	노인단독		전체사례 건수
		인 원	비 율	
충북	충북	20	18.0	111
	충북북부	15	27.8	54
	소계	35	21.2	165
충남	충남	26	15.8	165
	충남남부	22	31.4	70
	소계	48	20.4	235
전북	전북	47	33.1	142
	전북서부	18	19.1	94
	소계	65	27.5	236
전남	전남	29	19.1	152
	전남서부	58	33.3	174
	소계	87	26.7	326
경북	경북	59	52.7	112
	경북서북부	33	22.9	144
	경북서남부	14	22.2	63
	소계	106	33.2	319
경남	경남	75	35.5	211
	경남서부	11	17.7	62
	소계	86	31.5	27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3	16.3	80
	제주도서귀포시	4	22.2	18
	소계	17	17.3	98
계		1,007	21.8	4,622

3) 노인단독가구 신고자 유형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의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자가 214건(21.3%), 비신고의무자가 793건(78.7%)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124건(12.3%)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이 48건(4.8%)으로 뒤를 이었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관련기관 519건(51.5%), 학대피해노인 본인 134건(13.3%)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사례의 결과와 같은 순위이지만, 그 비율은 노인단독가구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의 경우 전체사례 평균은 13.7%, 노인단독가구는 21.3%, 학대피해노인 본인의 신고율의 경우 전체사례는 10.8%, 노인단독가구는 13.3%로 노인단독가구에서 각각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관련기관의 경우 전체사례 신고율(59.9%)이 노인단독가구(51.5%)보다 더 높았다.

[표 5-28] 노인단독가구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신고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9	0.9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4	0.4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48	4.8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관련종사자	-	-
	가정폭력관련종사자	6	0.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24	12.3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11	1.1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9	0.9
	구급대의 대원	2	0.2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1	0.1
	응급구조사	-	-
	의료기사	-	-
	소계	214	21.3
비신고의무자	학대피해노인본인	134	13.3
	학대행위자본인	2	0.2
	친족	90	8.9
	타인	46	4.6
	관련기관 ²⁵⁾	519	51.5
	익명	2	0.2
	소계	793	78.7
계	1,007	100	

25)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4) 노인단독가구 성별 및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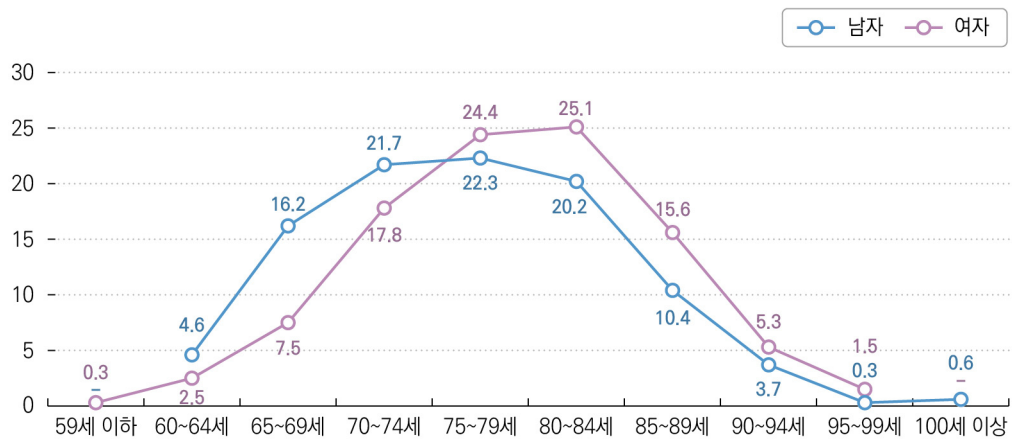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75~79세가 239명(23.7%)으로 가장 많았고, 80~84세 237명(23.5%), 70~74세 192명(19.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70대가 431명(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80대 377명(37.4%), 60대 이하 138명(13.7%), 90대 이상 61명(6.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기준 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노인단독가구 모두 70대(44.0%, 42.2%)와 80대(30.6%, 40.7%)의 순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표 5-29]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59세 이하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	15	53	71	73	66	34	12	1	2	327
	-	4.6	16.2	21.7	22.3	20.2	10.4	3.7	0.3	0.6	100
여성	2	17	51	121	166	171	106	36	10	-	680
	0.3	2.5	7.5	17.8	24.4	25.1	15.6	5.3	1.5	-	100
계	2	32	104	192	239	237	140	48	11	2	1,007
	0.2	3.2	10.3	19.1	23.7	23.5	13.9	4.8	1.1	0.2	100



[그림 5-13]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 성별에 따른 연령대 비율



5) 노인단독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표 5-30〉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단독가구 1,007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72명 (27.0%)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15.3%라는 점에서 노인단독가구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30] 노인단독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전체 노인단독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07	272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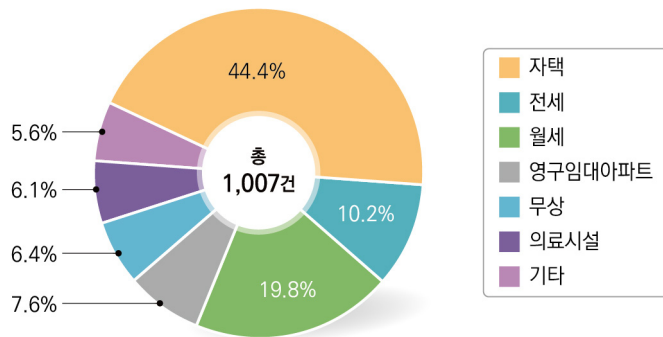
6) 노인단독가구 주거형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자택이 44.4%, 월세 19.8%, 전세 10.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체적으로 전체사례의 주거형태 순위와 유사하다.

[표 5-31] 노인단독가구 주거형태

(단위: 건, %)

자택	전세	월세	영구임대아파트	무상	의료시설	기타	계
447	103	199	77	64	61	56	1,007
44.4	10.2	19.8	7.6	6.4	6.1	5.6	100



[그림 5-14] 노인단독가구 주거형태 비율

7) 노인단독가구 주거환경 상태

주거환경상태는 학대피해노인의 위생 및 건강상태 등에 영향을 끼치며 생활수준 정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 상태를 살펴보면 보통이 522건(51.8%), 불량함이 183건(18.2%), 좋음이 171건(17.0%)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불량함과 매우 불량함이 전체의 28.5%를 차지하여 노인단독가구의 약 1/3 정도가 열악한 주거환경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 5-32] 노인단독가구 주거환경 상태

(단위: 건, %)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불량함	매우 불량함	계
27	171	522	183	104	1,007
2.7	17.0	51.8	18.2	10.3	100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형태에 따른 주거환경을 살펴보면, 불량함과 매우 불량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거형태가 무상(46.9%)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타 46.4%, 월세 40.7%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환경이 좋음과 매우 좋음으로 나타난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의료시설 55.8%로 가장 높았으며, 자택 23.9%, 기타 17.9% 비율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3] 노인단독가구 주거형태별 주거환경

(단위: 건, %)

구분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불량함	매우 불량함	계
자택	18	89	242	63	35	447
	4.0	19.9	54.1	14.1	7.8	100
전세	1	10	63	19	10	103
	1.0	9.7	61.2	18.4	9.7	100
월세	-	14	104	56	25	199
	-	7.0	52.3	28.1	12.6	100
영구임대 아파트	1	12	44	12	8	77
	1.3	15.6	57.1	15.6	10.4	100
의료시설	4	30	24	2	1	61
	6.6	49.2	39.3	3.3	1.6	100
무상	1	8	25	17	13	64
	1.6	12.5	39.1	26.6	20.3	100
기타	2	8	20	14	12	56
	3.6	14.3	35.7	25.0	21.4	100
계	27	171	522	183	104	1,007
	2.7	17.0	51.8	18.2	10.3	100

8) 노인단독가구 학대피해노인의 질병 유형

노인단독가구의 질병 유형은 총 1,025건으로 고혈압 211건(20.6%), 관절염 190건(18.5%), 기타 159건(15.5%), 당뇨병 134건(13.1%), 골다공증 59건(5.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장기간 약을 복용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 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5-34] 노인단독가구 학대피해노인 질병 유형

(단위: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악성신생물(암)	17	1.7
관절염	190	18.5
요통, 좌골통	17	1.7
디스크	45	4.4
신경통	50	4.9
골다공증	59	5.8
소화성궤양	9	0.9
만성간염, 간경변	2	0.2
당뇨병	134	13.1
갑상선 질환	4	0.4
고혈압	211	20.6
저혈압	7	0.7
중풍, 뇌혈관 질환	34	3.3
협심증, 심근경색증	17	1.7
폐결핵, 결핵	2	0.2
만성기관지염	2	0.2
천식	9	0.9
백내장	6	0.6
녹내장	4	0.4
만성중이염	1	0.1
만성신장질환	9	0.9
빈혈	13	1.3
피부병	8	0.8
골절, 후유증	16	1.6
기타	159	15.5
계	1,025	100

9) 노인단독가구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노인단독가구 학대피해노인 1,007건 중 치매가 의심되는 치매의심이 179명(17.8%)이며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진단의 경우 161건(16.0%)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로 진단 받은 노인단독가구의 학대피해노인 수는 총 340명으로 33.8%를 차지하였다.

[표 5-35] 노인단독가구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건, %)

노인단독가구	치매의심(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치매로 진단 받음)	계
1,007	179	161	340
	17.8	16.0	33.8

10)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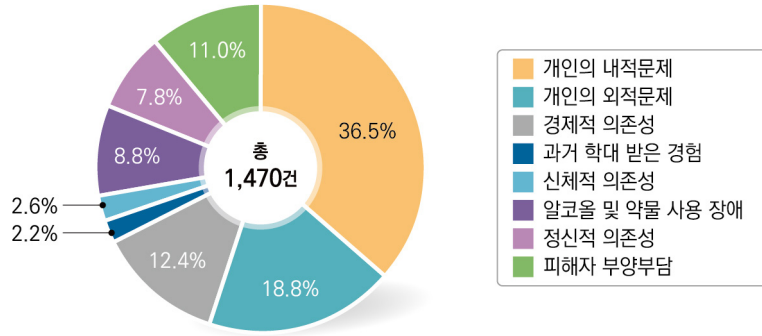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학대행위자 개인의 내적문제가 536건(36.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성격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노, 고집스런 성격,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사회적 반응의 결핍, 적대적 행위, 충동적 성격, 폭력적 성격, 사회적 고립, 정서적 욕구불만 등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학대행위자 개인의 외적문제가 276건(18.8%)으로 이는 학대행위자의 이혼, 재혼, 부부갈등, 실직, 스트레스(부양부담 스트레스 외) 등이 해당된다. 이 외에 경제적 의존성이 182건(12.4%), 피해자 부양부담이 161건(11.0%),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장애가 130건(8.8%)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6]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단위: 건, %)

학대행위자 원인	건 수	비율
개인의 내적문제	536	36.5
개인의 외적문제	276	18.8
경제적 의존성	182	12.4
과거 학대 받은 경험	32	2.2
신체적 의존성	38	2.6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130	8.8
정신적 의존성	115	7.8
피해자 부양부담	161	11.0
계	1,470	100

* 중복



[그림 5-15]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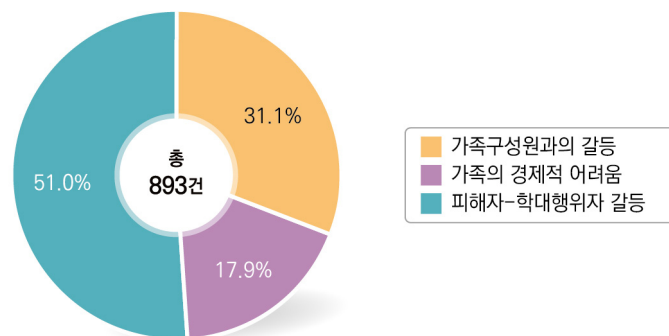
11)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가족 - 환경 원인)

노인단독가구의 학대발생원인을 분석해보면 피해자 - 학대행위자 갈등이 455건(51.0%),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자녀간, 형제간, 친족간)이 278건(31.1%),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160건(17.9%)으로 갈등관계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5-37]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가족 - 환경 원인)

(단위: 건, %)

가족구성원과의 갈등 (자녀간, 형제간, 친족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피해자-학대행위자 갈등	계
278	160	455	893
31.1	17.9	51.0	100



[그림 5-16]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가족 - 환경 원인)

12)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빈도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의 학대발생빈도를 보면 매일이 270건(26.8%)으로 가장 많았으며, 1주일에 한번 이상이 241건(23.9%)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1개월에 한번 이상이 227건(22.5%), 일회성 142건(14.1%), 3개월에 한번 이상 64건(6.4%), 6개월에 한번이상 63건(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단독가구 내 노인학대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5-38]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1개월에 한번 이상	3개월에 한번 이상	6개월에 한번 이상	일회성	계
270	241	227	64	63	142	1,007
26.8	23.9	22.5	6.4	6.3	14.1	100

13) 노인단독가구 학대지속기간

노인단독가구의 학대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이 341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이 276건(27.4%),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207건(20.6%)으로 나타났다. 노인단독가구의 1년 이상의 학대 지속기간은 총 617건(61.3%)으로 나타나 비교적 장기간 학대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표 5-39] 노인단독가구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일회성	계
54	207	341	276	129	1,007
5.4	20.6	33.9	27.4	12.8	100

14)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

노인단독가구의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을 살펴보면 매일 학대가 발생하며, 그 지속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106건(39.3%), 5년 이상이 93건(34.4%)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이상 학대피해가 지속된 노인단독가구의 10명 중 7명(73.7%)이 매일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40]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 분		학대지속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일회성	계
학 대 발 생 빈 도	매 일	12	59	106	93	-	270
		4.4	21.9	39.3	34.4	-	100
	1주일에 한번이상	21	55	98	65	2	241
		8.7	22.8	40.7	27.0	0.8	100
	1개월에 한번이상	7	62	80	76	2	227
		3.1	27.3	35.2	33.5	0.9	100
	3개월에 한번이상	1	14	25	22	2	64
		1.6	21.9	39.1	34.4	3.1	100
	6개월에 한번이상	6	11	27	18	1	63
		9.5	17.5	42.9	28.6	1.6	100
	일회성	7	6	5	2	122	142
		4.9	4.2	3.5	1.4	85.9	100
	계	54	207	341	276	129	1,007
		5.4	20.6	33.9	27.4	12.8	100

노인단독가구의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 416건(29.8%), 방임이 295건(21.1%), 신체적 학대가 265건(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정서적 학대의 학대발생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28.9%)에서 5년 이상(30.5%) 그룹이 가장 많았다. 즉 노인단독가구에서 정서적 학대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41]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기간별 학대 유형 건수

(단위: 건, %)

학대발생 기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1개월 미만	12	19	1	5	15	14	4	70
	17.1	27.1	1.4	7.1	21.4	20.0	5.7	100
1개월 이상 1년 미만	30	85	3	22	77	47	5	269
	11.2	31.6	1.1	8.2	28.6	17.5	1.9	100
1년 이상 5년 미만	75	135	2	45	102	94	14	467
	16.1	28.9	0.4	9.6	21.8	20.1	3.0	100

학대발생 기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5년 이상	89	130	5	45	77	71	9	426
	20.9	30.5	1.2	10.6	18.1	16.7	2.1	100
일회성	59	47	6	12	24	10	5	163
	36.2	28.8	3.7	7.4	14.7	6.1	3.1	100
계	265	416	17	129	295	236	37	1,395
	19.0	29.8	1.2	9.2	21.1	16.9	2.7	100

15) 노인단독가구 학대 유형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학대 유형은 정서적(42.0%) - 신체적(36.4%) - 방임(8.9%)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정서적(29.8%) - 방임(21.1%) - 신체적(19.0%) 순이었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방임의 비율이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학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5-42]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 학대 유형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265	416	17	129	295	236	37	1,395
19.0	29.8	1.2	9.2	21.1	16.9	2.7	100

16) 노인단독가구 학대행위자 유형

노인단독가구의 학대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아들(35.5%), 피해자 본인(21.3%), 딸(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단독가구의 학대 유형에서 자기방임이 가장 높은 것과 학대행위자 유형 중 피해자 본인이 가장 높은 것은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43] 노인단독가구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건, %)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236	58	394	36	168	8	11	22	697	82	95	1,110
21.3	5.2	35.5	3.2	15.1	0.7	1.0	2.0	62.8	7.4	8.6	100

4 시설학대 현황

1)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와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설학대 건수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70건(58.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50건(18.6%),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37건(25.0%)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설학대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4]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건수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전체 학대사례 건수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서울	서울남부	224	2	21	-	4
			0.9	9.4	-	1.8
	서울북부	216	1	11	-	1
			0.5	5.1	-	0.5
	소계	440	3	32	-	5
			0.7	7.3	-	1.1
부산	부산동부	194	-	-	-	-
			-	-	-	-
	부산서부	179	2	2	-	1
			1.1	1.1	-	0.6
	소계	373	2	2	-	1
			0.5	0.5	-	0.3
대구	대구남부	110	-	8	-	-
			-	7.3	-	-
	대구북부	37	-	1	-	-
			-	2.7	-	-
	소계	207	-	9	-	-
			-	4.4	-	-
인천	444	3	12	-	-	
		0.7	2.7	-	-	

지 역	기관명	전체 학대사례 건수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광주		240	2	6	-	1
			0.8	2.5	-	0.4
대전		119	-	70	-	-
			-	58.8	-	-
울산		104	-	1	-	1
			-	1.0	-	1.0
경기	경기남부	225	2	15	-	2
			1.0	6.7	-	1.0
	경기북부	269	1	47	-	2
			1.4	17.5	-	0.7
	경기서부	260	3	4	-	1
			1.2	1.5	-	0.4
소계	754	6	66	-	5	
0.8	8.8	-	0.7			
강원	강원	148	-	37	-	-
			-	25.0	-	-
	강원동부	70	-	-	-	-
			-	-	-	-
	강원남부	71	-	3	-	-
			-	4.2	-	-
소계	289	-	40	-	-	
-	13.8	-	-			
충북	충북	111	-	12	-	-
			-	10.8	-	-
	충북북부	54	-	2	-	-
			-	3.7	-	-
소계	165	-	14	-	-	
-	8.5	-	-			
충남	충남	165	1	5	-	-
			0.6	3.0	-	-
	충남남부	70	2	2	-	-
			2.9	2.9	-	-
소계	235	3	7	-	-	
1.3	3.0	-	-			

지 역	기관명	전체 학대사례 건수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전북	전북	142	-	1	-	-
			-	0.7	-	-
	전북서부	94	2	4	-	-
			2.1	4.3	-	-
	소계	236	2	5	-	-
		0.9	2.1	-	-	
전남	전남	152	-	-	-	1
			-	-	-	0.7
	전남서부	174	2	17	-	-
			1.2	9.8	-	-
	소계	326	2	17	-	1
		0.6	5.2	-	0.3	
경북	경북	112	5	-	-	-
			4.5	-	-	-
	경북서북부	144	-	3	1	1
			-	2.1	0.7	0.7
	경북서남부	63	3	1	-	-
4.8			1.6	-	-	
소계	319	8	4	1	-	
		2.5	1.3	0.3	-	
경남	경남	211	2	4	-	-
			1.0	1.9	-	-
	경남서부	62	1	3	-	-
			1.6	4.8	-	-
	소계	273	3	7	-	-
		1.1	2.6	-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80	1	-	-	-
			1.3	-	-	-
	제주도서귀포시	18	-	-	-	-
			-	-	-	-
	소계	98	1	-	-	-
		1.0	-	-	-	
계		4,622	35	292	1	15
			0.8	6.3	0.0	0.3

주: 각 시설학대 건수 비율은 전체 학대사례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2) 시설학대 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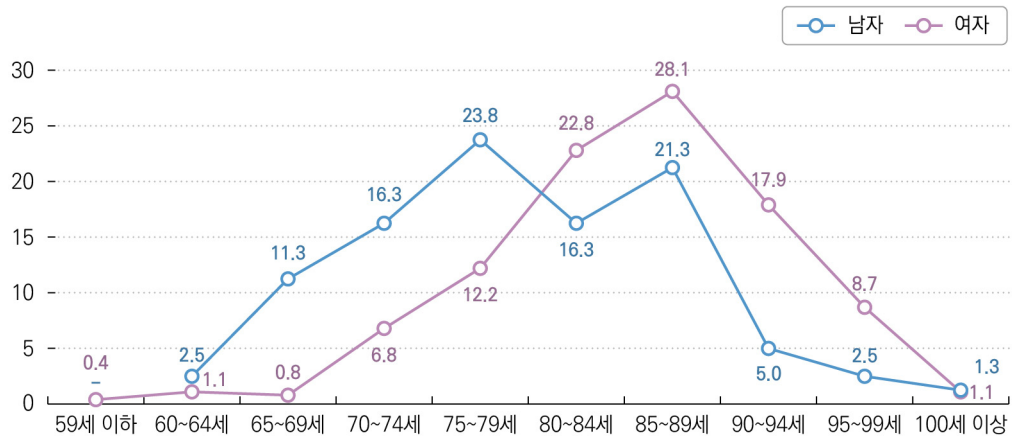
시설학대 343건 중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비율은 여성노인은 263건(76.7%), 남성노인은 80건(23.3%)으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시설학대 피해노인의 성별 및 연령대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70대 40.1%, 80대 37.6%, 60대 13.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80대가 50.9%로 절반이상 가까이 차지하였으며, 90대 26.6%, 60대 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5]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건, %)

구분	59세 이하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	2	9	13	19	13	17	4	2	1	80
	-	2.5	11.3	16.3	23.8	16.3	21.3	5	2.5	1.3	100
여성	1	3	2	18	32	60	74	47	23	3	263
	0.4	1.1	0.8	6.8	12.2	22.8	28.1	17.9	8.7	1.1	100
계	1	5	11	31	51	73	91	51	25	4	343
	0.3	1.5	3.2	9.0	14.9	21.3	26.5	14.9	7.3	1.2	100



[그림 5-1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에 따른 연령대 비율

3)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시설학대 총 343건을 신고자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이 57건(16.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2건(12.2%)로 전체 시설학대 건수 중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은 102건(29.7%)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관련 기관이 89건(25.9%)으로 가장 높았으며, 친족 75건(21.9%), 타인 45건(1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6] 시설학대 신고자유형

(단위: 건, %)

구 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신고 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	-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	-	-	-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4	49	-	4	57
		1.2	14.3	-	1.2	16.6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관련종사자	-	-	-	-	-
	가정폭력관련종사자	-	-	-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	32	1	3	42
		1.7	9.3	0.3	0.9	12.2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	-	-	-	-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2	-	1	3
		-	0.6	-	0.3	0.9
	구급대의 대원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	-	-	-	-
	응급구조사	-	-	-	-	-
	의료기사	-	-	-	-	-
	소계	10	83	1	8	102
		2.9	24.2	0.3	2.3	29.7

구 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비신고 의무자	학대피해노인본인	1	30	-	1	32
		0.3	8.7	-	0.3	9.3
	학대행위자본인	-	-	-	-	-
		-	-	-	-	-
	친족	11	62	-	2	75
		3.2	18.1	-	0.6	21.9
	타인	-	45	-	-	45
		-	13.1	-	-	13.1
	관련기관 ²⁶⁾	13	72	-	4	89
		3.8	21.0	-	1.2	25.9
	소계	25	209	-	7	241
		7.3	60.9	-	2.0	70.3
계	35	292	1	15	343	
	10.2	85.1	0.3	4.4	100	

26)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4)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결혼유형

학대피해노인의 결혼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50.5%는 배우자가 있고, 49.5%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노인의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결혼유형을 살펴보면,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2.5%로 더 많은 반면, 생활시설 내 학대피해노인은 배우자 없음이 79.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체사례에 비해 생활시설 학대피해노인 상당수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7]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결혼유형

(단위: 건, %)

구 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계
	초혼	재혼	사실혼	소계	미혼	사별	이혼	별거	가출	소계	
가정 내	1,969	140	96	2,205	65	1,561	222	65	11	1,924	4,129
	47.7	3.4	2.3	53.4	1.6	37.8	5.4	1.6	0.3	46.6	100
생활 시설	6	-	-	6	2	26	1	-	-	29	35
	17.1	-	-	17.1	5.7	74.3	2.9	-	-	82.9	100
	58	1	3	62	1	228	1	-	-	230	292
	19.9	0.3	1.0	21.2	0.3	78.1	0.3	-	-	78.8	100
이용 시설	1	-	-	1	-	-	-	-	-	-	1
	100.0	-	-	100.0	-	-	-	-	-	-	100
	5	-	-	5	-	10	-	-	-	10	15
병원	33.3	-	-	33.3	-	66.7	-	-	-	66.7	100
	8	-	-	8	-	18	-	1	-	19	27
공공 장소	29.6	-	-	29.6	-	66.7	-	3.7	-	70.4	100
	26	1	-	27	-	29	2	-	-	31	58
기타	44.8	1.7	-	46.6	-	50.0	3.4	-	-	53.4	100
	20	2	-	22	4	26	10	1	2	43	65
계	30.8	3.1	-	33.8	6.2	40.0	15.4	1.5	3.1	66.2	100
	2,093	144	99	2,336	72	1,898	236	67	13	2,286	4,622
	45.3	3.1	2.1	50.5	1.6	41.1	5.1	1.4	0.3	49.5	100

5)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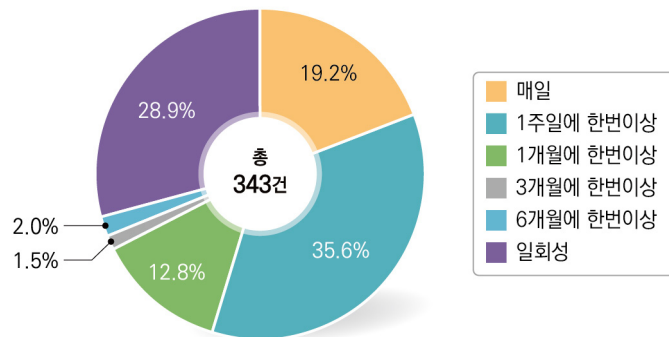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의 학대발생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시설학대 중 35.6%가 1주일에 한번 이상 발생, 일회성 28.9%, 매일 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각각 40.0%, 37.1%로 일회성 학대발생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생활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중 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발생하는 사례의 비율을 합하면 49.0%로 생활시설학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여, 타 시설에 비하여 학대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48]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구분	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1개월에 한번 이상	3개월에 한번 이상	6개월에 한번 이상	일회성	계
생활 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57	111	34	4	6	80
		19.5	38.0	11.6	1.4	2.1	27.4
	노인주거 복지시설	6	8	7	-	1	13
		17.1	22.9	20.0	-	2.9	37.1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	-	1	-	-
		-	-	0.0	100.0	-	-
	재가노인 복지시설	3	3	3	-	-	6
		20.0	20.0	20.0	-	-	40.0
계		66	122	44	5	7	99
		19.2	35.6	12.8	1.5	2.0	28.9



[그림 5-18]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비율



6)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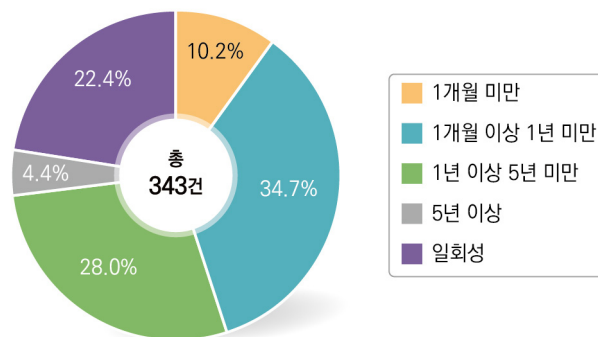
전체 시설학대 사례의 학대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19건(34.7%)으로 가장 높았으며, 1년 이상 5년 미만 96건(28.0%), 일회성 77건(22.4%)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 학대 중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35.6%), 1년 이상 5년 미만(30.1%), 일회성(20.9%)의 순으로, 전체 시설학대의 지속기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일회성과 1개월 미만(28.6%), 1개월 이상 1년 미만(25.7%), 1년 이상 5년 미만(1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9]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일회성	계
생활 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24	104	88	15	61	292
		8.2	35.6	30.1	5.1	20.9	100
	노인주거 복지시설	10	9	6	-	10	35
		28.6	25.7	17.1	-	28.6	100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1	-	-	-	1
		-	100.0	-	-	-	100
	재가노인 복지시설	1	6	2	-	6	15
		6.7	40.0	13.3	-	40.0	100
계		35	119	96	15	77	343
		10.2	34.7	28.0	4.4	22.4	100



[그림 5-19]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비율

다음은 시설학대의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을 살펴보았다. 학대발생빈도를 기준으로 보면, 1주일에 한번 이상 발생하며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52.5%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학대지속기간 기준 시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3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즉, 시설학대의 학생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비율이 높아 앞서 언급한 내용과 일치 한다. 시설학대 발생빈도와 상관없이 한번 발생한 시설학대의 경우에는 그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지속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5-50]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 분	학대지속기간					일회성	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학 대 발 생 빈 도	매일	3	16	42	5	-	66
		4.5	24.2	63.6	7.6	-	100
	1주일에 한번이상	14	64	40	4	-	122
		11.5	52.5	32.8	3.3	-	100
	1개월에 한번이상	8	19	11	6	-	44
		18.2	43.2	25	13.6	-	100
	3개월에 한번이상	-	3	1	-	1	5
		-	60.0	20.0	-	20.0	100
	6개월에 한번이상	2	3	2	-	-	7
		28.6	42.9	28.6	-	-	100
	일회성	8	15	-	-	76	99
		8.1	15.2	-	-	76.8	100
	계	35	120	96	15	77	343
		10.2	35.0	28.0	4.4	22.4	100



7) 시설학대 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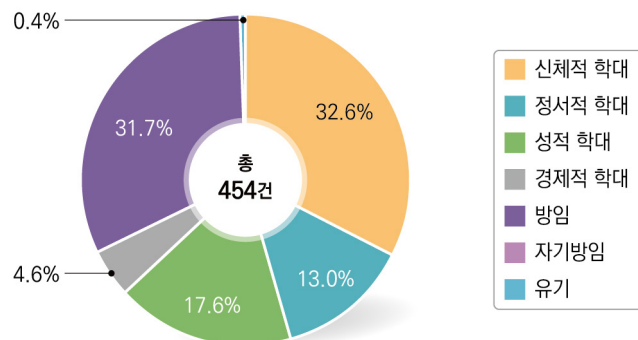
시설학대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총 454건 중 신체적 학대가 148건(32.6%), 방임이 144건(31.7%), 성적 학대가 80건(17.6%), 정서적 학대 59건(13.0%) 등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129건(33.2%)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방임 120건(30.9%)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방임이 19건(41.3%)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각 11건(23.9%) 순으로 나타나 시설간 학대유형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51] 시설학대 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생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129	42	76	20	120	-	1	388
		33.2	10.8	19.6	5.2	30.9	-	0.3	100
	노인주거복지시설	11	11	4	1	19	-	-	46
		23.9	23.9	8.7	2.2	41.3	-	-	100
이용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1	-	-	-	-	-	-	1
		100	-	-	-	-	-	-	100
	재가노인복지시설	7	6	-	-	5	-	1	19
		36.8	31.6	-	-	26.3	-	5.3	100
계		148	59	80	21	144	-	2	454
		32.6	13.0	17.6	4.6	31.7	-	0.4	100

* 중복



[그림 5-20] 시설학대 학대 유형 비율

8)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시설학대 343건 중 치매로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사례는 291건(84.8%)이다. 치매노인 291명을 대상으로 시설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생활시설이 276건(94.8%)으로 이용 시설 15건(5.2%)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52]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건, %)

시설학대	구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계
343	생활 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23	231	254
			6.7	67.3	74.1
		노인주거 복지시설	4	18	22
			1.2	5.2	6.4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1	1
			-	0.3	0.3
		재가노인 복지시설	3	11	14
			0.9	3.2	4.1
	계		30	261	291
			8.7	76.1	84.8

9)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시설학대 학대행위자는 총 665명이며 그 중 여성이 485명(72.9%), 남성이 180명(27.1%)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연령대 비율을 보면 남성의 경우 60대가 86명(47.8%), 여성의 경우 50대가 202명(4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53]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남성	-	25	7	8	50	86	4	180
	-	13.9	3.9	4.4	27.8	47.8	2.2	100
여성	-	1	1	116	202	157	8	485
	-	0.2	0.2	23.9	41.6	32.4	1.6	100
계	-	26	8	124	252	243	12	665
	-	3.9	1.2	18.6	37.9	36.5	1.8	100

10)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시설학대를 시설 유형별로 구분해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 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생활시설 학대피해노인 327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8명 (14.7%)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15.3%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시설 학대피해노인 16명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4]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건, %)

구 분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292	39 13.4
	노인주거 복지시설	35	9 25.7
	소계	327	48 14.7
이용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1	- -
	재가노인 복지시설	15	- -
	소계	16	- -
계		343	48 14.0

5 노(老) - 노(老)학대 현황

1) 연도별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추이

노(老) - 노(老)학대란 60세 이상²⁷⁾ 고령의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고령의 부부 간의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 및 며느리 등에 의한 학대, 고령의 노인이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않은 자기방임 유형의 학대를 의미한다.

연도별 노(老) - 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추이를 보면 2013년 1,374건에서 2017년 2,188건으로 5년 간 800건 이상(59.2%) 증가하였다. 지난 5년 간 전체 학대행위자의 증가율이 27.1%(4,013건 → 5,101건)인 것에 반해, 노(老) - 노(老)학대는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노인학대 중 노(老) - 노(老)학대의 증가가 매우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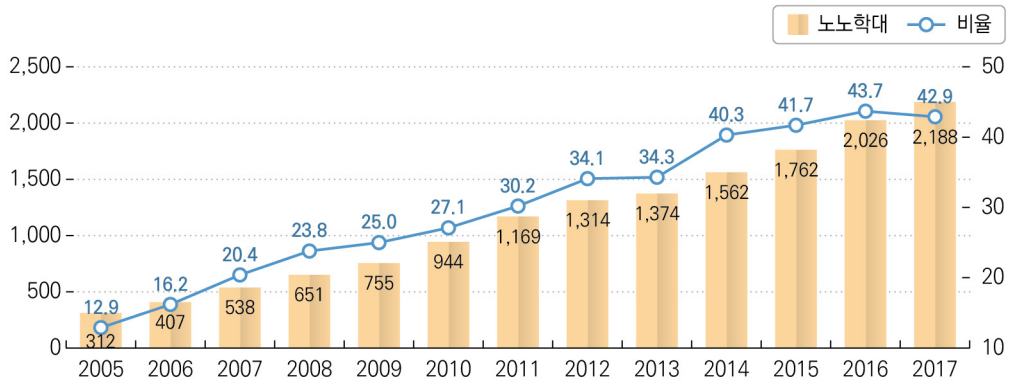
이처럼 고령의 학대행위자가 증가하는 것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배우자와의 삶의 기간 연장 및 자녀의 노년기 진입, 노인이 혼자 거주하는 가구형태의 증가 등에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이는 학대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아들이 꾸준히 37.5%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는 점, 최근 5년 동안 학대행위자의 배우자 비율이 2순위로 자리 잡고 있는 점 등이 노(老) - 노(老)학대 증가를 뒷받침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표 5-55] 연도별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단위: 명, 건,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노노 학대	건수	312	407	538	651	755	944	1,169	1,314	1,374	1,562	1,762	2,026	2,188
	비율	12.9	16.2	20.4	23.8	25.0	27.1	30.2	34.1	34.3	40.3	41.7	43.7	42.9
전체 학대행위자		2,418	2,508	2,636	2,730	3,019	3,478	3,866	3,854	4,013	3,876	4,224	4,637	5,101

27) 노인복지법 개정(2017. 6.3)으로 2017년 6월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사람간의 학대를 노인학대로 보고 있으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침에는 2017년 11월 이후부터 반영되어 노인복지법 개정 전의 연령기준인 60세를 노 - 노 학대의 연령기준 기준으로 집계 하였다.



[그림 5-21] 연도별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추이

2) 지역 및 기관별 노(老) - 노(老)학대 건수

2017년 한 해 동안 신고접수 된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는 총 2,188명이며 이는 전체 학대행위자 5,101명 중 42.9%에 해당된다.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별 전체 학대행위자 대비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63.3% (69명)로 가장 높았으며,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수 기준 시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223명(56.5%)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기관은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26명, 20.5%), 가장 낮은 학대행위자 수는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9명, 45.0%)으로 나타났다.

[표 5-56] 지역 및 기관별 노(老) - 노(老)학대 건수

(단위: 명, %)

지역	기관명	노(老) - 노(老)학대		전체 학대행위자
서울	서울남부	87	37.2	234
	서울북부	85	38.5	221
	소계	172	37.8	455
부산	부산동부	97	48.3	201
	부산서부	83	43.0	193
	소계	180	45.7	394
대구	대구남부	48	41.4	116
	대구북부	49	50.5	97
	소계	97	45.5	213
인천		182	40.8	446

지역	기관명	노(老) - 노(老)학대		전체 학대행위자
		인수	발생률	
	광주	122	50.0	244
	대전	26	20.5	127
	울산	69	63.3	109
경기	경기남부	96	42.1	228
	경기북부	93	31.0	300
	경기서부	105	39.2	268
	소계	294	36.9	796
강원	강원	223	56.5	395
	강원동부	21	30.0	70
	강원남부	21	28.4	74
	소계	265	49.2	539
충북	충북	46	41.4	111
	충북북부	27	47.4	57
	소계	73	43.5	168
충남	충남	68	40.2	169
	충남남부	32	42.1	76
	소계	100	40.8	245
전북	전북	83	53.5	155
	전북서부	43	43.0	100
	소계	126	49.4	255
전남	전남	80	52.3	153
	전남서부	94	38.8	242
	소계	174	44.1	395
경북	경북	58	51.8	112
	경북서북부	80	54.4	147
	경북서남부	23	34.8	66
	소계	161	49.5	325
경남	경남	85	38.3	222
	경남서부	24	36.4	66
	소계	109	37.8	28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9	35.4	82
	제주도서귀포시	9	45.0	20
	소계	38	37.3	102
계		2,188	42.9	5,101

3) 노(老) - 노(老)학대 신고자 유형

노(老) - 노(老)학대의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비율은 14.9%이다.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의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6.2%, 가정폭력관련 종사자가 3.7%,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이 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85.1%로 신고자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유형으로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등에 의한 관련기관의 신고가 65.4%로 가장 높고, 학대 피해노인 본인이 신고한 비율이 9.0%, 친족에 의한 신고가 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7] 노(老) - 노(老)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신고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6	0.3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1	0.0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71	3.2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2	0.1
	가정폭력관련종사자	82	3.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36	6.2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9	0.4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0	0.5
	구급대의 대원	4	0.2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1	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3	0.1
	응급구조사	-	-
	의료기사	-	-
	소계	325	14.9
비신고의무자	학대피해노인본인	197	9.0
	학대행위자본인	2	0.1
	친족	162	7.4
	타인	70	3.2
	관련기관 ²⁸⁾	1432	65.4
	소계	1,863	85.1
계	2,18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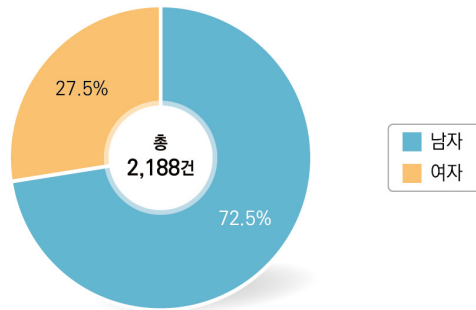
4)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성별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2,188명 중 남성이 1,587명(72.5%), 여성이 601명(27.5%)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대행위자 성별비율²⁹⁾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5-58]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남 성	여 성	계
1,587	601	2,188
72.5	27.5	100



[그림 5-22]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성별

5)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유형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의 유형은 전체 학대행위자 유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학대행위자 유형에서는 아들 - 배우자 - 기관 순으로 나타난 반면,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유형은 배우자가 1,240명(56.7%)으로 가장 높고, 피해자 본인이 290명(13.3%), 기관이 266명(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유형은 고령의 부부 간 배우자 학대, 학대피해노인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유형의 학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59]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290	1,240	175	19	55	2	0	28	1,519	113	266	2,188
13.3	56.7	8.0	0.9	2.5	0.1	0.0	1.3	69.4	5.2	12.2	100

28)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29) 2017년 전체 학대행위자 중 남성은 3,585명(70.3%)이고 여성은 1,516명(29.7%)임.

6) 노(老) - 노(老)학대 가구형태

노(老) - 노(老)학대 총 2,188건 중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가 1,011건(46.2%)으로 가장 많고, 노인단독가구가 465건(21.3%), 자녀동거가구가 327건(14.9%)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5-60] 노(老) - 노(老)학대 가구형태

(단위: 건, %)

노인단독	노인부부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자녀동거	기 타	계
465	1,011	36	43	327	306	2,188
21.3	46.2	1.6	2.0	14.9	14.0	100.0

7)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2,188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66명(12.2%)이다. 2016년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344명, 17.0%)과 비교하면 약 5%p 정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61]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188	266
	12.2

8)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교육수준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의 교육수준은 초졸 777명(35.5%), 고졸 455명(20.8%), 중졸 411명(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62]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교육수준

(단위: 명, %)

무 학	초 졸	중 졸	고 졸	전문대졸이상	계
335	777	411	455	210	2,188
15.3	35.5	18.8	20.8	9.6	100.0

9)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의 직업 유형을 보면 무직이 1,532명(70.0%)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서비스·판매 종사자 232명(10.6%), 단순노무종사자가 119명(5.4%)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63]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단위: 명, %)

직업	명수	비율
무직	1,532	70.0
공무원·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7	0.3
전문직	65	3.0
기술공 및 준전문가	22	1.0
사무종사자	10	0.5
서비스·판매종사자	232	10.6
농·어·축산업 종사자	101	4.6
기능업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	0.3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4	0.2
단순노무종사자	119	5.4
자영업자	84	3.8
종교인	6	0.3
계	2,188	100



6 치매노인 학대현황

1) 치매노인 성별 및 연령대

2017년 전체 노인학대 4,622건 중 치매노인은 1,122명으로 24.3%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여성은 838명(74.7%)이고, 남성은 284명(25.3%)으로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64] 치매노인 성별

(단위: 명, %)

전체학대사례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계
남성	137	147	284
여성	351	487	838
계	488	634	1,122

성별에 이어 치매노인을 연령대로 구분해 보면, 80대가 512명(4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70대가 356명(31.7%)으로 두 번째로 높다. 치매노인의 연령대를 전기노인(65세-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전기노인은 202명(18.0%)이고 후기노인은 896명(79.9%)로 나타나 치매노인 중 후기노인의 학대피해노인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65] 치매노인 연령대

(단위: 명, %)

성별	59세 이하	60~ 64세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 89세	90~ 94세	95~ 99세	100세 이상	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1	13	41	73	95	120	84	46	12	3	488
	0.2	2.7	8.4	15.0	19.5	24.6	17.2	9.4	2.5	0.6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	10	27	61	127	154	154	71	27	3	634
	-	1.6	4.3	9.6	20.0	24.3	24.3	11.2	4.3	0.5	100
계	1	23	68	134	222	274	238	117	39	6	1,122
	0.1	2.0	6.1	11.9	19.8	24.4	21.2	10.4	3.5	0.5	100

2) 치매노인 대상 학대발생 유형

치매노인 대상 학대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443건(28.1%)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422건(26.8%), 방임 370건(23.5%) 순으로 나타났다. 치매노인 대상

학대유형은 전체 학대피해노인 대상 학대유형과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전체 학대피해 노인 대상 학대유형에서는 정서적 학대(3,064건, 42.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치매노인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66] 치매노인 대상 학대발생 유형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182	216	7	50	154	86	18	713
	25.5	30.3	1.0	7.0	21.6	12.1	2.5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261	206	69	55	216	39	18	864
	30.2	23.8	8.0	6.4	25.0	4.5	2.1	100
계	443	422	76	105	370	125	36	1,577
	28.1	26.8	4.8	6.7	23.5	7.9	2.3	100

* 중복

3) 치매노인 대상 학대발생장소

치매노인 대상 학대발생장소를 보면, 가정 내가 770건(68.6%)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생활시설 276건(24.6%)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와 생활시설의 건수를 합하면 총 1,046건(93.2%)으로 학대발생장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치매의심과 치매진단의 세부 유형에서도 모두 가정 내가 각각 430건(88.1%), 340건(5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매노인의 주 부양자가 주로 가정에 집중되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5-67] 치매노인 대상 학대발생장소

(단위: 명, %)

구 분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 원	공공장소	기 타	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430	27	3	6	14	8	488
	88.1	5.5	0.6	1.2	2.9	1.6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340	249	12	16	4	13	634
	53.6	39.3	1.9	2.5	0.6	2.1	100
계	770	276	15	22	18	21	1,122
	68.6	24.6	1.3	2.0	1.6	1.9	100

4) 치매노인 대상 학대발생빈도

치매노인 대상 학대발생빈도를 보면, 1주일에 한번 이상이 350건(31.2%)로 가장 높고, 매일 281건(25.0%), 1개월에 한번 이상 213건(19.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매일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학대피해노인이 매일 학대를 경험하는 빈도(717건, 15.5%)보다 약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노인은 더욱 잦은 빈도로 학대받을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68] 치매노인 대상 학대발생빈도

(단위: 명, %)

구 분	매 일	1주일에 한번 이상	1개월에 한번 이상	3개월에 한번 이상	6개월에 한번 이상	일회성	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144	137	100	27	28	52	488
	29.5	28.1	20.5	5.5	5.7	10.7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137	213	113	21	23	127	634
	21.6	33.6	17.8	3.3	3.6	20.0	100
계	281	350	213	48	51	179	1,122
	25.0	31.2	19.0	4.3	4.5	16.0	100

5) 치매노인 대상 학대지속기간

치매노인 대상 학대지속기간을 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이 391건(34.8%)으로 가장 높았고,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293건(26.1%), 5년 이상이 231건(20.6%)으로 나타났다. 학대지속기간 중 1년 이상인 경우가 622건(55.4%)으로 과반을 차지한다는 결과는 다수의 치매노인이 장기간 학대에 노출되어 있음을 뒷받침한다.

[표 5-69] 치매노인 대상 학대지속기간

(단위: 명, %)

구 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일회성	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22	115	173	137	41	488
	4.5	23.6	35.5	28.1	8.4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42	178	218	94	102	634
	6.6	28.1	34.4	14.8	16.1	100
계	64	293	391	231	143	1,122
	5.7	26.1	34.8	20.6	12.7	100

6) 치매노인 대상 학대행위자 유형

치매노인 대상 학대행위자 유형을 보면, 친족이 710건(48.2%)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관 600건(40.7%) 순으로 나타났다. 친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들이 377건(25.6%)으로 가장 높고, 딸 134건(9.1%), 배우자 132건(9.0%) 순이다. 즉, 학대행위자 중 친족의 경우 자녀 - 배우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친족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매를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치매의심은 친족이 376건(70.8%)으로 가장 높았지만 치매진단의 경우 기관이 549건(58.2%)으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부양자가 누구인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표 5-70] 치매노인 대상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86	53	213	20	73	5	5	7	376	18	51	531
	16.2	10.0	40.1	3.8	13.7	0.9	0.9	1.3	70.8	3.4	9.6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39	79	164	11	61	2	10	7	334	21	549	943
	4.1	8.4	17.4	1.2	6.5	0.2	1.1	0.7	35.4	2.2	58.2	100
계	125	132	377	31	134	7	15	14	710	39	600	1,474
	8.5	9.0	25.6	2.1	9.1	0.5	1.0	0.9	48.2	2.6	40.7	100

*중복



Chapter **06**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실적

제6장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실적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의 근거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재학대 예방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및 심리 치유 프로그램 제공,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국 18개³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1) 보호노인 현황

보호노인이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입소자와 이용자를 모두 일컫는다. “입소자”는 쉼터에서 숙식과 함께 치유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있는 대상이며, “이용자”는 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2017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보호노인 현황을 보면 입소자가 520명(37.7%), 이용자가 859명(62.3%)으로 총 1,379명이다. 이는 기관 당 연평균 76.6명, 월평균 6.4명이 입소 및 이용한 수치이다.

[표 6-1] 보호노인 현황

(단위: 명, %)

구 분	남 성	여 성	계
입소자	75	445	520
	14.4	85.6	100
이용자	201	658	859
	23.4	76.6	100
계	276	1,103	1,379
	20.0	80.0	100

30) 이 중 경북서북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경상북도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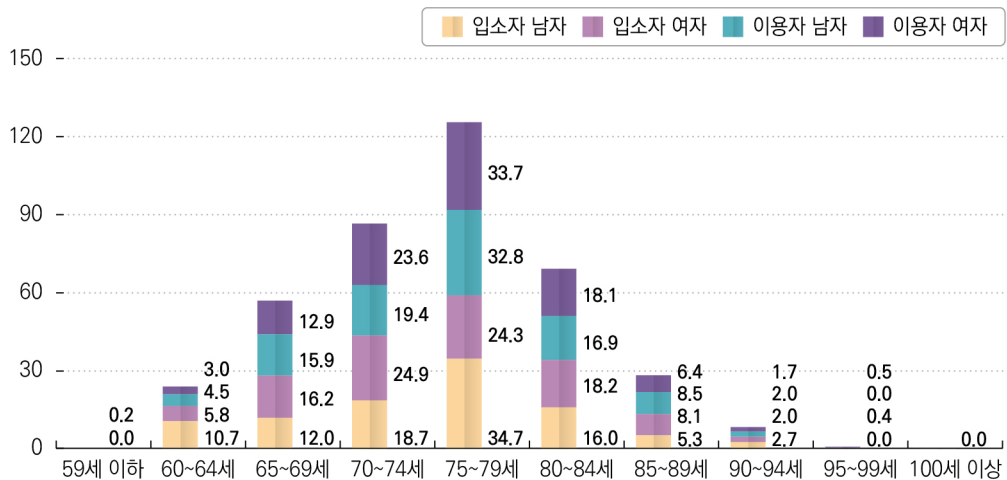
보호노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입소자와 이용자 모두 70대가 각각 259명(49.8%), 482명(56.1%)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이용자가 입소자에 비해 6.3%p 정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노인의 성별은 입소자와 이용자 모두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자의 경우 남성노인은 75~79세가 26명(34.7%), 여성노인은 70~74세가 111명(24.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의 경우 남녀 모두 75~79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남성노인은 66명(32.8%), 여성노인은 222명(33.7%)이었다.

[표 6-2]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59세 이하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입소자	남성	-	8	9	14	26	12	4	2	-	-	75
		-	10.7	12.0	18.7	34.7	16.0	5.3	2.7	-	-	100
	여성	-	26	72	111	108	81	36	9	2	-	445
		-	5.8	16.2	24.9	24.3	18.2	8.1	2.0	0.4	-	100
	계	-	34	81	125	134	93	40	11	2	-	520
-	-	6.5	15.6	24.0	25.8	17.9	7.7	2.1	0.4	-	100	
이용자	남성	-	9	32	39	66	34	17	4	-	-	201
		-	4.5	15.9	19.4	32.8	16.9	8.5	2.0	-	-	100
	여성	1	20	85	155	222	119	42	11	3	-	658
		0.2	3.0	12.9	23.6	33.7	18.1	6.4	1.7	0.5	-	100
	계	1	29	117	194	288	153	59	15	3	-	859
-	0.1	3.4	13.6	22.6	33.5	17.8	6.9	1.7	0.3	-	100	



[그림 6-1]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3) 보호노인 결혼 유형

입소자와 이용자의 결혼유형을 보면, 입소자의 경우 배우자 있음(258명, 49.6%)과 배우자 없음(259명, 49.8%)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경우 배우자 없음은 521명(60.7%)으로 배우자 있음의 338명(39.3%)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6-3] 보호노인 결혼유형

(단위: 명, %)

구 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파악 안됨	계
	초혼	재혼	사실혼	기타	소계	미혼	사별	이혼	별거	가출	기타	소계		
입소자	219	23	15	1	258	10	208	31	7	0	3	259	3	520
	42.1	4.4	2.9	0.2	49.6	1.9	40.0	6.0	1.3	0.0	0.6	49.8	0.6	100
이용자	310	17	10	1	338	15	427	55	23	0	1	521	0	859
	36.1	2.0	1.2	0.1	39.3	1.7	49.7	6.4	2.7	0.0	0.1	60.7	0.0	100
계	529	40	25	2	596	25	635	86	30	0	4	780	3	1,379
	38.4	2.9	1.8	0.1	43.2	1.8	46.0	6.2	2.2	0.0	0.3	56.6	0.2	100

4)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보호노인의 동거자 유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 509명(47.4%), 아들 272명(25.3%), 손자녀 82명(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이용 상태에 따라 구분해 보면, 입소자의 경우 배우자 211명(43.0%), 아들 143명(29.1%), 딸 44명(9.0%) 등의 순이고, 이용자의 경우 배우자 298명(51.1%), 아들 129명(22.1%), 손자녀 50명(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4]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배우자	아 들	며느리	딸	사 위	손자녀	기타 친인척	기타 동거인	파악 안됨	계
입소자	211	143	24	44	8	32	4	15	10	491
	43.0	29.1	4.9	9.0	1.6	6.5	0.8	3.1	2.0	100
이용자	298	129	12	32	3	50	3	27	29	583
	51.1	22.1	2.1	5.5	0.5	8.6	0.5	4.6	5.0	100
계	509	272	36	76	11	82	7	42	39	1,074
	47.4	25.3	3.4	7.1	1.0	7.6	0.7	3.9	3.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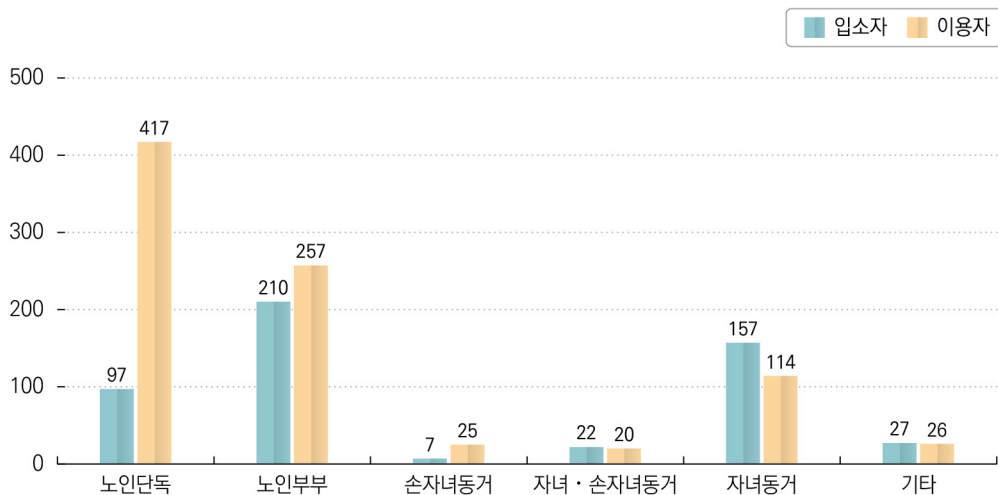
5) 보호노인 가구형태

입소자의 가구형태를 보면 노인부부가구가 210명(40.4%), 자녀동거가구가 157명(30.2%), 노인단독가구가 97명(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6년의 경우 노인단독가구가 552명(56.2%)으로 과반을 차지 하였으나 2017년에는 97명(18.7%)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이용자의 경우 노인단독가구가 417명(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인부부가구가 257명(29.9%), 자녀동거가구가 114명(13.3%) 등의 순으로 2016년과 비교³¹⁾해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5] 보호노인 가구형태

(단위: 명, %)

구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손자녀 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자녀동거	기타	계
입소자	97	210	7	22	157	27	520
	18.7	40.4	1.3	4.2	30.2	5.2	100
이용자	417	257	25	20	114	26	859
	48.5	29.9	2.9	2.3	13.3	3.0	100
계	514	467	32	42	271	53	1,379
	37.3	33.9	2.3	3.0	19.7	3.8	100



[그림 6-2] 보호노인 가구형태

31) 이용자 가구형태('16) : 노인단독가구 344명(43.0%), 노인부부가구 235명(29.4%), 자녀동거가구 139명(17.4%)



6) 보호노인 주거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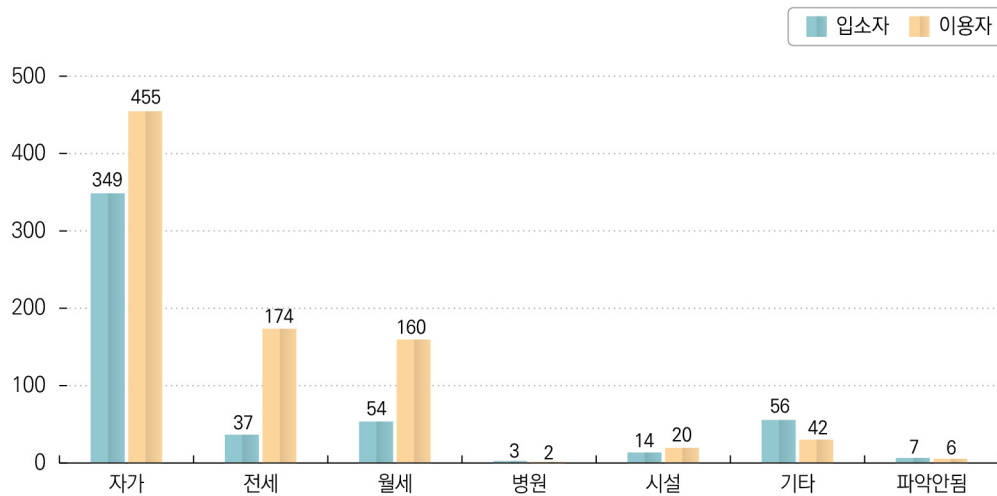
보호노인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입소자의 경우 자가가 349명(67.1%), 기타 56명(10.8%), 월세가 54명(10.4%) 등의 순이며 이용자는 자가가 455명(53.0%), 전세 174명(20.3%), 월세 160명(18.6%)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 비율 순위에 있어서 입소자와 이용자 모두 자가 비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은 동일하나 전세와 월세에 있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표 6-6] 보호노인 주거형태

(단위: 명, %)

구분	자 가	전 세	월 세	병 원	시 설	기 타	파약안됨	계
입소자	349	37	54	3	14	56	7	520
	67.1	7.1	10.4	0.6	2.7	10.8	1.3	100
이용자	455	174	160	2	20	42	6	859
	53.0	20.3	18.6	0.2	2.3	4.9	0.7	100
계	804	211	214	5	34	98	13	1,379
	58.3	15.3	15.5	0.4	2.5	7.1	0.9	100



[그림 6-3] 보호노인 주거형태

7) 보호노인 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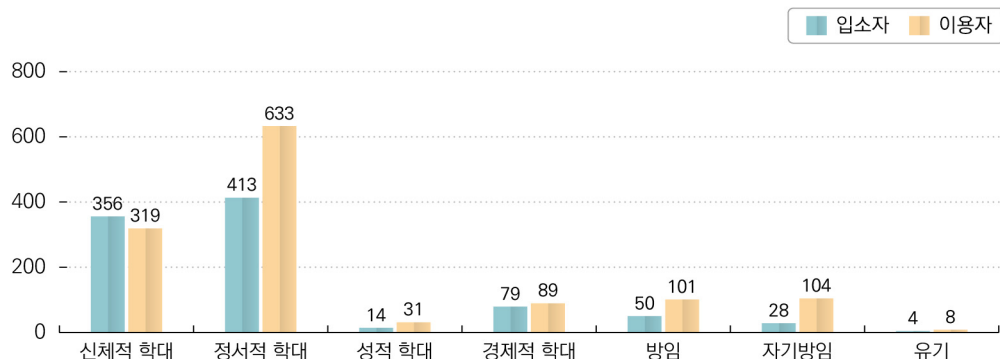
보호노인의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입소자의 경우, 정서적 학대 413건(43.8%), 신체적 학대 356건(37.7%), 경제적 학대 79건(8.4%) 순이며, 이용자는 정서적 학대 633건(49.3%), 신체적 학대 319건(24.8%), 자기방임 104건(8.1%) 순으로 나타났다. 입소노인의 경우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가 이용노인에 비해 비율이 높았으며 이용노인의 경우,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가 입소노인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6-7] 보호노인 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입소자	356	413	14	79	50	28	4	944
	37.7	43.8	1.5	8.4	5.3	3.0	0.4	100
이용자	319	633	31	89	101	104	8	1,285
	24.8	49.3	2.4	6.9	7.9	8.1	0.6	100
계	675	1,046	45	168	151	132	12	2,229
	30.3	46.9	2.0	7.5	6.8	5.9	0.5	100

* 중복



[그림 6-4] 보호노인 학대 유형

8) 보호노인 치매여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는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와 병원진단 없이 상담원이 임의로 치매간이조사지표나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를 의심하는 치매의심으로 분류한다.

2017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자 중 치매로 진단 받거나 의심되는 사례는 73건 (14.0%)이며 이용노인은 33건(3.8%)으로, 입소자의 치매진단 및 치매의심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6-8] 보호노인 치매여부

(단위: 건, %)

구 분	보호노인 수	치매 진단 및 의심		
		치매진단	치매의심	소계
입소자	520	20	53	73
		3.8	10.2	14.0
이용자	859	6	27	33
		0.7	3.1	3.8
계	1,379	26	80	106
		1.9	5.8	7.7

9) 보호노인의 우울증 검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입소자 및 이용자는 사전 사후 자가우울증검사³²⁾를 실시하여 우울증의 감소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보호노인 1,379명 중 급작스런 퇴소, 병원이송, 학대피해노인 거부, 치매,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우울증 검사를 실시한 학대피해노인은 총 1,185명이며 검사결과 그 중 98.7%가 우울증이 감소하였다.

[표 6-9] 보호노인 우울증 검사결과

(단위: 명, %)

구 분	증 가	감 소	계
입소자	13	434	447
	2.9	97.1	100
이용자	2	736	738
	0.3	99.7	100
계	15	1,170	1,185
	1.3	98.7	100

32)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척도 사용

10) 퇴소 후 거주 현황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퇴소 후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입소자 및 이용자의 907명(65.8%)이 원가정에 복귀하였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보호 기간이 종료된 입소노인의 272명(52.3%)은 원가정으로 복귀하였으나,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생활시설 또는 의료기관 등 타 시설로 연계(104명, 20.0%)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0] 퇴소 후 거주현황

(단위: 명, %)

구 분	원가정 복귀	입소 전 거주지 복귀 (원가정복귀제외)	타부양자 가정	시설입소 (쉼터, 공동생활 가정, 요양원 등)	의료기관	별도공간 마련	기 타	소계
입소자	272	13	47	73	31	44	40	520
	52.3	2.5	9.0	14.0	6.0	8.5	7.7	100
이용자	635	55	0	16	2	2	149	859
	73.9	6.4	0.0	1.9	0.2	0.2	17.3	100
계	907	68	47	89	33	46	189	1,379
	65.8	4.9	3.4	6.5	2.4	3.3	13.7	100

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소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는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 의료비 지원,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한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의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총 46,476회, 104,969명(연인원)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식사제공의 경우 16,490회에 걸쳐 45,968명에게 제공되었으며,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의 법률서비스는 27회에 27명, 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및 이송, 의료비 지급 등의 의료 서비스 지원은 2,931회에 5,028명에게 제공되었다.

상담서비스의 경우 쉼터 사회복지사 상담,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전문가 상담, 가족상담 등이 포함되며 9,239회, 10,159명에게 제공되었으며, 건강증진, 문화여가, 사회기능회복, 심리치료 등의 각종 프로그램은 17,789회에 걸쳐 43,787명에게 제공하였다.

[표 6-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퇴소자)

(단위: 명, 회, %)

내 용		인 원		횟 수*		
		인원	비율	횟수	비율	
식사제공	조식	15,576	14.8	5,532	11.9	
	중식	14,918	14.2	5,436	11.7	
	석식	15,474	14.7	5,522	11.9	
	소계	45,968	43.8	16,490	35.5	
법률서비스	법률상담연결	16	0.0	16	0.0	
	법률소송지원	11	0.0	11	0.0	
	소계	27	0.0	27	0.1	
의료서비스	연계	이송	110	0.1	96	0.2
		의료기관 서비스제공	351	0.3	307	0.7
	지원	이송 및 동행	1,031	1.0	945	2.0
		의료비 지급	563	0.5	539	1.2
	기타	2,973	2.8	1,044	2.2	
	소계	5,028	4.8	2,931	6.3	
상담서비스	쉼터 사회복지사 상담	4,207	4.0	4,128	8.9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1,768	1.7	1,757	3.8	
	전문가(강사)상담	965	0.9	703	1.5	
	가족상담	309	0.3	295	0.6	
	기타	2,910	2.8	2,356	5.1	
	소계	10,159	9.7	9,239	19.9	
프로그램	건강증진	24,169	23.0	9,195	19.8	
	문화여가	5,183	4.9	2,017	4.3	
	사회기능회복	3,886	3.7	2,013	4.3	
	심리치료	8,149	7.8	3,203	6.9	
	기타	2,400	2.3	1,361	2.9	
	소계	43,787	41.7	17,789	38.3	
계		104,969	100	46,476	100	

*횟수 : 2인 이상 동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1회로 집계함

12)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쉼터 보호노인 수는 총 1,379명 중 이용자는 859명, 62.3%로 보호노인의 상당수가 이용노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쉼터 서비스 제공 횟수는 입소자가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입소자의 경우 숙식과 함께 비교적 장기적인 상담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이용자의 경우 1~2회성 서비스 및 상담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용자에 대한 쉼터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식사제공은 999회, 3,260명이며 법률상담 연결 및 소송지원 등의 법률서비스제공이 1회, 1명 지원되었다.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148회, 209명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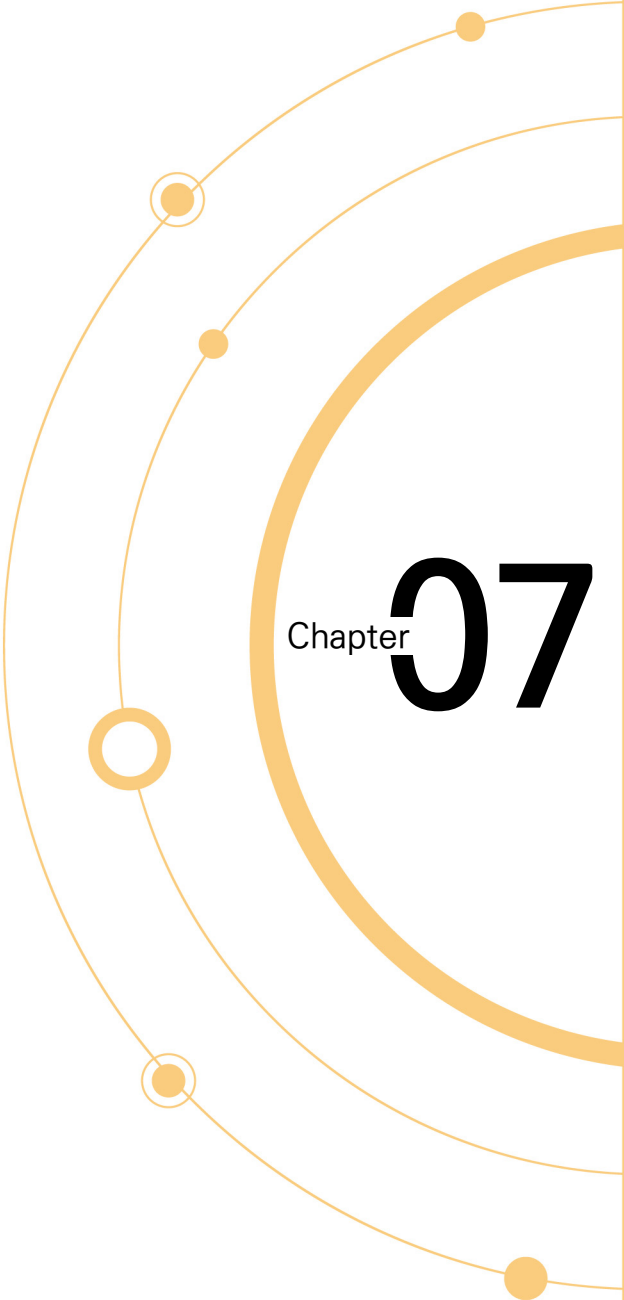
상담서비스의 경우 쉼터 사회복지사 상담,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전문가 상담, 가족상담 등이 1,299회에 걸쳐 1,720명에게 제공되었으며, 건강증진, 문화여가, 사회기능회복, 심리치료 등의 각종 프로그램은 1,001회에 걸쳐 3,177명에게 제공되었다.

[표 6-12]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단위: 명, 회, %)

내 용		인 원		횟 수		
		인원	비율	횟수	비율	
식사제공	조식	201	2.4	31	0.9	
	중식	2,100	25.1	611	17.7	
	석식	959	11.5	357	10.4	
	소계	3,260	39.0	999	29.0	
법률서비스	법률상담연결	1	-	1	-	
	법률소송지원	-	-	-	-	
	소계	1	-	1	-	
의료서비스	연계	이송	1	-	1	-
		의료기관 서비스제공	-	-	-	-
	지원	이송 및 동행	11	0.1	11	0.3
		의료비 지급	13	0.2	13	0.4
	기타		184	2.2	123	3.6
	소계		209	2.5	148	4.3

내 용	인 원		횟 수		
	인원	비율	횟수	비율	
상담서비스	쉼터 사회복지사 상담	339	4.1	339	9.8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632	7.6	625	18.1
	전문가(강사)상담	493	5.9	271	7.9
	가족상담	38	0.5	38	1.1
	기타	218	2.6	26	0.8
	소계	1,720	20.6	1,299	37.7
프로그램	건강증진	466	5.6	233	6.8
	문화여가	1,056	12.6	163	4.7
	사회기능회복	484	5.8	181	5.2
	심리치료	929	11.1	352	10.2
	기타	242	2.9	72	2.1
	소계	3,177	38.0	1,001	29.0
계	8,367	100	3,448	100	



Chapter 07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05~2017년)

1. 학대신고접수 건수
2. 연도별 재학대 건수
3. 연도별 신고자 구분
4.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5.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6. 연도별 생활시설 학대 추이
7.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8.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0.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13.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7. 연도별 종결사례 현황
18. 연도별 종결사유

제7장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05~2017년)



1 학대신고접수 건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연도별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대비 2017년 전체신고 건수는 31.0% 증가(10,162건 → 13,309건)하였다. 학대사례의 경우 31.3% 증가(3,520건 → 4,622건)하였고, 일반사례의 경우 30.8% 증가(6,642건 → 8,687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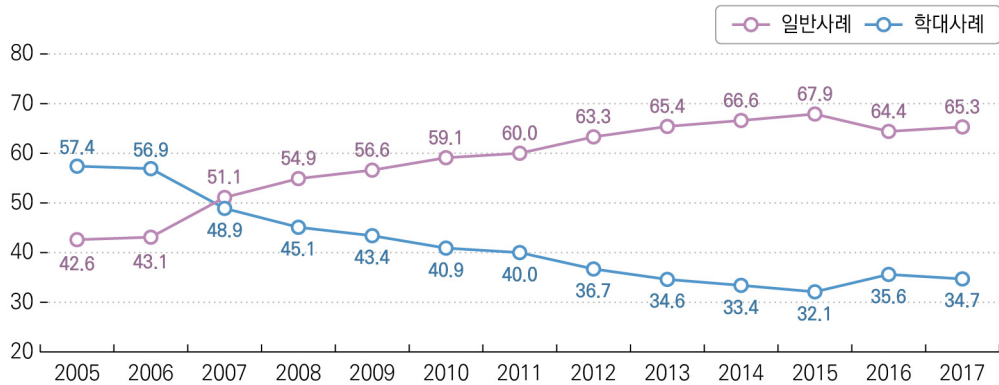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처음 시작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증설('05년 17개 → '17년 31개) 하였고,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 홍보활동과 노인학대예방 교육 등의 영향으로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 및 학대사례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전년대비 일반사례의 비율이 감소하고 학대사례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다시 일반사례와 학대사례 모두 전년 대비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사례	1,511	1,722	2,418	2,885	3,485	4,435	5,162	5,916	6,642	7,037	8,087	7,729	8,687
	42.6	43.1	51.1	54.9	56.6	59.1	60.0	63.3	65.4	66.6	67.9	64.4	65.3
증감률	-	14.0	40.4	19.3	20.8	27.3	16.4	14.6	12.3	5.9	14.9	-4.4	12.4
학대사례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7.4	56.9	48.9	45.1	43.4	40.9	40.0	36.7	34.6	33.4	32.1	35.6	34.7
증감률	-	11.6	1.7	2.5	12.9	14.7	12.2	-0.5	2.8	0.3	8.1	12.1	8.0
전체사례	3,549	3,996	4,730	5,254	6,159	7,503	8,603	9,340	10,162	10,569	11,905	12,009	13,30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증감률	-	12.6	18.4	11.1	17.2	21.8	14.7	8.6	8.8	4.0	12.6	0.9	10.8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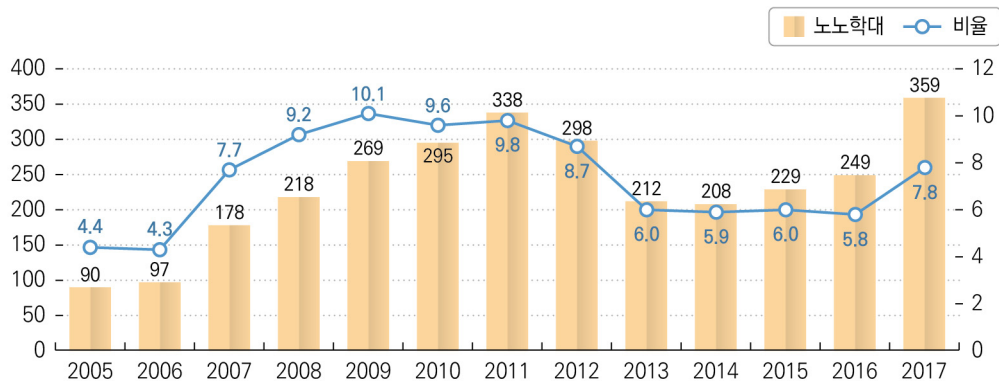
2 연도별 재학대 건수

연도별 재학대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던 재학대율은 2015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에는 전체학대사례 대비 비율이 2016년 5.8%에 비하여 2.0%p 증가, 지난해 대비 비율은 44.2% 증가하였다.

[표 7-2]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학대사례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재학대	건수	90	97	178	218	269	295	338	298	212	208	229	249
	비율	4.4	4.3	7.7	9.2	10.1	9.6	9.8	8.7	6.0	5.9	6.0	5.8
증감률	-	7.8	83.5	22.5	23.4	9.7	14.6	-11.8	-28.9	-1.9	10.1	8.7	44.2



[그림 7-2]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추이

3 연도별 신고자 구분

연도별 신고자의 경우, 2012년 이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13.7%로 2016년(17.5%)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의한 신고건수가 크게 감소한 결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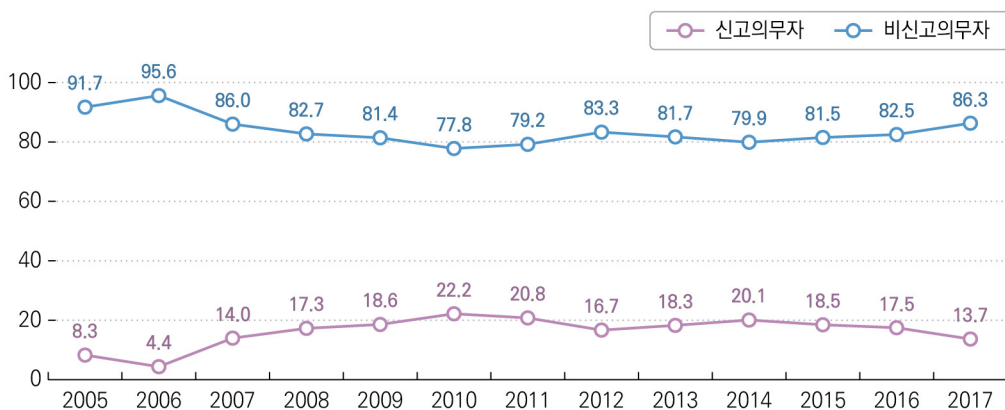
[표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건수

(단위: 건,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고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9 1.4	33 1.5	33 1.4	26 1.1	43 1.6	38 1.2	33 1.0	41 1.2	43 1.2	42 1.2	44 1.2	27 0.6	20 0.4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	-	-	-	-	-	-	-	-	-	-	9 0.2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41 2.0	20 0.9	107 4.6	187 7.9	221 8.3	265 8.6	311 9.0	167 4.9	207 5.9	182 5.2	178 4.7	168 3.9	153 3.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노인)종사자	5 0.2	-	3 0.1	2 0.1	2 0.1	10 0.3	2 0.1	2 0.1	-	5 0.1	16 0.4	2 0.0	2 0.0
	가정폭력관련 종사자	20 1.0	9 0.4	28 1.2	14 0.6	42 1.6	37 1.2	65 1.9	53 1.5	66 1.9	85 2.4	101 2.6	79 1.8	105 2.3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74 3.7	39 1.7	153 6.6	180 7.6	190 7.1	332 10.8	305 8.9	259 7.6	263 7.5	322 9.1	290 7.6	382 8.9	283 6.1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	-	-	-	-	-	-	16 0.5	24 0.7	17 0.5	31 0.8	44 1.0	18 0.4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	-	-	-	-	-	30 0.9	36 1.0	46 1.3	38 1.0	45 1.1	34 0.7
	구급대의 대원	-	-	-	-	-	-	-	5 0.1	6 0.2	8 0.2	9 0.2	3 0.1	5 0.1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2 0.1	-	1 0.0	2 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	-	-	-	-	-	-	-	-	-	-	4 0.1
	응급구조사	-	-	-	-	-	-	-	-	-	-	-	-	-
	의료기사	-	-	-	-	-	-	-	-	-	-	-	-	-
	소계	169 8.3	101 4.4	324 14.0	409 17.3	498 18.6	682 22.2	716 20.8	573 16.7	645 18.3	709 20.1	707 18.5	751 17.5	635 13.7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신 고 의 무 자	학대피해노인본인	646	664	662	627	673	773	954	825	842	777	722	582	431
		32.2	29.2	28.6	26.5	25.2	25.2	27.7	24.1	23.9	22.0	18.9	13.6	9.3
	학대행위자본인	-	7	2	4	10	7	11	10	7	10	8	4	6
		-	0.3	0.1	0.2	0.4	0.2	0.3	0.3	0.2	0.3	0.2	0.1	0.1
	친족	729	662	555	633	643	640	716	606	592	519	567	500	407
		36.3	29.1	24.0	26.7	24.0	20.9	20.8	17.7	16.8	14.7	14.9	11.7	8.8
	타인	255	371	290	286	321	329	306	295	292	300	320	236	755
		12.7	16.3	12.5	12.1	12.0	10.7	8.9	8.6	8.3	8.5	8.4	5.5	16.3
	관련기관 ³³⁾	207	374	304	410	529	637	738	1,115	1,142	1,217	1,494	2,207	2,388
		10.3	16.4	13.1	17.3	19.8	20.8	21.4	32.6	32.4	34.5	39.1	51.6	51.7
	129연계*	-	55	143	-	-	-	-	-	-	-	-	-	-
		-	2.4	6.2	-	-	-	-	-	-	-	-	-	-
	기타	32	40	32	-	-	-	-	-	-	-	-	-	-
		1.6	1.8	1.4	-	-	-	-	-	-	-	-	-	-
소계	1,837	2,173	1,988	1,960	2,176	2,386	2,725	2,851	2,875	2,823	3,111	3,529	3,987	
	91.7	95.6	86.0	82.7	81.4	77.8	79.2	83.3	81.7	79.9	81.5	82.5	86.3	
계	2,006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29연계”의 경우 2008년부터 신고접수처로 분류됨



[그림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비율

33)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자립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4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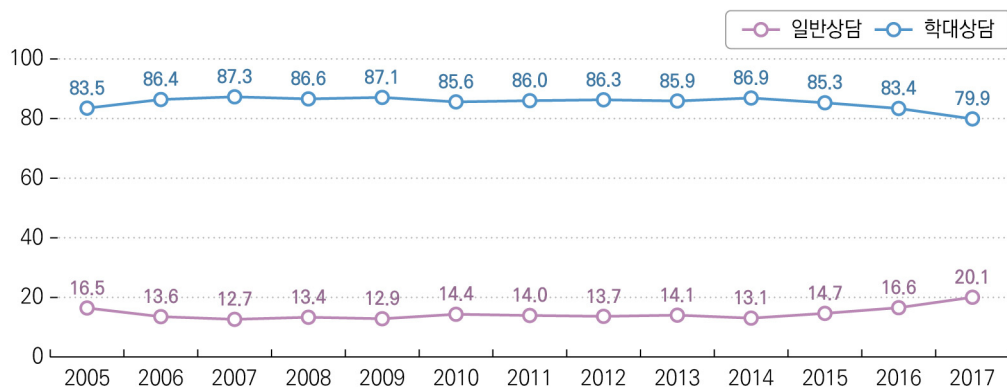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상담과 학대상담의 횟수 및 비율은 [표 7-1]의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신고접수 건수의 경우 일반사례가 65.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상담횟수는 학대상담의 비율이 일반상담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례 개입 정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일반사례의 경우에는 1~2회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반면 학대상담은 학대사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심층 상담과 학대피해노인과 그 가족에게 집중적인 상담이 제공되어 학대상담 횟수가 일반상담 횟수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7년 한해 전체 상담 건수는 전년대비 12.4% 증가('16년 98,932건 → '17년 111,245건) 하였으며 학대상담은 88,919건으로 전체 상담 중 79.9%이다.

[표 7-4]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단위: 회,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상담	2,732	3,006	3,988	5,485	6,934	8,099	9,383	10,378	11,177	10,860	13,462	16,464	22,326
	16.5	13.6	12.7	13.4	12.9	14.4	14.0	13.7	14.1	13.1	14.7	16.6	20.1
증감률	-	10.0	32.7	37.5	26.4	16.8	15.9	10.6	7.7	-2.8	24.0	22.3	35.6
학대상담	13,836	19,092	27,492	35,467	46,855	47,988	57,849	65,294	68,280	71,889	78,368	82,468	88,919
	83.5	86.4	87.3	86.6	87.1	85.6	86.0	86.3	85.9	86.9	85.3	83.4	79.9
증감률	-	38.0	44.0	29.0	32.1	2.4	20.5	12.9	4.6	5.3	9.0	5.2	7.8
계	16,568	22,098	31,480	40,952	53,789	56,087	67,232	75,672	79,457	82,749	91,830	98,932	111,24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증감률	-	33.4	42.5	30.1	31.3	4.3	19.9	12.6	5.0	4.1	11.0	7.7	12.4



[그림 7-4]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비율)

5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연도별 학대발생장소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가정 내 학대는 89.3%(4,129건)으로 2013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7년에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생활시설은 7.1%(327건)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추이를 나타냈다.

[표 7-5]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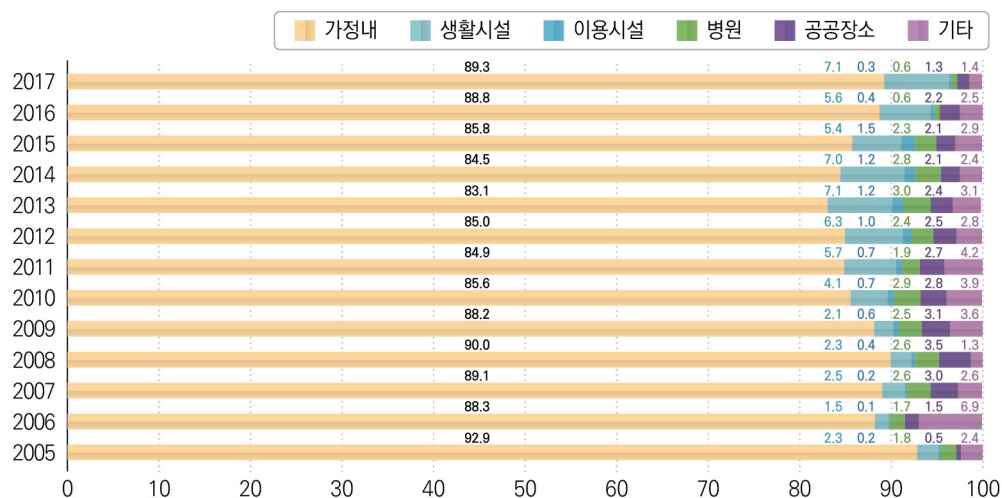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가정내	1,893	2,008	2,060	2,132	2,358	2,625	2,921	2,909	2,925	2,983	3,276	3,799	4,129
	92.9	88.3	89.1	90.0	88.2	85.6	84.9	85.0	83.1	84.5	85.8	88.8	89.3
생활시설	46	33	58	55	55	127	196	216 ^{주1)}	251 ^{주2)}	246 ^{주3)}	206 ^{주4)}	238 ^{주4)}	327 ^{주4)}
	2.3	1.5	2.5	2.3	2.1	4.1	5.7	6.3	7.1	7.0	5.4	5.6	7.1
이용시설	5	3	5	9	16	22	24	35	42	44	57	16	16
	0.2	0.1	0.2	0.4	0.6	0.7	0.7	1.0	1.2	1.2	1.5	0.4	0.3
병원	36	38	59	61	66	88	65	83	107	100	88	24	27
	1.8	1.7	2.6	2.6	2.5	2.9	1.9	2.4	3.0	2.8	2.3	0.6	0.6
공공장소	10	34	70	82	83	87	92	86	86	74	80	94	58
	0.5	1.5	3.0	3.5	3.1	2.8	2.7	2.5	2.4	2.1	2.1	2.2	1.3
기타	48	158	60	30	96	119	143	95	109	85	111	109	65
	2.4	6.9	2.6	1.3	3.6	3.9	4.2	2.8	3.1	2.4	2.9	2.5	1.4
계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임(2005년~2012년)

2)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임. 동 경우를 가정 내 학대로 포함할 경우, 203건(5.7%)

3)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임. 동 경우를 가정 내 학대로 포함할 경우, 190건(5.4%)

4)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가정 내 학대에 포함한 수치임(2015년~2017년)



[그림 7-5]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6 연도별 생활시설 학대 추이

생활시설 학대란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호에 해당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말한다. 생활시설 수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 후 큰 폭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2008년 2,179개소 → 2016년 5,588개소³⁴⁾). 생활시설의 양적 증가에 따라 생활시설 학대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생활시설 학대 건수는 전체 학대사례 4,622건 중 327건(7.1%)으로 2016년과 238건(5.6%)과 대비하여 37.4% 증가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2008년 이후 시점인 2009년(55건, 2.1%)과 비교하면 약 6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7-6] 연도별 생활시설 학대 추이

(단위: 건,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생활시설	46	33	58	55	55	127	196	216	251	246	206	238	327
	2.3	1.5	2.5	2.3	2.1	4.1	5.7	6.3	7.1	7.0	5.4	5.6	7.1
학대사례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34) 보건복지부 「2017 노인복지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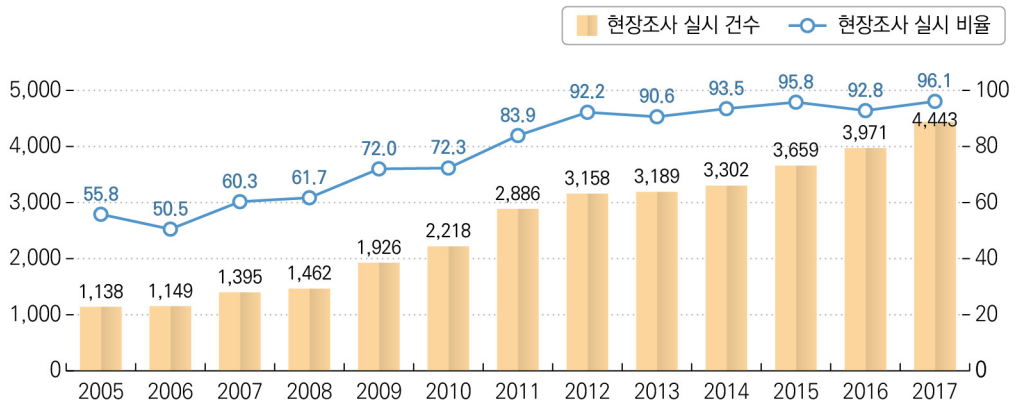
7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현장조사는 신고접수 된 학대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최초의 방문을 의미한다.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90.6%(3,189건)에서 2017년 96.1%(4,44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학대의심사례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등, 현장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최근 5년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실시 비율은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7-7] 연도별 현장조사 실시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현장조사 실시	1,138	1,149	1,395	1,462	1,926	2,218	2,886	3,158	3,189	3,302	3,659	3,971	4,443
	55.8	50.5	60.3	61.7	72.0	72.3	83.9	92.2	90.6	93.5	95.8	92.8	96.1
현장조사 미실시	900	1,125	917	907	748	850	555	266	331	230	159	476	179
	44.2	49.5	39.7	38.3	28.0	27.7	16.1	7.8	9.4	6.5	4.2	11.1	3.9
계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림 7-6] 연도별 현장조사 건수 및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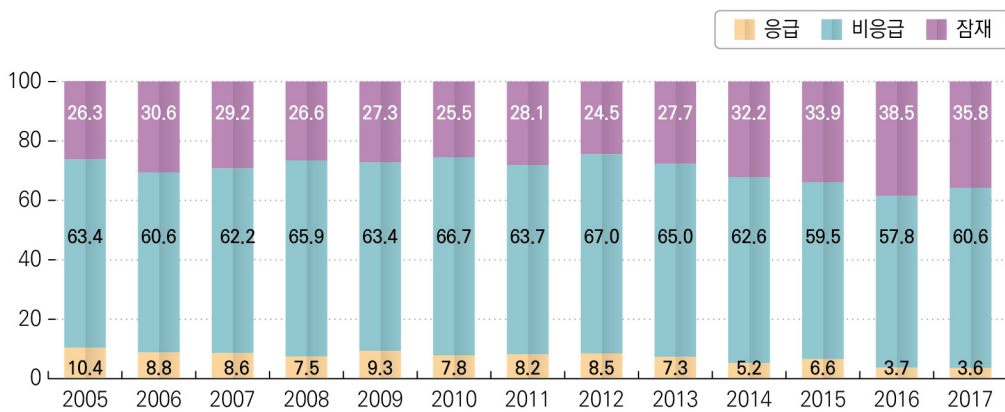
8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연도별 사례판정 결과를 살펴보면 응급사례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그 비율이 3.6%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비응급 사례는 60.6%로 전년 대비 2.8%p 증가하였으며, 잠재적 사례의 경우 2013년 대비 69.8%(13년 974건 → '17년 1,654건) 증가하였다.

[표 7-8]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단위: 건,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응급	211	200	199	177	250	240	283	291	258	184	251	159	165
	10.4	8.8	8.6	7.5	9.3	7.8	8.2	8.5	7.3	5.2	6.6	3.7	3.6
비응급	1,292	1,377	1,438	1,561	1,694	2,045	2,192	2,294	2,288	2,211	2,271	2,472	2,803
	63.4	60.6	62.2	65.9	63.4	66.7	63.7	67.0	65.0	62.6	59.5	57.8	60.6
잠재	535	697	675	631	730	783	966	839	974	1,137	1,296	1,649	1,654
	26.3	30.6	29.2	26.6	27.3	25.5	28.1	24.5	27.7	32.2	33.9	38.5	35.8
계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림 7-7] 연도별 사례판정 비율 추이

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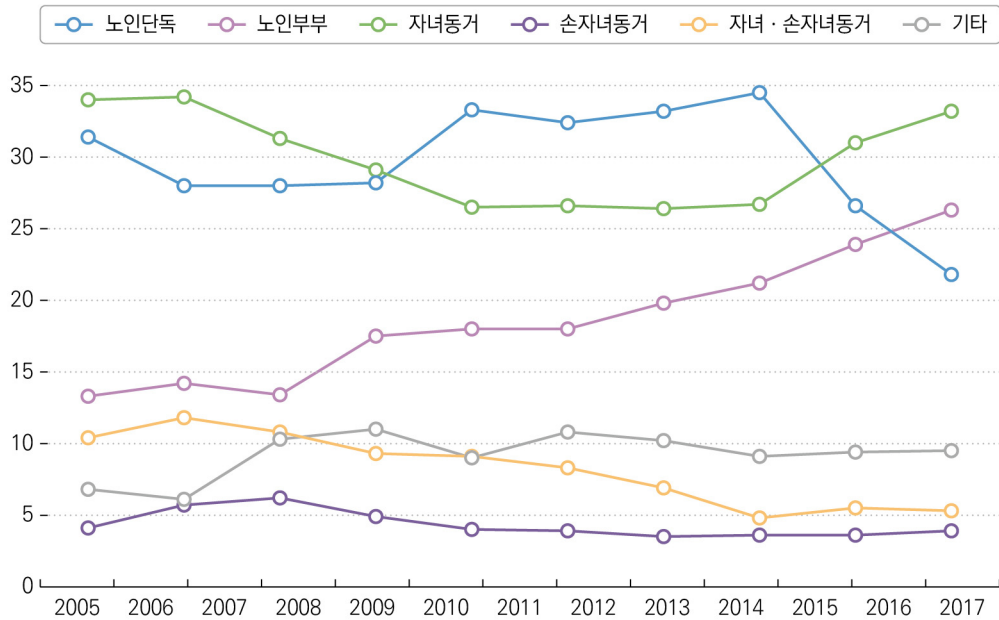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자녀동거가구가 33.2%로 가장 많고, 노인 부부가구 - 노인단독가구 - 기타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단독가구는 2015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노인부부 및 자녀동거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단독가구는 2012년 33.3%에서 2015년 34.5%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21.8%로 감소하였다. 노인부부가구는 2013년 18.0%에서 2017년 26.3%로 8.3%p 증가하였고,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2014년 26.4%까지 감소하였다가 2017년 33.2%로 크게 상승하였다.

[표 7-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노인단독	743	750	858	970	1,140	1,141	1,172	1,318	1,140	1,007
	31.4	28.0	28.0	28.2	33.3	32.4	33.2	34.5	26.6	21.8
노인부부	315	379	412	603	618	635	701	808	1,023	1,216
	13.3	14.2	13.4	17.5	18.0	18.0	19.8	21.2	23.9	26.3
자녀동거	806	914	960	1,003	909	937	932	1,021	1,328	1,536
	34.0	34.2	31.3	29.1	26.5	26.6	26.4	26.7	31.0	33.2
손자녀동거	97	153	190	167	136	137	123	139	154	178
	4.1	5.7	6.2	4.9	4.0	3.9	3.5	3.6	3.6	3.9
자녀·손자녀 동거	247	315	331	321	312	291	244	185	234	245
	10.4	11.8	10.8	9.3	9.1	8.3	6.9	4.8	5.5	5.3
기타	161	163	317	377	309	379	360	347	401	440
	6.8	6.1	10.3	11.0	9.0	10.8	10.2	9.1	9.4	9.5
계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림 7-8]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변화

10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보면 학대행위자 중 아들의 비율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배우자의 학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2005년 6.5%였던 것이 2017년에는 24.8%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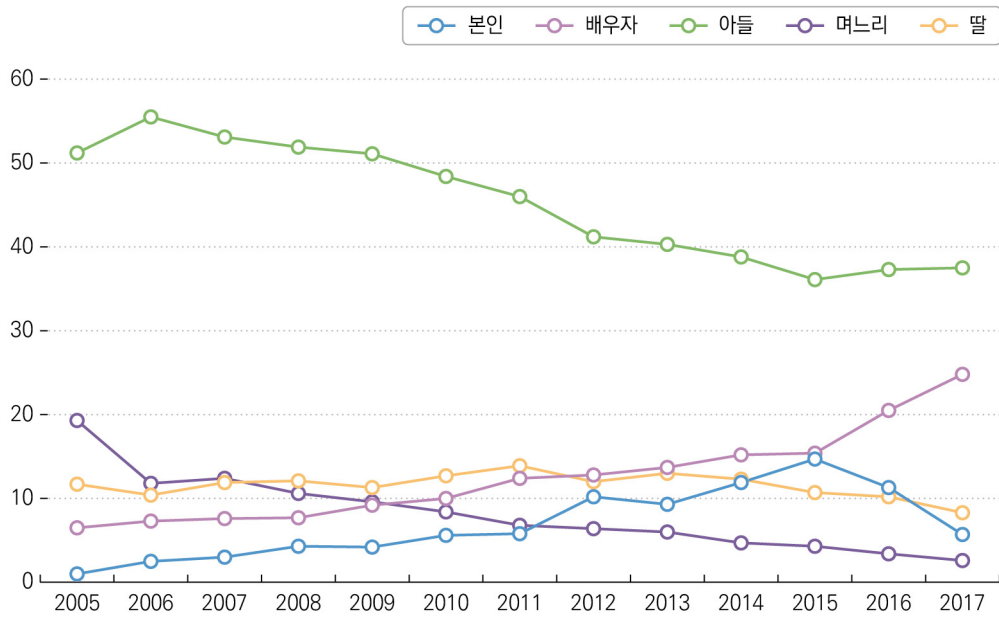
반면 본인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돌보지 않는 사례는 2016년 522건(11.3%)에서 2017년에는 290건(5.7%)로 감소한 반면, 손자녀에 의한 학대는 2014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 2017년에는 124(2.4%)를 나타냈다.

시설학대 증가와 함께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293건(7.3%) 대비 2017년 704건(13.8%)으로 140.3%의 증가율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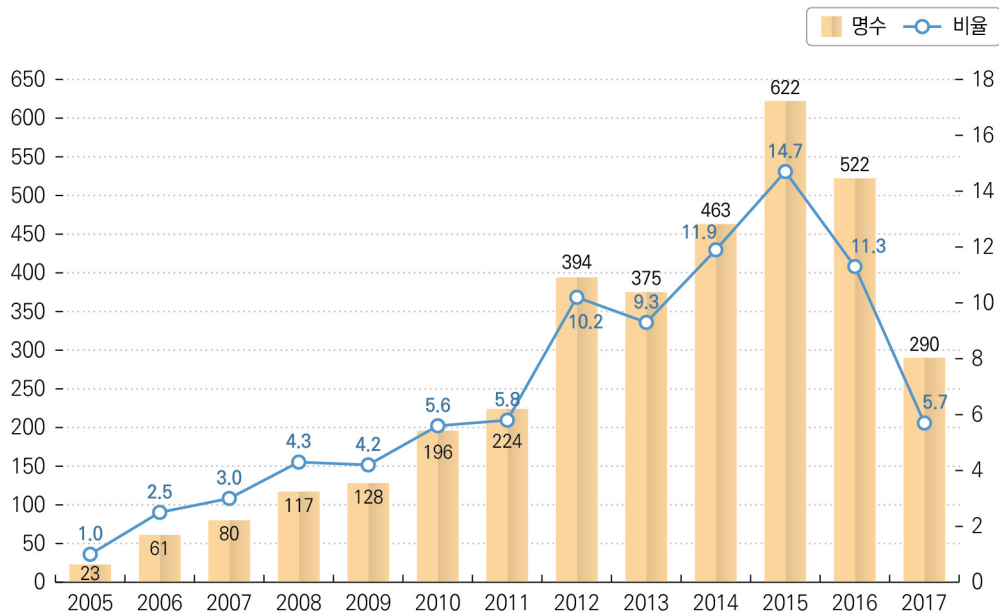
[표 7-10]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본인	23	61	80	117	128	196	224	394	375	463	622	522	290
	1.0	2.5	3.0	4.3	4.2	5.6	5.8	10.2	9.3	11.9	14.7	11.3	5.7
배우자	156	184	200	210	279	347	481	494	551	588	652	952	1,263
	6.5	7.3	7.6	7.7	9.2	10.0	12.4	12.8	13.7	15.2	15.4	20.5	24.8
아들	1,237	1,393	1,399	1,416	1,544	1,686	1,777	1,586	1,619	1,504	1,523	1,729	1,913
	51.2	55.5	53.1	51.9	51.1	48.4	46.0	41.2	40.3	38.8	36.1	37.3	37.5
며느리	466	296	328	290	291	293	263	248	240	184	183	157	131
	19.3	11.8	12.4	10.6	9.6	8.4	6.8	6.4	6.0	4.7	4.3	3.4	2.6
딸	283	260	315	330	342	441	538	463	519	476	451	475	424
	11.7	10.4	11.9	12.1	11.3	12.7	13.9	12.0	13.0	12.3	10.7	10.2	8.3
사위	25	26	27	20	28	37	25	27	28	18	21	23	27
	1.0	1.1	1.0	0.7	0.9	1.1	0.7	0.7	0.7	0.5	0.5	0.5	0.5
손자녀	45	52	51	50	58	73	87	69	81	56	64	103	124
	1.9	2.1	1.9	1.8	1.9	2.1	2.2	1.8	2.0	1.4	1.5	2.2	2.4
친척	38	36	46	42	59	55	64	67	54	56	46	63	49
	1.6	1.4	1.7	1.5	2.0	1.6	1.7	1.7	1.3	1.4	1.1	1.4	1.0
타인	75	136	127	193	228	237	228	239	253	246	283	221	176
	3.1	5.4	4.8	7.1	7.6	6.8	5.9	6.2	6.3	6.3	6.7	4.8	3.5
기관	70	28	59	62	62	115	179	267	293	285	379	392	704
	2.9	1.1	2.2	2.3	2.1	3.3	4.6	6.9	7.3	7.4	9.0	8.5	13.8
파악 안됨	-	36	4	-	-	-	-	-	-	-	-	-	-
	-	1.4	0.2	-	-	-	-	-	-	-	-	-	-
계	2,418	2,508	2,636	2,730	3,019	3,480	3,866	3,854	4,013	3,876	4,224	4,637	5,10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림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그림 7-10] 연도별 “학대행위자 본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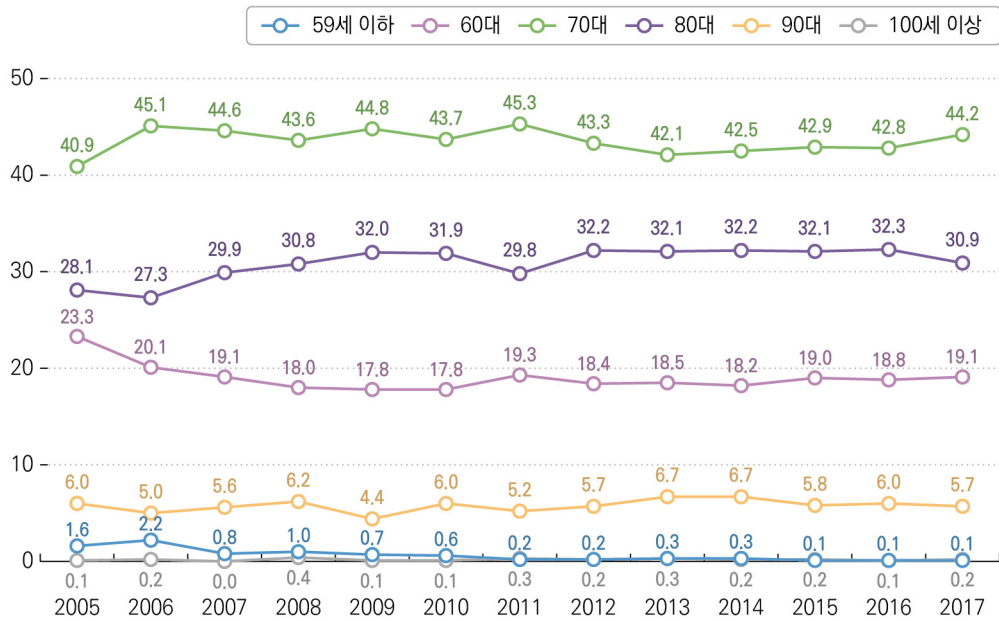
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연도별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를 보면 전체적인 추이는 연도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65세 미만의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70대와 86세 이상에서는 소폭 증가추이를 보였다.

[표 7-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단위: 건,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9세 이하	33	51	19	23	20	17	8	8	12	9	3	5	4
	1.6	2.2	0.8	1.0	0.7	0.6	0.2	0.2	0.3	0.3	0.1	0.1	0.1
60~64세	114	169	127	126	151	153	214	188	189	191	204	213	141
	5.6	7.4	5.5	5.3	5.6	5.0	6.2	5.5	5.4	5.4	5.3	5.0	3.1
65~69세	361	289	314	300	326	392	451	443	462	452	524	589	740
	17.7	12.7	13.6	12.7	12.2	12.8	13.1	12.9	13.1	12.8	13.7	13.8	16.0
70~74세	418	573	547	511	574	681	752	726	728	654	771	852	969
	20.5	25.2	23.7	21.6	21.5	22.2	21.9	21.2	20.7	18.5	20.2	19.9	21.0
75~79세	416	452	483	522	624	660	804	755	753	846	865	978	1,071
	20.4	19.9	20.9	22.0	23.3	21.5	23.4	22.1	21.4	24.0	22.7	22.9	23.2
80~84세	389	381	457	437	542	599	618	701	712	716	770	881	900
	19.1	16.8	19.8	18.4	20.3	19.5	18.0	20.5	20.2	20.3	20.2	20.6	19.5
85~89세	183	239	234	294	314	379	405	399	420	421	456	499	525
	9.0	10.5	10.1	12.4	11.7	12.4	11.8	11.7	11.9	11.9	11.9	11.7	11.4
90~94세	101	98	100	108	91	147	134	165	193	191	163	206	204
	5.0	4.3	4.3	4.6	3.4	4.8	3.9	4.8	5.5	5.4	4.3	4.8	4.4
95~99세	20	17	30	39	28	38	46	31	42	46	56	53	58
	1.0	0.7	1.3	1.6	1.0	1.2	1.3	0.9	1.2	1.3	1.5	1.2	1.3
100세 이상	3	5	1	9	4	2	9	8	9	6	6	4	10
	0.1	0.2	0.0	0.4	0.1	0.1	0.3	0.2	0.3	0.2	0.2	0.1	0.2
계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림 7-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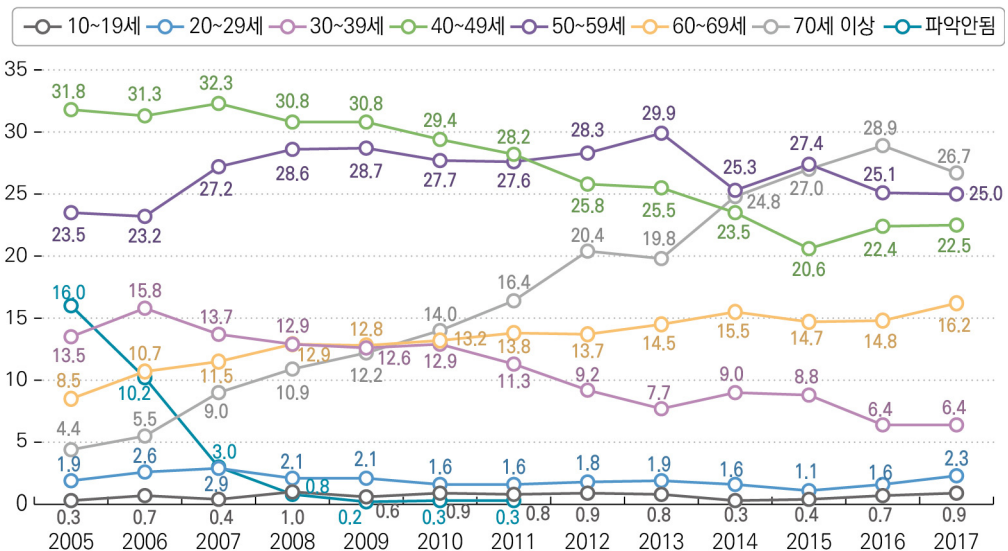
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연도별 학대행위자의 연령대 현황을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1,363건(26.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50~59세가 1,275건(25.0%)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성인자녀 등에 의한 학대 발생 비율이 높았던 이전과는 달리, 갈수록 노(老) - 노(老)학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017년에는 10대와 20대 비율이 소폭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표 7-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0~19세	7	18	11	26	19	32	30	34	31	12	18	33	46
	0.3	0.7	0.4	1.0	0.6	0.9	0.8	0.9	0.8	0.3	0.4	0.7	0.9
20~29세	46	65	77	57	62	55	61	69	75	63	46	76	115
	1.9	2.6	2.9	2.1	2.1	1.6	1.6	1.8	1.9	1.6	1.1	1.6	2.3
30~39세	327	396	361	353	381	449	436	353	310	347	372	296	325
	13.5	15.8	13.7	12.9	12.6	12.9	11.3	9.2	7.7	9.0	8.8	6.4	6.4
40~49세	770	783	851	841	930	1,022	1,090	993	1,022	911	870	1,040	1,150
	31.8	31.3	32.3	30.8	30.8	29.4	28.2	25.8	25.5	23.5	20.6	22.4	22.5
50~59세	569	583	718	781	866	964	1,068	1,091	1,201	981	1,156	1,166	1,275
	23.5	23.2	27.2	28.6	28.7	27.7	27.6	28.3	29.9	25.3	27.4	25.1	25.0
60~69세	205	268	302	353	386	460	536	528	580	602	622	687	827
	8.5	10.7	11.5	12.9	12.8	13.2	13.8	13.7	14.5	15.5	14.7	14.8	16.2
70세 이상	107	139	236	298	369	484	633	786	794	960	1,140	1,339	1,363
	4.4	5.5	9.0	10.9	12.2	14.0	16.4	20.4	19.8	24.8	27.0	28.9	26.7
파악안됨	387	256	80	21	6	12	12	-	-	-	-	-	-
	16.0	10.2	3.0	0.8	0.2	0.3	0.3	-	-	-	-	-	-
계	2,418	2,508	2,636	2,730	3,019	3,478	3,866	3,854	4,013	3,876	4,224	4,637	5,10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림 7-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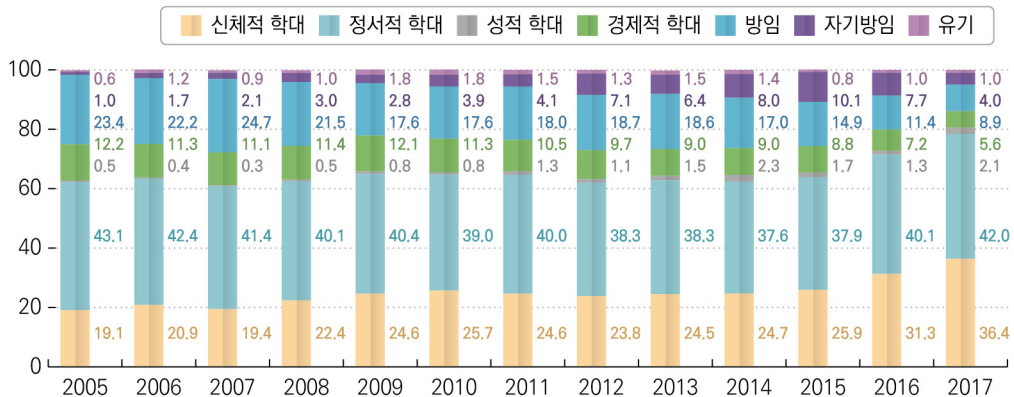
13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연도별 학대 유형 현황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성적 학대의 경우 2014년 이후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 2017년에는 2.1%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제적 학대와 방임, 자기방임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7-13]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단위: 건,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체적 학대	665	768	739	874	1,127	1,304	1,419	1,326	1,430	1,426	1,591	2,132	2,651
	19.1	20.9	19.4	22.4	24.6	25.7	24.6	23.8	24.5	24.7	25.9	31.3	36.4
정서적 학대	1,499	1,557	1,577	1,561	1,853	1,981	2,307	2,134	2,235	2,169	2,330	2,730	3,064
	43.1	42.4	41.4	40.1	40.4	39.0	40.0	38.3	38.3	37.6	37.9	40.1	42.0
성적 학대	18	15	12	20	37	39	72	63	90	131	102	91	150
	0.5	0.4	0.3	0.5	0.8	0.8	1.3	1.1	1.5	2.3	1.7	1.3	2.1
경제적 학대	425	415	422	446	554	574	607	540	526	521	542	491	411
	12.2	11.3	11.1	11.4	12.1	11.3	10.5	9.7	9.0	9.0	8.8	7.2	5.6
방임	816	816	941	839	806	891	1,038	1,042	1,087	984	919	778	649
	23.4	22.2	24.7	21.5	17.6	17.6	18.0	18.7	18.6	17.0	14.9	11.4	8.9
자기방임	36	61	80	117	129	196	236	394	375	463	622	523	291
	1.0	1.7	2.1	3.0	2.8	3.9	4.1	7.1	6.4	8.0	10.1	7.7	4.0
유기	22	43	34	40	82	91	86	71	89	78	48	66	71
	0.6	1.2	0.9	1.0	1.8	1.8	1.5	1.3	1.5	1.4	0.8	1.0	1.0
계	3,481	3,675	3,805	3,897	4,588	5,076	5,765	5,570	5,832	5,772	6,154	6,811	7,28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림 7-13] 연도별 학대 유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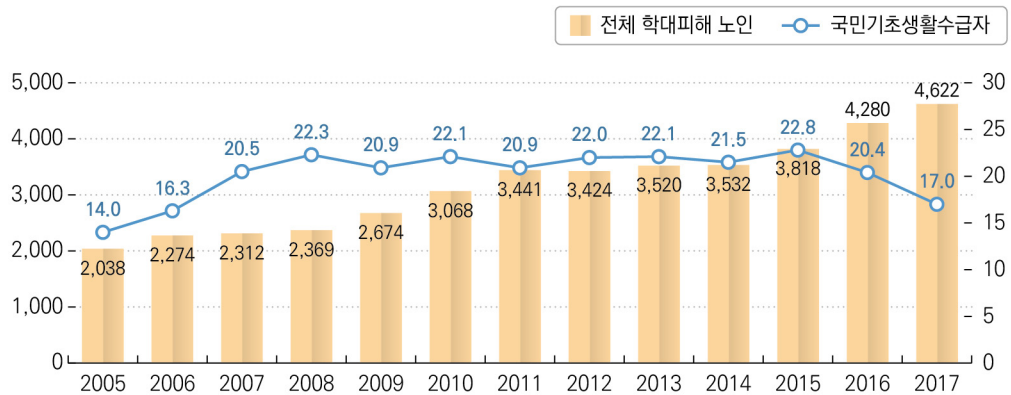
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연도별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285명에서 2017년 785명으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학대피해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중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간 20%대였으나 2017년에는 17.0%로 감소하였다.

[표 7-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285	370	474	528	559	679	719	753	778	758	870	871	785
	14.0	16.3	20.5	22.3	20.9	22.1	20.9	22.0	22.1	21.5	22.8	20.4	17.0
전체 학대피해 노인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그림 7-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수급자 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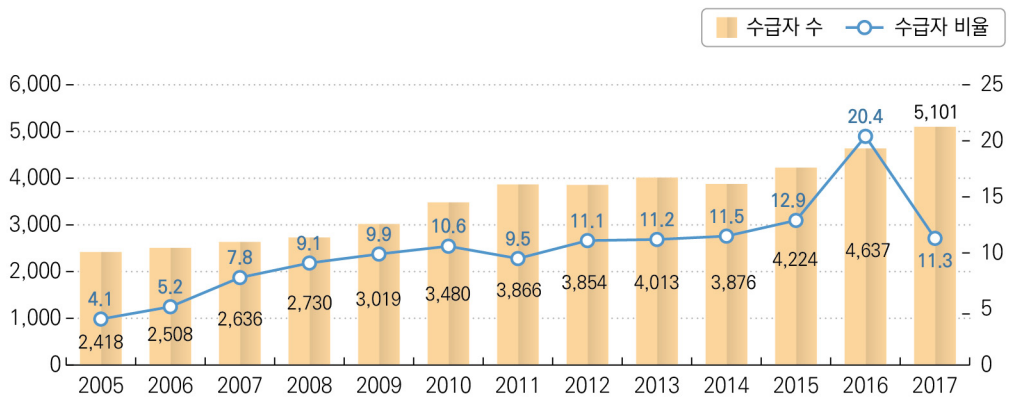
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연도별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7년에는 11.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100	130	206	248	300	369	367	429	449	445	546	947	575
	4.1	5.2	7.8	9.1	9.9	10.6	9.5	11.1	11.2	11.5	12.9	20.4	11.3
전체 학대행위자	2,418	2,508	2,636	2,730	3,019	3,480	3,866	3,854	4,013	3,876	4,224	4,637	5,101



[그림 7-15] 연도별 학대행위자 수급자 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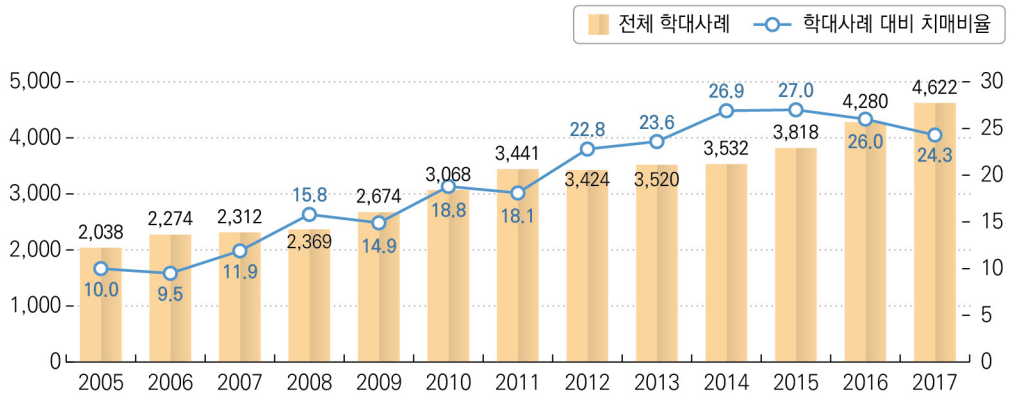
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학대피해노인의 치매정도는 학대피해노인이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치매진단과 상담원이 상담과정에서 파악한 객관적, 주관적 정보와 함께 치매간이조사지표³⁵⁾를 활용하여 치매가 의심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치매의심으로 분류된다. 치매진단을 받았거나 치매가 의심되는 사례는 2013년 831건에서 2017년 1,122건으로 35.0% 증가하였다. 학대사례 대비 치매의심 및 진단사례 비율은 2016년부터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7-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 추이

(단위: 건,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학대사례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치매정도	치매의심	157	159	174	248	264	386	389	452	459	488	561	488
	치매진단	47	56	102	126	135	191	233	330	372	461	469	634
	계	204	215	276	374	399	577	622	782	831	949	1,030	1,122
학대사례 대비 치매의심 및 진단사례 비율	10.0	9.5	11.9	15.8	14.9	18.8	18.1	22.8	23.6	26.9	27.0	26.0	24.3



[그림 7-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 추이

35)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 version of MMSE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

17 연도별 종결사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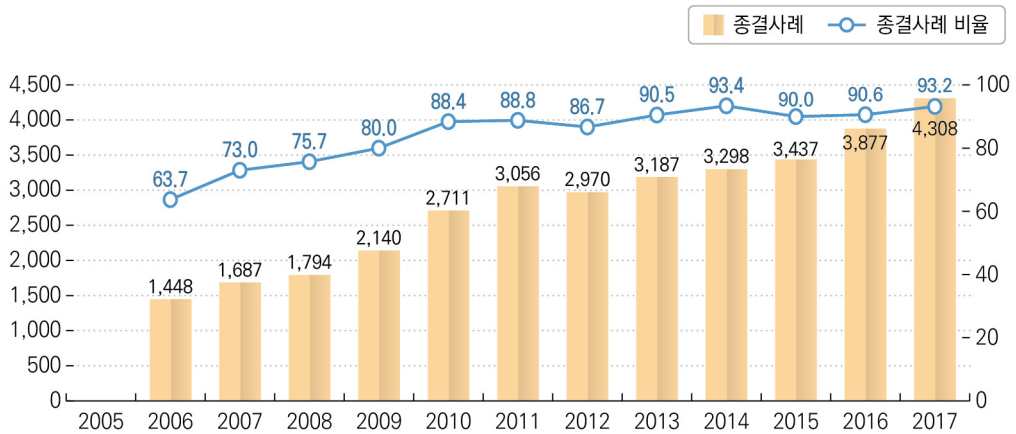
연도별 종결사례의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약 90% 이상의 종결률을 보이며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그 비율이 전년대비 2.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7] 연도별 종결사례 현황

(단위: 건,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종결사례	-	1,448	1,687	1,794	2,140	2,711	3,056	2,970	3,187	3,298	3,437	3,877	4,308
	-	63.7	73.0	75.7	80.0	88.4	88.8	86.7	90.5	93.4	90.0	90.6	93.2
진행사례	-	826	625	575	534	357	385	454	333	234	381	403	314
	-	36.3	27.0	24.3	20.0	11.6	11.2	13.3	9.5	6.6	10.0	9.4	6.8
계	-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2005년 미분석



[그림 7-17] 연도별 종결사례 현황

18 연도별 종결사유

종결사유는 피해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사망, 학대피해노인 분리, 학대행위자분리 및 상황개선, 학대피해노인 개입거부, 지지자원 거부 및 서비스제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매년 종결된 사례 중 사망, 학대피해노인 분리, 학대행위자 분리, 상황개선 등의 종결사유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8] 연도별 종결사유

(단위: 건, %)

분 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망	피해자사망	50	48	50	82	74	48	64	78	80	83	101
		3.0	2.7	2.4	3.0	2.4	1.6	2.0	2.4	2.3	2.1	2.3
	학대행위자사망	6	1	2	7	1	4	11	12	8	15	17
		0.4	0.1	0.1	0.3	0.0	0.1	0.3	0.4	0.2	0.6	0.4
	소계	56	49	52	89	75	52	75	90	88	98	118
		3.3	2.7	2.5	3.3	2.5	1.8	2.4	2.7	2.6	2.5	2.7
학대피해 노인분리	독립 (피해자)	71	37	41	53	82	85	94	113	79	150	214
		4.2	2.1	2.0	2.0	2.7	2.9	2.9	3.4	2.3	3.9	5.0
	타가족동거 (피해자)	51	49	60	87	139	78	93	71	66	127	150
		3.0	2.7	2.9	3.2	4.5	2.6	2.9	2.2	1.9	3.3	3.5
	시설입소 (피해자)	134	116	146	180	183	202	194	172	201	198	226
		7.9	6.5	7.0	6.6	6.0	6.8	6.1	5.2	5.8	5.1	5.2
	병원입원 (피해자)	57	87	79	128	185	154	173	184	187	185	183
		3.4	4.8	3.8	4.7	6.1	5.2	5.4	5.6	5.4	4.8	4.2
	소계	313	289	326	448	589	519	554	540	533	660	773
		18.6	16.1	15.5	16.5	19.3	17.5	17.4	16.4	15.5	17.0	17.9
학대 행위자 분리	독립 (학대행위자)	53	25	43	37	71	37	53	52	54	119	195
		3.1	1.4	2.0	1.4	2.3	1.2	1.7	1.6	1.6	3.1	4.5
	시설입소 (학대행위자)	5	4	4	12	18	3	7	19	20	16	24
		0.3	0.2	0.2	0.4	0.6	0.1	0.2	0.6	0.6	0.4	0.6
	병원입원 (학대행위자)	49	50	103	120	152	114	99	106	155	171	237
		2.9	2.8	4.9	4.4	5.0	3.8	3.1	3.2	4.5	4.4	5.5
	형사처벌 (학대행위자)	10	11	9	7	25	20	32	37	35	51	49
		0.6	0.6	0.4	0.3	0.8	0.7	1.0	1.1	1.0	1.3	1.1
	소계	117	90	159	176	266	174	191	214	264	357	505
		6.9	5.0	7.6	6.5	8.7	5.9	6.0	6.5	7.7	9.2	11.7

분 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황개선	부양강화	145	186	210	288	380	298	293	253	260	226	206
		8.6	10.4	10.0	10.6	12.4	10.0	9.2	7.7	7.6	5.8	4.8
	지지자원 강화	200	310	304	371	510	557	542	642	714	573	439
		11.9	17.3	14.5	13.7	16.7	18.8	17.0	19.5	20.7	14.8	10.2
	학대행위자 태도변화	365	259	382	463	545	578	673	765	743	1,062	1,385
		21.6	14.4	18.2	17.1	17.8	19.5	21.1	23.2	21.6	27.4	32.1
소계	710	755	896	1,122	1,435	1,433	1,508	1,660	1,717	1,861	2,030	
	42.1	42.1	42.7	41.4	47.0	48.2	47.3	50.3	49.9	48.0	47.1	
서비스 제한	지지자원 거부	75	92	97	86	29	122	117	145	144	134	136
		4.4	5.1	4.6	3.2	0.9	4.1	3.7	4.4	4.2	3.5	3.2
	내담자의 무리한 요구	69	87	107	116	68	130	115	109	91	92	73
		4.1	4.8	5.1	4.3	2.2	4.4	3.6	3.3	2.6	2.4	1.7
	기타 (이민 및 이주 등)	20	67	54	72	30	104	134	132	159	134	105
		1.2	3.7	2.6	2.7	1.0	3.5	4.2	4.0	4.6	3.5	2.4
소계	164	246	258	274	127	356	366	386	394	360	314	
	9.7	13.7	12.3	10.1	4.2	12.0	11.5	11.7	11.4	9.3	7.3	
개입거부	피해자 개입거부	302	321	364	461	555	383	439	350	368	458	486
		17.9	17.9	17.3	17.0	18.2	12.9	13.8	10.6	10.7	11.8	11.3
의뢰	타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의뢰	7	20	18	54	2	11	21	10	15	25	18
		0.4	1.1	0.9	2.0	0.1	0.4	0.7	0.3	0.4	0.6	0.4
	타기관 의뢰	18	24	27	87	7	42	33	48	63	58	64
		1.1	1.3	1.3	3.2	0.2	1.4	1.0	1.5	1.8	1.5	1.5
소계	25	44	45	141	9	53	54	58	78	83	82	
	1.5	2.5	2.1	5.2	0.3	1.8	1.7	1.8	2.3	2.1	1.9	
계	1,687	1,794	2,100	2,711	3,056	2,970	3,187	3,298	3,442	3,877	4,30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hapter 08

결론

1.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2. 노인학대 사례분석 결과
3. 특성별 노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

1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1) 신고접수 건수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된 모든 사례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사례가 접수되면 노인학대 여부, 응급성 정도 및 학대 지속성 여부 등의 정보를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접수의 단계는 접수 된 사례를 학대사례 혹은 일반사례로 판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의 실태와 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신고접수 된 전체 신고 건수는 13,309건으로, 전년도 대비 10.8%(12,009건 → 13,309건)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의 신고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도 대비 전체 신고 건수는 31.0%(10,162건 → 13,309건) 증가하였으며, 이 중 학대사례는 31.3%(3,520건 → 4,622건), 일반사례는 30.8%(6,642건 → 8,687건)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01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학대사례의 비중이 8.0%(4,280 → 4,6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고 건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 하는 원인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발한 교육 및 홍보활동과 신고경로 확대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된 긴급 신고전화(110, 112, 129)에 의해 노인학대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노인돌봄서비스생활관리사, 노인일자리사업, 희망복지지원단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사례들이 노인 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 될 수 있도록 2017년에도 경로를 대폭 확장하였다. 이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인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112와 같은 익숙한 번호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그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신고자 유형

노인학대 신고자의 유형은 크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되며 신고의무자의 경우 노인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한다. 신고의무자의 경우 노인학대를 발견 하게 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³⁶⁾ 현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은 2004년 노인학대 관련 법 개정

당시 5개 직업군에서 2011년 8개 직업군으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 10월 개정 노인 복지법에 따라 14개 직업군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2017년 신고접수 된 4,622건의 학대사례 중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수는 635건으로 전체의 13.7%로 집계되었다. 신고의무자 세부유형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44.6%(283건)를 차지해 가장 높은 신고율을 보인 반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구급대의 대원, 의료인 등은 각각 0.3%(2건), 0.8%(5건), 3.1%(20건) 등으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주 이용자가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오히려 노인이라는 특정 계층에서 발생하는 학대사례를 발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로 가족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가족상담 등을 통해 위기가정이나 취약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파악하거나 은폐되어 왔던 학대사례들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의료인과 구급대의 대원 또한 학대피해노인이 병원을 내원하거나 학대피해로 의심되는 현장에 출동했을 시 표면적으로 드러난 학대 발생 징후들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신고의무자 집단은 노인학대사례에 접근성이 용이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신고의무자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학대사례의 조기발견 및 사례발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비신고의무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는 비신고의무자는 전체의 59.9%(2,388건)를 차지한 관련기관으로, 사회복지관련, 경찰, 관련 민간 기관, 노인학대 예방 및 발굴을 위한 각 지역기관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단인 지킴이단 등에 의한 신고를 뜻한다. 뒤이어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동거인, 친구 등 타인이 신고한 비율이 18.9%(755건), 학대피해노인 본인이 신고한 비율이 10.8%(431건), 친족에 의한 신고가 10.2%(407건)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의무자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민감성 및 인식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3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보다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상담횟수

2017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13,309건에 대한 전체 상담횟수는 111,245회로 학대 상담 횟수가 88,919회(79.9%), 일반상담은 22,326회(20.1%)로 나타났다.

학대상담의 경우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 등의 여러 단계에 걸쳐 상담이 진행되는 반면 일반상담의 경우 단순 정보제공의 경우가 많아 한 사례당 1~2회의 상담이 대부분으로 전체 신고건수 대비 상담횟수는 학대상담 19.2회, 일반상담 2.6회로 나타났다.

2 노인학대 사례분석 결과

1)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 학대 유형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근거하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등으로 분류된다.

2017년 집계된 노인학대 유형은 총 7,287건으로 학대피해노인이 경험한 한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을 중복으로 집계한 것이다. 보통 학대 유형은 한 가지 학대만 발생되기 보다는 다른 학대 유형과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중복 집계된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가 3,064건(42.0%), 신체적 학대가 2,651건(36.4%), 방임이 649건(8.9%)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이 87.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외 학대 유형으로는 경제적 학대 411건(5.6%), 자기방임 291건(4.0%), 성적 학대 150건(2.1%), 유기 71건(1.0%) 등이 있다.

특히 자기방임 유형의 경우 학대피해노인 스스로가 본인을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돌보지 않는 것으로 보통 혼자 사는 노인단독가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노인단독가구의 연도별 자기방임 유형건수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단독가구 증가에 따른 자기방임 유형 증가에 대한 해결을 위해 독거노인돌봄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노인단독가구의 학대 발생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학대발생원인

① 학대행위자 원인

학대행위자 원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8,415건 중 개인의 내적문제가 2,899건(34.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의 외적문제가 1,496건(17.8%)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 개인의 내적·외적 기질적 특성으로 인한 원인이 52.3%로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가 1,095건(13.0%), 정신적 의존성이 953건(11.3%), 경제적 의존성으로 인한 원인이 924건(11.0%) 등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내적인 문제는 분노, 고집스런 성격,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사회적 반응의 결핍, 적대적 행위, 충동적 성격, 폭력적 성격, 사회적 고립, 정서적 욕구불만 등의 성격문제를 포함한다. 개인의 외적 문제는 학대행위자의 이혼, 재혼, 부부갈등, 스트레스(부양부담 스트레스 외), 실직 등이 해당된다. 알코올 및 약물장애는 알코올 및 약물의 중독이나 의존을 의미하며, 정신적 의존성은 학대행위자의 정신적 문제로 인해 학대피해노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정신질환 및 우울증 등이 있다.

경제적 의존성으로는 학대행위자가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소득이 낮아 학대피해노인에게 금전적인 부분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대피해노인 부양부담은 학대피해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감 및 책임감으로 정신적 또는 경제적인 부담감을 의미한다. 과거 학대받은 경험은 학대행위자가 아동이었을 때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의존성은 학대행위자의 신체적 질환, 장애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학대피해노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가족 - 환경 원인

가족 - 환경 원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발생원인 4,329건으로 그 중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갈등이 2,709건(6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피해자와의 갈등관계가 학대발생의 주 요인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 외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자녀 간, 형제 간, 친족 간)은 1,005건(23.2%),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615건(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대피해노인 - 학대행위자 갈등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의미하며,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은 부모 부양문제, 재산 문제 등으로 학대피해노인 자녀 간, 형제 간, 친족 간의 갈등으로 여러 사람이 갈등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학대피해노인의 부양문제로 인한 부양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한다.

▶ 학대발생빈도 및 학대지속기간

학대피해노인의 학대발생빈도 현황을 살펴보면 1주일에 한번 이상이 1,471건(31.8%), 1개월에 한번 이상이 1,243건(26.9%), 매일이 717건(15.5%)으로 한 달 이내의 학대발생 빈도가 74.2%로 대다수의 학대피해노인이 반복적인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지속기간은 5년 이상이 1,591건(34.4%), 1년 이상 5년 미만이 1,508건(32.6%)으로 학대발생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67.0%로 학대피해노인의 절반 이상이 장기간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장소는 학대가 발생한 공간에 따라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를 보면 가정 내 학대는 학대피해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이 행하는 학대를 의미한다. 생활시설 학대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요양 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를 말하며 이용시설 학대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및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방문 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및 기타 재가서비스 등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를 말한다.

2017년 접수된 노인학대사례의 학대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가 4,129건으로 총 신고건수의 89.3%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의 경우 소폭이지만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였는데, 이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노인요양시설의 증가가 시설학대 건수의 증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작년 대비 65.9% 증가(176건→292건)한 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43.5% 감소(62건→35건)하였다.

2) 학대피해노인 현황

▶ 성별 및 연령대

학대피해노인의 성별을 보면 여성노인이 3,460명(74.9%), 남성노인이 1,162명(25.1%)으로 나타나며, 연령분포는 70~80대(남성노인 77.9%, 여성노인 74.1%)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85세 이상 고령의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이 173명(3.7%), 여성노인이 624명(13.5%)으로 나타나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고령의 여성노인일수록 남성노인에 비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 가구형태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자녀동거가구가 1,536명(33.2%)으로 가장 높았고, 노인부부가구가 1,216(26.3%), 노인단독가구가 1,007명(2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노인단독가구('16년 1,140명 → '17년 1,007명)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노인부부가구('16년 1,023명 → '17년 1,216명)는 2.4%p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세부구성 비율은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나 전체 비율은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도 전체 학대사례의 약 48.1%로 절반 수준을 차지하였다. 노인부부가구가 배우자 사망 등으로 인하여 노인단독가구로 전환될 경우 방임 등의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구형태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주거형태

학대피해노인의 주거형태는 자택, 전세, 월세, 영구임대, 의료시설, 무상으로 구분되며, 피해노인의 경제적 능력과 주거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어 노인을 둘러싼 내·외부 자원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학대피해노인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본인명의로 된 집에서 사는 학대피해노인이 2,793명(60.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세가 463명(10.0%), 월세가 454명(9.8%)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1인이 사는 단독가구의 주거형태의 경우 전년도는 월세(24.6%) - 자택(38.7%) - 전세(10.8%)의 순인 반면, 2017년에는 자택(44.4%) - 월세(19.8%) - 전세(10.2%)로 나타나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 교육수준

학대피해노인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무학 및 초졸 이하가 75.1%로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1920~50년대에 유년기를 보낸 노인들이 시대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마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순히 낮은 교육수준이 노인학대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 발생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건강상태

① 학대피해노인의 질병유형

학대피해노인 중 하나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질병의 건수는 3,905건이며 세부 질병 유형을 보면 고혈압이 776건(19.9%), 기타가 678건(17.4%), 관절염이 668건(17.1%), 당뇨병이 482건(12.3%)으로 나타나 노인성 질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대피해노인이 중복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② 학대피해노인의 장애유형

2017년 학대피해노인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496명(10.7%)으로, 이 중 85.9%(426명)가 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학대피해노인의 신체장애는 77.0%(382건), 정신장애 23.0%(114건)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28.2%(140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우울장애 16.9%(84건), 청각장애 16.5%(82건) 순으로 나타났다.

③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는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치매진단과 상담원이 상담과정에서 실시한 치매간이조사지표의 결과 또는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로 의심되는 치매 의심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치매로 분류된 사례는 전체 학대피해건수 중 1,122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24.3%이다. 2016년과 비슷한 수준(전년대비 0.7% 증가, 1,114건→1,122건)을 보인다. 이 중 488건(10.6%)은 치매의심이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진단은 634건(13.7%)이다.

④ 학대피해노인의 중독유형

학대행위자의 중독유형은 중독성을 지닌 항목의 중독여부와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박중독, 알코올 사용 장애, 약물 사용 장애 등이 해당된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거나, 알코올 의존비율이 높은 경우를 의미하고, 약물 사용 장애도 마찬가지로 약물 중독 진단을 받았거나, 약물 의존비율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전체 학대사례 4,622건 중 학대피해노인의 중독유형은 63건(1.4%)이었으며, 이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6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 제공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공서비스는 크게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상담서비스는 개별 및 집단상담, 가족상담, 관련자상담, 심리 및 기타검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복지서비스는 국민기초수급권, 긴급복지지원, 가족지원서비스, 재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 연결, 후원 연결, 직접 후원 등을 말한다. 법률서비스는 법률상담 연결, 법률 소송 지원, 학대 행위자 고소고발로 분류되며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송, 의료기관 서비스제공, 방문간호 등의 연계, 이송 및 동행 지원과 의료비 지급이 해당된다. 보호서비스는 지킴이 연결, 시설보호, 일시보호 등이 있다.

2017년 접수된 학대사례 중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제공서비스는 총 128,134회이며 상담서비스가 76,235회(59.5%)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서비스가 40,148회(31.3%), 복지서비스 제공이 9,336회(7.3%)순으로 나타났다.

3) 학대행위자 현황

▶ 성별 및 연령대

2017년 학대행위자 수는 5,101명으로 남성은 3,585명(70.3%)이며 여성은 1,516명(29.7%)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수가 약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연령대를 살펴보면, 남성 학대행위자의 경우 70세 이상이 1,092명(30.5%), 여성 학대행위자는 50대가 452명(29.8%)으로 가장 많았다.

▶ 학대행위자 유형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는 친족, 피해자 본인, 타인, 기관으로 분류된다. 친족은 다시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등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되며 타인은 동거인, 이웃 등으로, 기관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기타기관 관련 종사자로 분류된다.

학대행위자 전체 5,101명과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족이 3,931명(77.1%), 기관 704명(13.8%), 피해자 본인 290명(5.7%), 타인 176명(3.5%)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학대행위자가 친족인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들이 1,913명(37.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배우자 1,263명(24.8%), 딸 424명(8.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2005년 이후 계속해서 비율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부부간의 학대에 관한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다.

▶ 결혼유형

학대행위자의 결혼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 있음이 2,922명(57.3%), 배우자 없음이 2,179명(42.7%)으로 나타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세부 유형별로는 초혼이 2,620명(51.4%)으로 가장 많고, 미혼은 1,242명(24.3%), 이혼이 605명(11.9%)순으로 나타났다.

▶ 교육정도

학대행위자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학대행위자 중 5,101명 중 고졸이 38.8%인 1,97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995명(19.5%)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졸 이하는 2,128명(41.7%)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의 교육정도는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 건강상태

① 장애유형

전체 학대행위자 5,101명 중 608명(11.9%)의 학대행위자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신체장애가 30.4%(184명), 정신장애가 69.7%(424건)를 차지하였다. 특히 정신장애 중에서도 조현병이 191명(3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장애가 110명(18.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학대행위자의 정신장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② 중독유형

전체 학대행위자 5,101명 중 835명(16.4%)이 알코올 등의 중독이 있으며, 이는 학대 피해노인(63건, 1.4%)에 비하며 약 13배정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알코올 사용 장애가 801명(15.7%), 도박중독은 18명(0.4%), 약물 사용 장애 16명(0.3%) 순이다.

▶ 제공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2017년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20,502회로 상담서비스의 경우 총 12,078회(59.0%)를 제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재학대 예방교육 및 기타 정보제공에 관한 정보제공서비스는 7,483회(36.5%)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직접 후원 등의 복지서비스가 734회(3.4%), 의료서비스가 191회(0.9%), 법률서비스가 16회(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상담서비스와 정보제공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3 특성별 노인학대 사례분석 결과

1) 신고의무자에 따른 신고사례

2017년 신고 된 전체 신고건수 13,309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1,197건으로 전체의 9%를 차지하였다. 이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510건(3.8%)으로 가장 높은 신고율을 보였으며,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이 375건(2.8%), 가정폭력관련종사자가 131건(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로 판정된 4,622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635건이며, 이 중 비응급 사례가 399건(62.8%), 잠재적 사례가 189건(29.8%), 응급 사례가 47건(0.6%)로 나타나, 비응급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 된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309건, 32.4%) - 신체적 학대(265건, 27.8%) - 방임 161건(16.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의무자 신고건수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신고의무자 직군이 가정 내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의 경우 생활시설이나 기타 등의 장소에서 발생한 학대를 신고하는 등 타 직군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분표를 보였다.

학대발생빈도에 있어서는 매일 혹은 1주일에 한번 이상 잦은 빈도로 발생하는 학대 사례의 경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보다 약 13%p 높게 나타나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일회성이거나 학대발생빈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보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약 13%p 높게 나타나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학대지속기간의 경우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등 장기간 지속된 학대일 때 신고의무자보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약 3%p 높게 나타났으며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비교적 단기간 발생한 학대는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비신고의무자보다 약 6%p 높았다.

특히 종결사유 중 학대피해노인의 개입거부로 인한 경우 신고의무 여부에 따라 7.1%p 차이를 보였다. 즉 비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신고했을 경우 학대피해노인의 개입거부가 12.3%인 반면,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학대피해노인의 개입거부는 5.2%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은폐되어있는 학대사례를 새롭게 발굴하는 것 뿐 만 아니라, 학대피해노인이 자신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문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인지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재학대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 된 사례를 의미한다.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재학대 건수는 359건으로 전체 학대사례 4,622건 중 7.8%에 해당되며 전년보다 44.2%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재학대 발생여부는 사례 종결의 적절성, 종결사유, 사후관리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사례종결 이후 원가정 및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 학대행위자와의 분리, 시설 혹은 병원 입소 등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향성을 둔 분석을 통해 재학대 감소에 대한 원인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학대 사례의 주요 신고자는 전체의 88.9%를 차지한 비신고의무자로 나타났다. 특히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도 학대피해노인 본인의 신고비율이 신규사례(9.0%)보다 재학대 사례(13.1%)에서 높았으며, 관련기관 신규사례 신고비율(63.7%)에 비해 재학대 사례 신고비율(65.5%)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전의 개입 경험을 통해 노인학대의 개념과 신고방법 등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학대 학대피해노인의 성별비율(남성노인 21.4%, 여성노인 78.6%)은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성별비율(남성노인 25.1%, 여성노인 74.9%)과 비교했을 때도 여성노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연령대에 따른 성별 비율의 경우 80대 이상의 고령 재학대 피해노인은 남성노인이 36.4%, 여성노인이 32.0%로 나타나 남성 재학대피해노인의 고령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사례의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의 경우 자녀동거가구(150건, 41.8%) - 노인부부가구(99건, 27.6%) - 노인단독가구(65건, 18.1%)의 순이었다. 신규사례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의 가구형태가 자녀동거가구(1,386건, 32.5%) - 노인부부가구(1,117건, 26.2%) - 노인단독가구(942건, 22.1%)인 것과 비교해보면, 재학대 사례가 신규사례에 비해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신규사례의 학대행위자 유형이 아들(1,726건, 36.5%) - 배우자(1,158건, 24.5%) - 기관(700건, 14.8%) 순인 반면, 재학대 사례는 아들(187건, 49.7%) - 배우자(105건, 27.9%) - 딸(25건, 6.6%) 순으로 높았다. 특히 재학대의 경우 기관의 비율이 신규사례보다 13.7%p 차이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통해 학대발생원인을 제거하였거나 혹은 행정처분 등의 처벌로 인해 재학대로 신고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재학대 사례의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아들과 동거하는 비율이 48.6%(139명)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34.3%(98명)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전체 노인학대 사례보다(1,790명, 36.3%) 아들과 동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270건, 47.1%) - 신체적 학대(214건, 37.3%) - 방임(38건, 6.6%)로 나타나 전체 노인학대 건수와 유사하게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재학대 발생장소의 경우 가정 내 학대가 348건(96.9%)으로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사례의 가정 내 학대 비율(88.7%)에 비해서도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학대 사례의 학대발생빈도는 신규사례에 비해 1주일에 한번 이상(40.1%), 매일(18.1%) 등 잦은 횟수로 발생하는 학대가 신규사례에 비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으며, 학대지속기간 또한 1년 이상 5년 미만 및 5년 이상 장기간 학대가 지속된 비율이 신규사례(65.9%)에 비해 재학대 사례(81.0%)가 15.1%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학대 사례가 신규 사례에 비해 굉장히 장기간 동안 잦은 횟수로 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는 주로 40~50대의 아들인 경우가 79.5%를 차지하였으며, 재학대행위자의 약 30%가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단독가구 현황

2017년 노인단독가구는 전년 1,140건(26.6%) 대비 1,007건(21.8%)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노인단독가구 유형의 학대피해노인 연령대의 경우 70대가 431명(42.8%)로 가장 많았으며, 80대 377명(37.4%), 60대 이하 138명(13.7%), 90대 이상 61명(6.1%)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단독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은 전체 1,007명 중 2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차지하였다.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형태는 자택이 44.4%로 가장 많았고 주거환경 상태는 보통(51.8%)이었다.

노인단독가구 유형의 학대피해노인 질병 유형은 총 1,025건으로 고혈압 211건(20.6%), 관절염 190건(18.5%), 기타 159건(15.5%), 당뇨병 134건(13.1%) 등 장기간 약을 복용하거나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중 치매로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학대피해노인도 노인단독가구 1,007명 중 3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단독가구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을 살펴보면 매일 학대가 발생하며 그 지속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106건(39.3%), 5년 이상이 93건(34.4%)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이상 학대피해가 지속된 노인단독가구의 10명 중 7명(73.7%)이 매일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등 장기간 학대피해를 받은 그룹의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29.8%)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시설학대 현황

전체 학대건수 4,622건 중 7.4%는 시설학대로, 여성노인은 263명(76.7%), 남성노인은 80명(23.3%)으로 나타나 여성 학대피해노인이 남성 학대피해노인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시설학대의 학대발생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시설학대 중 35.6%가 1주일에 한번 이상 발생, 일회성 28.9%, 매일 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일회성의 빈도가 각각 40.0%, 37.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생활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발생하는 사례의 비율을 합하면 57.5%로 생활시설 학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타 시설에 비해 학대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학대의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의 경우, 1주일에 한번 이상 발생하며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52.5%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즉 한번 발생한 시설학대의 경우에는 그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반복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시설학대의 학대 유형은 총 454건으로 중복집계 되었으며, 신체적 학대가 148건(32.6%), 방임이 144건(31.7%), 성적 학대가 80건(1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129건(33.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방임이 19건(41.3%)로 나타나 시설 간 학대 유형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학대의 학대행위자는 총 665명으로, 여성이 485명(72.9%), 남성이 180명(27.1%)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남성의 경우 60대가 86명(47.8%), 여성은 50대가 202명(41.6%)으로 성별에 따라 연령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노(老) - 노(老)학대 현황

연도별 노(老) - 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1,374건에서 2017년 2,188건으로 5년 간 800건 이상(59.2%) 증가하였다. 지난 5년 동안 전체 학대행위자의 증가율이 27.1%(4,013건→5,101건)인 것에 비해 노(老) - 노(老)학대는 약 6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매우 두드러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노(老) - 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유형은 전체 학대행위자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전체 학대행위자가 아들-배우자-기관 순이었다면, 노(老) - 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유형은 고령의 부부간 배우자(1,240건, 56.7%), 학대피해노인 본인(290건, 13.3%)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었다.

6) 치매노인학대 현황

2017년 전체 노인학대 4,622건 중 치매노인은 1,122명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하였다. 이중 여성노인은 838명(74.7%)이고, 남성노인은 284명(25.3%)으로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치매노인의 연령대는 80대가 512명(4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70대가 356명(31.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대유형의 경우 신체적 학대(443건, 28.1%) - 정서적 학대(422건, 26.8%) - 방임(370건, 23.5%)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유형과는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가 770건(68.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276건(24.6%)로 생활시설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치매노인의 주 부양자와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대발생빈도의 경우 1주일에 한번 이상이 350건(31.2%)으로 가장 높았으며 매일이 281건(25.0%), 1개월에 한번 이상이 213건(19.0%)의 순으로 나타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매일 혹은 1주일에 한번 이상 잦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대 지속기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391건(3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293건(26.1%)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대다수의 치매노인이 1년 이상의 장기간 학대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매노인 대상 학대행위자 유형의 경우 친족이 710건(48.2%)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관이 600건(40.7%)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친족의 세부 유형으로는 아들(377건, 25.6%) - 딸(134건, 9.1%) - 배우자(132건, 9.0%)의 순으로 나타나 직계가족인 자녀가 친족의 대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 학대행위자가 친족(376건, 70.8%)인 반면, 치매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기관(549건, 58.2%)이 주 학대행위자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부양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학대행위자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앞서 언급한 부양부담과도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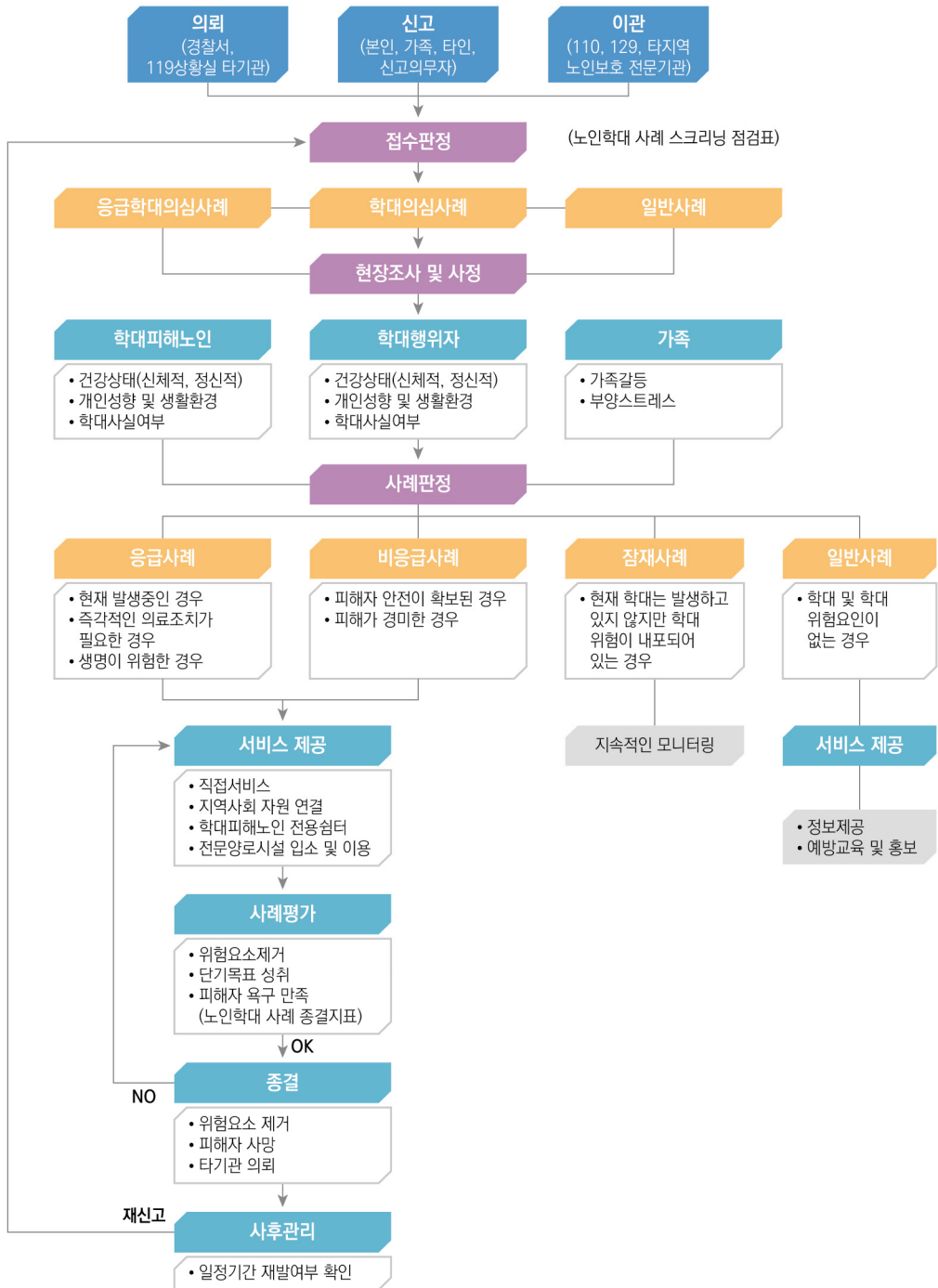


Chapter 09

부 록

- ▶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 ▶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18. 6. 현재)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중 앙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플라자 11층 1161호	02)3667-1389	www.noinboho.or.kr
서울특별시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02)3472-1389	www.seoul1389.or.kr
서울특별시북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수유3동)	02)921-1389	www.sn1389.or.kr
부산광역시동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8 연합뉴스빌딩 5층	051)468-8850 051)441-8359	www.bs1389.or.kr
부산광역시서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8번길46, 제이에스빌 5층	051)867-9119	1389.bulgukto.or.kr
대구남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28, 3층	053)472-1389	www.dg1389.or.kr
대구북부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	053)357-1389	www.dgn1389.or.kr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사회복지관 204호	032)426-8792~4	www.ic1389.or.kr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안길 18	062)655-4155~7	www.gjw.or.kr/kj138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70번길 103	042)472-1389 042)472-1390	www.dj1389.or.kr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오산2길 28-2, 1층	052)265-1389 052)265-1380	www.us1389.or.kr
경기남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268번길 28 수정노인종합복지관 2층	031)736-1389	www.kg1389.or.kr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가릉로 136번길 7	031)821-1461	www.gnoin.kr
경기서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중로 68, 2층	032)683-1389	www.ggw1389.or.kr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번지 강원도사회복지관 2층	033)253-1389	www.1389.or.kr
강원동부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954, 3층	033)655-1389	www.gd1389.or.kr
강원남부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170 새한빌딩 2층	033-744-1389	www.gn1389.co.kr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신봉동) 3층 사무실	043)259-8120~2	www.cb1389.or.kr
충청북도 북부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76(지현동 1498번지)	043)846-1380~2	www.cbb1389.or.kr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변영로206번길 42(모종동)	041)534-1389 041)534-9222	www.cn1389.or.kr
충청남도 남부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9 2층	041)734-1389 041)734-1398	www.cnn1389.or.kr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7-23	063)273-1389	www.jb1389.or.kr
전북서부	전북 군산시 진포로 151번지 광동빌딩 3층	063)443-1389	www.jbw1389.or.kr
전라남도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061)742-3071 061)753-1389	www.jn1389.or.kr
전라남도 서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전라남도노인회관 4층	061)281-2391	www.j1389.or.kr
경상북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기쁨의복지관 B102	054)248-1389	www.noin1389.or.kr
경북서북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1(본사무소)	054)655-1389	www.gbnw1389.or.kr
경북서남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981-8	054)436-1390	www.gbwn1389.or.kr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문화북4길(평화동) 금강노인복지관C동 2층	055)222-1389	www.gn1389.or.kr
경상남도서부권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98 2층	055)754-1389	www.gnw1389.c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7길 3	064)757-3400	www.jejunoin.org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 2층(동홍동)	064)763-1999	http://sgpnoin.org/

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인 쇄 일 : 2018년 6월

발 행 일 : 2018년 6월

발 행 인 :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편 집 인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이기민

편집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민, 김선태, 김상은, 김재인, 양창준, 이해숙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 3667-1389

인 쇄 : 경성문화사 02) 786-2999
